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2022.12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2022. 12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연구기관 : (주)서던포스트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희성	(주)서던포스트 이사
공동연구원	안준택	(주)서던포스트 차장
	박현수	(주)서던포스트 차장
	박성욱	(주)서던포스트 선임연구원
	이주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문승민	세명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주해영	(주)서던포스트 연구원
	이수진	(주)서던포스트 차장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1) 연구 배경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등을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건·의료, 운송·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지난 2020년 12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 및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그리고 대중교통과 같은 여객 운송 업무 등이 주요 보호 및 지원 대상이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진행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본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대비 광의의 개념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에 접근함으로써 지원 대상 범위, 지원 내용 등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념, 범위가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용역은 현재 제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필수업무 종사자는 물론 인천광역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필수업무 종사자 영역을 추가로 탐색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접근하여 이들의 노동환경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 ❑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수립된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과제」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공통적으로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은 필수노동자가 필수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작업 및 휴게시설 운영·개선·확대, 쉼터 조성 및 운영,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필수노동 시 필요한 방역물품과 장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백신 우선접종, 심리상담 제공 사업 등이 제안된 바 있다.
- ❑ 둘째, 공통적으로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은 고용상태, 급여,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수당 제공, 유급 백신휴가 제공, 유연근무제도 확대, 휴가비 지원,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 등이 제안된 바 있다.

4)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군·구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Jenks(1967)의 '네츄럴 브레이크(Natural Breaks) 등간격'을 활용하였다. 네츄럴 브레이크 등간격은 간격 내 분산을 최소화하고 간격 간 분산을 최대화하여 군집 패턴을 분류하는 방식이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자료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간격 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문승민 외, 2016: 59에서 재인용)

5)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 ❑ 제4장 필수업무 종사자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5장 노동 및 안전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 틀과 추진체계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요컨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망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에 근거해야 할지를 논리 모형으로 예시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어떠한 지식과 연결망이 확보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것이다.

6)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

- ❑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해볼 만한 정책과제 몇 가지를 구체화하여 제안할 것이다. 예시되는 정책과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시기 △재난 종료 이후 등의 맥락에 따라 구성할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3
3.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2 장 중앙 및 지방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4
1. 사전 문헌 연구	4
2.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유관 조사·연구 사례 분석	4
3. 사례조사	4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5
제 3 장 인천지역 필수업무 및 종사자 규모와 분포 추정	41
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	41
2.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54
3. 소결	96
제 4 장 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	101
1. 조사 개요	101
2.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조사항목 설계	112
3. 표본 설계	114
4. 실사 및 자료 수집	115
5. 조사결과 분석	120



목 차

제 5 장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의견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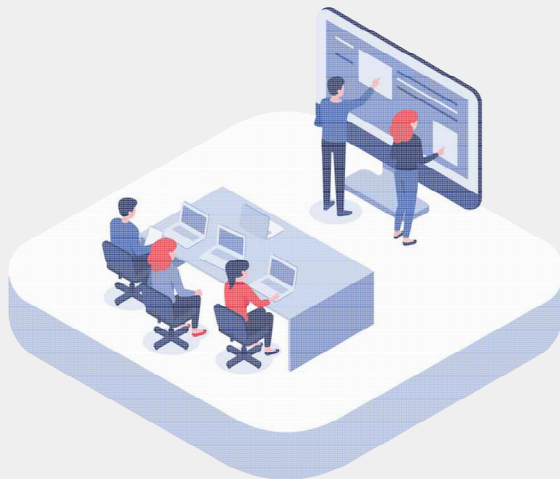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133
- 2. 조사분석 결과 137
- 3. 소결 160

제 6 장 정책 수립에 관한 제언 165

- 1. 개관 165
-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의 목표와 방향 167
- 3. 인천 필수업무 범위와 보호·지원 정책 대상의 구체화 172
- 4.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기본 틀과 정책과제 예시 181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등을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건·의료, 운송·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지난 2020년 12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 및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그리고 대중교통과 같은 여객 운송 업무 등이 주요 보호 및 지원 대상이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진행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본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대비 광의의 개념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에 접근함으로써 지원 대상 범위, 지원 내용 등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념, 범위가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용역은 현재 제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필수업무 종사자는 물론 인천광역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필수업무 종사자 영역을 추가로 탐색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접근하여 이들의 노동환경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및 범위 설정

-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 지역적 특성, 사회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정책 사례는 물론 해외 유사 사례를 기본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연구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업무종사자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설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 및 문헌탐색, 타 지자체의 필수업무종사자 관련 연구 탐색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사회 유지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 유형과 관련 직종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특성 및 재난 유형별 인천광역시 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발생 시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전자의 과정을 통해 현재 필수노동자로 법적·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부문 중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 부문 등이 있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아직 국·내외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가 포함되었다.

② 인천광역시 필수업무종사자들의 활동 현황 및 노동 환경 조사 및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필수노동자 활동 현황 및 노동 환경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의 특성별로 조사 방법을 차별화하여 진행하였다.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의 경우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조사·연구가 다수 진행됐으므로 이를 모두 취합, 정리하여 전반적인 활동 현황 및 노동 환경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사회간접자본 관련 종사자의 경우 유사 조사 사례가 전무한 만큼 인천광역시 SOC 관련 업종, 직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정확한 모집단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직종의 정확한 규모와 처우(노동시간, 임금 등)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와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③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며, 특히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위해 필수업무종사자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노동자 당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 관련 심층 자문 의견을 수렴, 최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로 한정하되 유사 조사연구 사례 검토의 경우 최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위해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시간적 범위는 시의성 있는 결과 산출을 고려하여 본 연구 진행 현재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및 애로사항,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의 제시로 정의하였다.
-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직종은 법률상 필수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 중 주요 관심 부문인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 직종을 기본 선정하였으며, 이외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를 추가 포함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특히 SOC 부문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 도로·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로 세분화한 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설계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 문헌연구, 인천광역시 내 주요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SOC 부문) 및 유관 조사연구 사례 분석(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 부문)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례조사, 해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법령 및 제도 사례조사 그리고 조사 및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문헌 연구

- 사전 문헌 연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타 지자체를 비롯해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 조사와 관련된 사례 연구, 관련 통계자료 정리를 통해 기본 현황을 파악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유관 조사·연구 사례 분석

-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유관 조사·연구 사례 분석 부분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SOC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지원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군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전반적인 근로실태 및 환경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외 기존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 바 있는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 업종군의 경우 관련된 조사·연구 사례를 모두 취합, 정리하여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더불어, 산·학·연 유관 전문가를 비롯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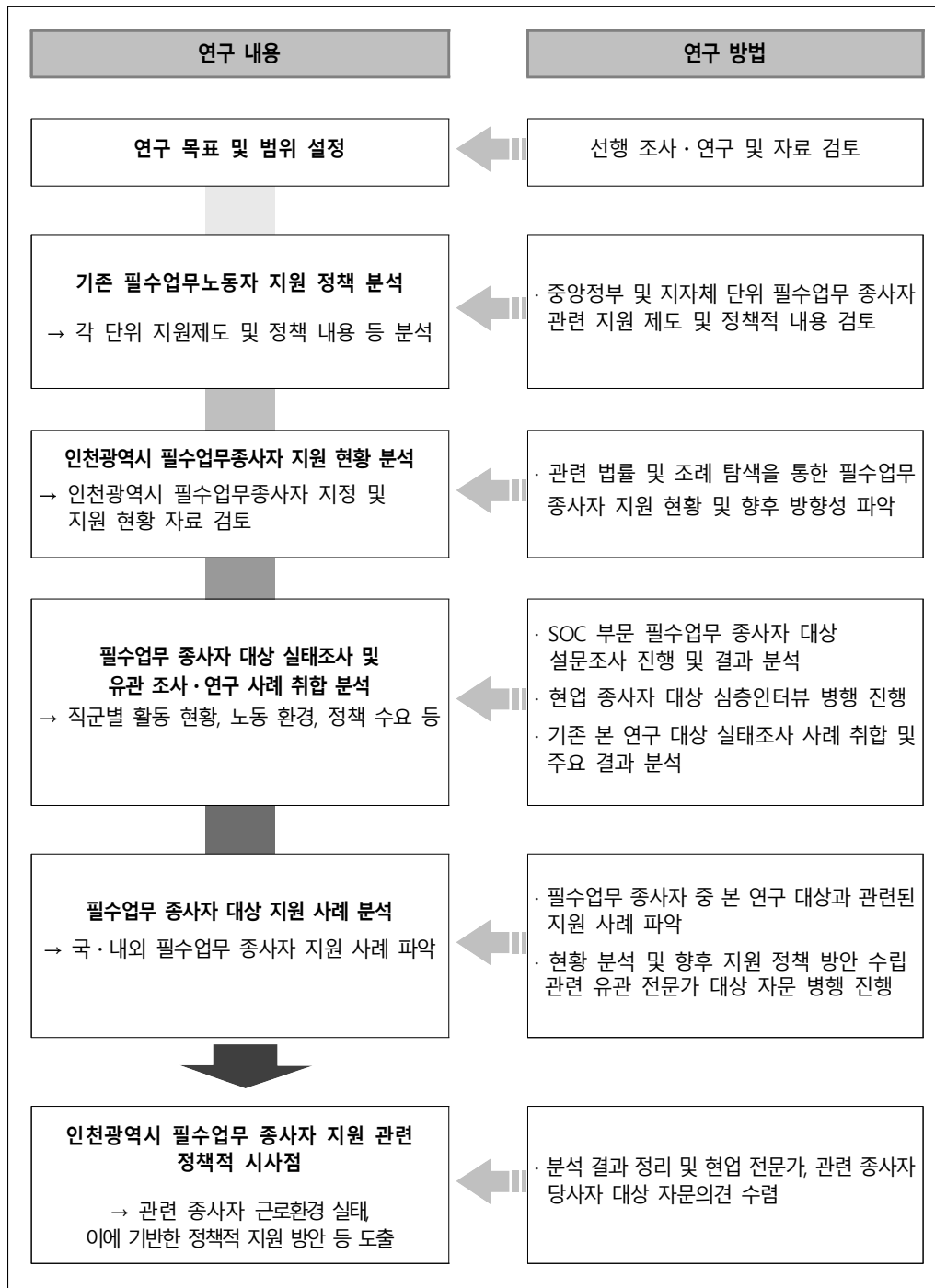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대한 사례조사 부분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유관 전문가 자문을 최종적으로 거쳐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 끝으로 전체 연구의 체계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체계와 흐름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

Ⅱ. 중앙 및 지방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각각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¹⁾

- 중앙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필수업무 분야 종사자를 세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둘째,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셋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등이다.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은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표 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구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①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 방과후 강사	- 1인당 50만원 지급
②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 보호 강화	-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 맞춤형 진단 실시 및 비용 지원 -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 지속 확대
③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전속성 기준 개편)
④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근로감독 실시	- 콜센터 종사자 - 물류센터 종사자 - 요양보호사 -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 종사자 등	(근로여건 개선) 산업안전감독 실시

1)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근로여건 개선) 감염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⑥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비용 부담 완화) 보험중복 가입 방지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⑦ 이륜차 기사 보호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비용 부담 완화) 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 마련
⑧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자용제한으로 신체적 부담 예방, 재활용품 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 사용기준 마련,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교체
⑨ 필수노동자 보호추진 체계 제도화	- 필수노동자	(관계법령 마련)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대책 및 지원 관련 규정 마련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12.14.)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의 내용을 정리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발표 이후, 2021년 5월 18일 중앙정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본 법률의 제2조에서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이밖에, 지방정부는 제9조에 따라,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본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필수업무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조정하기로 하였다. 즉,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다.

-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조정된 것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건강 보호,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지원코자 하기 위해서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일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과도 긴밀히 연계·협업체계가 구축되어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용노동부, 2022.8.28.).
- 따라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심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주관하며,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과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022년 9월 기준으로 현재 법률 제정 이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은 발표된 사항은 없다.

2.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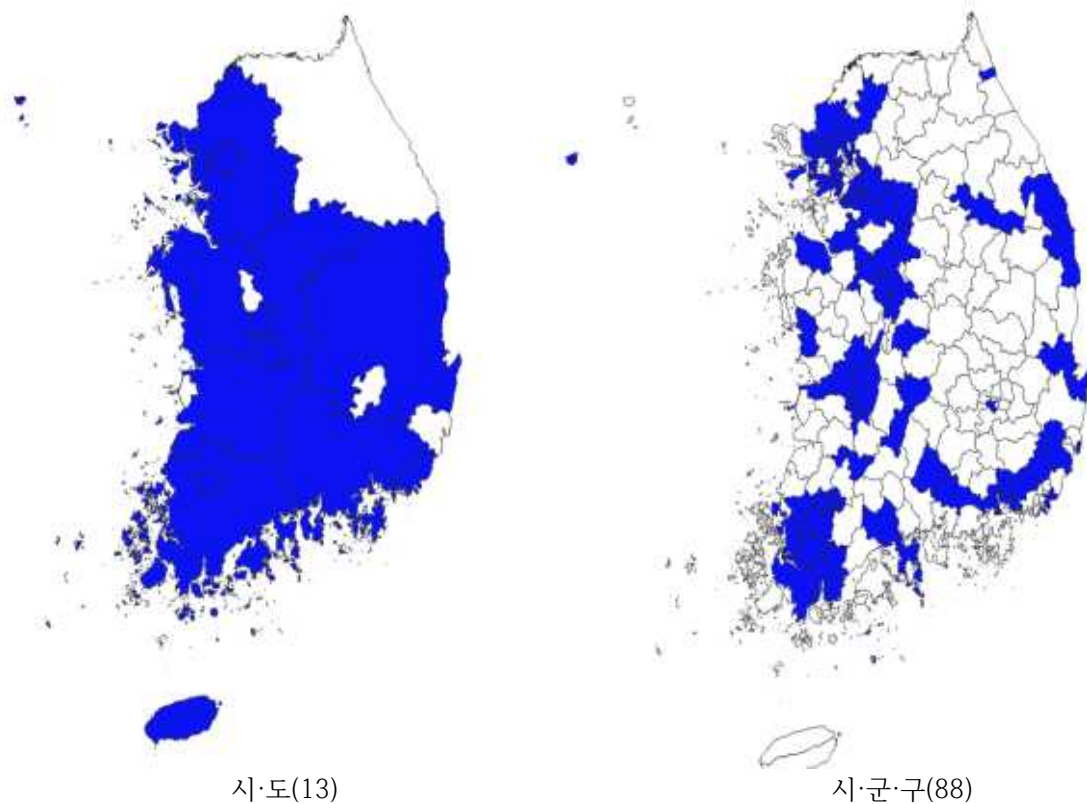
- ❖ 지방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자 하며, 다음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을 제시하였다.
- ❖ 2022년 9월 1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약 76.5%(13곳), 226개 시군구의 약 38.9%(88곳)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시·도 중 지원 관련 조례를 수립하지 않은 곳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강원도'이다.
- ❖ 시·군·구 중 조례를 평균 이하의 조례 제정 비율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경상북도(8.7%)', '대구광역시(12.5%)', '강원도(16.7%)', '대전광역시(20%)', '충청남도(26.7%)', '경상남도(27.8%)', '충청북도(36.4%)'이다. 반면, 광주광역시 소속 시·군구는 모두 관련 조례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노동 기본 조례에서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에도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 인천광역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개 시·군·구 중 4곳(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 여부	시·군·구			
		전체	제정수	비율	기초자치단체명
인천광역시	제정	10	4	40%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서울특별시	제정	25	14	56%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제정	16	6	37.5%	남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미제정	8	1	12.5%	달서구
광주광역시	제정	5	5	100%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제정	5	1	20%	서구
울산광역시	미제정	5	2	40%	동구, 울주군
세종특별시	미제정	-	-	-	-
경기도	제정	31	20	64.5%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강원도	미제정	18	3	16.7%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충청북도	제정	11	4	36.4%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충청남도	제정	15	4	26.7%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전라북도	제정	14	7	50%	군산시, 무주군, 순창군,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전라남도	제정	22	10	45.5%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상북도	제정	23	2	8.7%	울진군, 포항시
경상남도	제정	18	5	27.8%	김해시, 양산시, 산청군, 진주시,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	-	-	-
합계		13	226	88	38.9%

주 : 2022.09.13.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그림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 본 연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각 시·도에서 수립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보도 및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 ❑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대부분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수립 중이다.
- ❑ 따라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충청남도(2022년), 충청북도(2022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며, 경상북도(2022년), 전라북도(2022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수립 계획 중에 있다. 대전광역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부재한다.

1) 서울특별시²⁾

- 서울특별시는 제2차 노동기본계획에서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차 노동기본계획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더불어, 2022년 서울시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수노동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배달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취약노동자’로 지칭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3> 서울시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 세부사업

내용	주요 내용	사업비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 상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지원, 택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20인 미만, 10개소)	2,650백만원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공정거래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취약 노동자 등 인식개선, 택배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시(택배업 현황, 안전 교육 등)	115백만원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타 운영비)	3,000백만원

2) 본 내용은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2~2026)」과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2) 부산광역시³⁾

- 부산광역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의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와 비대면 사회 유지의 버팀목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급격한 악화”를 지적하며(pp.1),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더불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사회 지탱의 버팀목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개 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부재하며, ‘취약노동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세부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둘째,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 표준적인 근무기준(임금, 처우) 마련(사회서비스, 돌봄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연차별 지표 및 추진계획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단위과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추진 지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실태조사	7		1	2	2	2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7		1	2	2	2
사업비	시비	250		30	40	80	100
부서명 / 팀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노동권익팀					

자료: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p.57

3) 본 내용은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3) 광주광역시⁴⁾

- ❖ 광주광역시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배경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와 비대면 사회 유지의 버팀목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급격한 악화”를 제시하고 있으며(pp.16),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시급”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 광주광역시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와 10대 주요 핵심과제에서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일터 조성’ 정책 목표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노동자 보호” 주요 핵심과제이다.
- ❖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노동자 보호 과제의 목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의 주요 대상으로 ‘택배, 배송업무 종사자, 요양보호사, 버스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 ❖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둘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셋째,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코로나 19 취약노동자 보호’ 관련 사업은 세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필수노동자 보호(3-3-1), 둘째, 택배노동자 지원(3-3-2) 셋째, 청년 프리랜서 지원(3-3-3)이다.
- ❖ 필수노동자 보호 과제(3-3-1)의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가 증가하여 감염병 노출과 건강 악화 등 산업재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물품 지원, 둘째,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셋째, 필수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넷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본 내용은 「광주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 해당 사업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 계획은 다음 <표 2-5>와 같다. 단위과제의 주요 지표 및 투자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 중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광주광역시 필수노동자 보호 과제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과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요지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회)	5	1	1	1	1	1
사업비	계	40		10	10	10	10
	국비	-		-	-	-	-
	시비	40		10	10	10	10
부서명 / 담당		노동협력관 / 노동정책담당					

자료: 「광주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p.83

- 택배 노동자 지원 과제(3-3-2)의 추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중된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제는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조례」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둘째,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셋째,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제시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 계획은 다음 <표 2-6>과 같다. 단위과제의 주요 지표 및 투자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광주광역시 택배 노동자 지원 과제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과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요지표	실태조사(회)	5	1	1	1	1	1
사업비	계	40		10	10	10	10
	국비	-		-	-	-	-
	시비	40		10	10	10	10
부서명 / 담당		노동협력관 / 노동정책담당					

자료: 「광주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p.84

- 청년 프리랜서 지원 과제(3-3-3)의 추진배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제는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 프리랜서 지원계획 수립, 둘째,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 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셋째, 청년 프리랜서의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하여 보급, 넷째, 청년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 계획은 다음 <표 2-7>과 같다. 단위과제의 주요 지표 및 투자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보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7> 광주광역시 청년 프리랜서 지원 과제의 연차별 지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과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요지표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추진			실태조사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비 (비예산)	계						
	국비						
	시비						
부서명 / 담당		노동협력관 / 노사상생담당					

자료: 「광주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p.85

4) 경상남도⁵⁾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새롭고 다양한 노동정책 수요 증가, 둘째, 지역 노동문제에 대하여 노동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 셋째, 경남지역의 노동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수립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에서 5대 정책목표와 21개 정책 분야를 제시하였다. 21개 정책 분야는 10개 중점과제와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필수노동자’를 직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3개), 노동기본권보장(3개), 노사정거버넌스 구축(1개)로 확인되었다.
-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상남도 특고 및 플랫폼 분과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과제(중점 1-1)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특수고용형태 노동과 플랫폼노동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을 도모, 둘째, 경남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내 분과로 가칭 ‘경남 특고 및 플랫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회의 개최”를 제시하였다.
-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 계획은 다음 <표 2-8>, <표 2-9>와 같다.

<표 2-8> 경상남도 특고 및 플랫폼 분과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추진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대상	특고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 정책 방안 논의
위원회 구성(안)	- 전체 위원은 13~14명 정도로 구성 ·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 대표 3명 · 플랫폼 사업체 관계자 3명, 경상남도청 내부 실무자 3명 · 특고/플랫폼 노동 전문가, 노동 및 노사관계 전공 교수, 노무사 등 4명 -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정도 진행,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7

5) 본 내용은 「광주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표 2-9> 경상남도 특고 및 플랫폼 분과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위원회 개최(회)	목표	9	1	2	2	2	2
	소요예산	18	2	4	4	4	4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7

- ❑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과제(중점 1-2)의 추진배경으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증진, 역량강화를 통해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제시하였다.
- ❑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10>, <표 2-11>과 같다.

<표 2-10>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1년(*최초시행연도 : 2020년)
사업대상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3개소(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사업내용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비,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지원
주요업무	돌봄노동자의 권익증진, 역량강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8

<표 2-11>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회,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개소)	목표	2	2	-	-	-	-
	소요예산	420	420	-	-	-	-
돌봄노동자 직무교육(회)	목표	140	20	30	30	30	30
	소요예산	70	10	15	15	15	15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홍보(회)	목표	30	6	6	6	6	6
	소요예산	200	40	40	40	40	40
돌봄노동자 권익보호 캠페인(회)	목표	15	3	3	3	3	3
	소요예산	30	6	6	6	6	6
부서명 / 담당명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담당					

자료 :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8

-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추진 과제(일반과제 1-1)의 추진배경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를 제시하였다.
- 해당 과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12>, <표 2-13>과 같다.

<표 2-12>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추진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대상	영아반 및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연장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 영아반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장애아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연장보육 : 연장반 원충족률(50%) 및 이용시간 기준 충족 어린이집
주요내용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11천원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0천원 추가 지원 ※ 어린이집 보육시간 : 기본보육(09시~16시), 연장보육(16시~19시 30분)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9

<표 2-13>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추진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명)	목표	19,885	3,885	4,000	4,000	4,000	4,000
	소요예산	228,877	43,985	46,223	46,223	46,223	46,223
부서명 / 담당명		가족지원과 / 보육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9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과제(일반과제 1-7)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취약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 2)」상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나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14>, <표 2-15>와 같다.

<표 2-14>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추진기간	2022년 ~ 2025년
사업대상	도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실
주요내용	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도청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개선사항 추진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9

<표 2-15>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개,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휴게시설 표준안 제정(회)	목표	1	1	-	-	-	-
	소요예산	-	-	-	-	-	-
휴게시설 실태점검(회)	목표	3	1차	2차	-	-	3차
	소요예산	-	-	-	-	-	-
휴게공간 개보수 지원(개)	목표	40	-	10	10	10	10
	소요예산	400	-	100	100	100	100
홍보사업(반기별 1회)	목표	8	-	2	2	2	2
	소요예산	40	-	10	10	10	10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56

-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활성화 과제(중점과제 4-1)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주 노무관리 지원으로 노동권익 보호, 둘째,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교육, 노무컨설팅을 통한 모범적 사용자 역할 이행” 등을 제시하였다.
- ❑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16>, <표 2-17>과 같다.

<표 2-16>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활성화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0년~(계속)
사업대상	도내 노동자, 50명 이하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사업량	4,250건(노동상담 2,252, 권리구제 255, 노무컨설팅 850, 노동관계법 교육 893건)
사업비	1,000백만원(도비)
운영기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공기관 위탁 운영)
도민노무사 현황	5개 권역 23명
사업내용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2

<표 2-17>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활성화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상담 건수	목표	4,250	750	800	800	900	1,000
	소요예산	1,000	200	200	200	200	200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2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일반과제 4-2)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자조모임, 협동조합, 공제회, 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통해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둘째, 부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해 노조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 강원도는 노동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설립 절차 및 방법을 상담, 광주는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조직화사업을 지원,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사업에 업종별 조직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해당 과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18>, <표 2-19>와 같다.

<표 2-18>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사업내용	- 취약노동자들이 협동조합, 공제회, 협회, 노동조합 등 이익대변조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사무비용 등 지원 - 취약노동자 지원에 특별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노동단체 등을 공모하여 주관기관 선정 - 취약노동자 조직화에 필요한 자문과 실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5명 이내 지원사업단을 운영, 실태조사, 법률자문,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3

<표 2-19>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목표	25	-	-	5	10	10
	소요예산	1,250	-	-	250	500	500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3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지원단 운영(일반과제 4-3)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노동권익 지원단 운영을 통해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주들을 계도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 둘째,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를 계도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정책 실행하고 있음”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20>, <표 2-21>과 같다.

<표 2-20>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지원단 운영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사업내용	- 2023년에는 창원과 김해부터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실시 연차별로 확장하여 2024년에는 도내 전체에서 노동권익 지원단 운영 - 도내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취약노동자 대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부당대우 등 법적 의무 이행 계도 - 노동권익 지원단은 5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며, 노동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나 사회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 채용, 향후 경남 노동 정책 발전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이들로 육성 - 노동권익 지원단은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익 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교육 진행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4

<표 2-21>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지원단 운영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노동권익 지원단(명)	목표	54	-	타시도 사례 검토 및 계획 수립	9 창원, 김해	18	27
	소요예산	540	-	-	90	180	270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4

- 이밖에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전담부서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과제(중점과제 5-1)를 실시하고자 했다. 본 과제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등 현안사업 추진, 둘째, 노동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20~’21)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을 제시하였다.
- 해당 과제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2-22>, <표 2-23>과 같다.

<표 2-22> 노동정책 전담부서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과제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내용	- 노동행정 조직 규모 확대와 신규 사업수행 인력 확보 - 경상남도 노동정책 행정 조직 강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개정에 따른 전문 인력 충원
향후 계획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등 노동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연차별 1담당 신설 - 노동안전보건지원(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 담당 신설(‘22) - 노동권익지원(기본계획 추진, 노동권익센터 운영, 필수·외국인노동자 등 지원) 담당 신설(‘23)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49

<표 2-23> 노동정책 전담부서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21	‘22	‘23	‘24	‘25
노동전담 부서 강화	목표	2	-	1개 담당신설	1개 담당신설	-	-
	소요예산	-	-	-	-	-	-
부서명 / 담당명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					

자료: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p.89

5) 요약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정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24>와 같다.
- 현재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정책은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필수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중에서도 일부(예: 택배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만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 주요 사업의 경우, 휴게시설 및 지원센터 개설, 노동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 등이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동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대상과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24> 필수업무 종사자 정책 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추진 근거	· 제2차 노동기본계획	·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	· 제2차 노동정책 기본 계획	·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
정책 대상	· 취약 노동자(배달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취약계층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	· 필수노동자(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	· 필수노동자(택배 노동자, 청년 프리랜서)	· 필수노동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돌봄 노동자, 보육교사, 청소 노동자, 취약노동자)
주요 사업	· 민간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및 보험금 지급 지원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 공정거래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 취약 노동자 등 인식 개선 사업 · 택배종사자 온라인 교육 · 긴급생계비 지원	·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실태조사 ·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 청년 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	·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분과위원회 설치 ·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설치 확대, 직무 교육, 홍보, 권익 보호 캠페인) · 보육교사(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노동상담, 권리구제, 노무 컨설팅, 노동관계법 교육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 노동권익 지원단 구성 · 노동정책 전담부서 강화

3. 지자체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계획」 검토

- ❖ 지난 2021년 5월 중앙정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계획」 조사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 더불어, 해당 자료에서 제시된 지원정책들은 ‘제안’ 사항이므로 실제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서울특별시⁶⁾

-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필수노동자 중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단계와 시기를 구분하여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 지원정책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복리·후생 및 임금 등 처우개선을 주요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원과제의 추진 주체 및 예산, 시기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6) 본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표 2-25>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과제(안)

단계	시기	주요내용
1단계	긴급	감염예방물품 지원, 신속한 백신 접종, 백신 휴가제 도입, 취급 폐기물 기준과 처리방법의 명확한 교육, 자가 격리자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소독 및 처리지원(방역복 및 기타 방역 장비 등) 등
2단계	단기	인력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추가 예산 편성), 사회적 위험수당(재난수당) 특별 지급, 건강검진 및 입원(외래포함) 시 유급 병가 지원 등
3단계	중·장기	민간위탁 대행비(용역비) 원가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 품목의 현실가격으로 증액 책정, 복리후생 품목 추가 지급(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 발목보호대, 겨울 방한장갑, 발열 조끼, 동복 등), 종합건강검진 지원, 전용 휴게공간 지원 및 민간위탁 휴게시설 확대·개선 등

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pp.151-152.

2) 전라북도7)

- 전북연구원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의 필수노동자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필수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 둘째, 필수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확대, 셋째,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본방향의 특징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동기본권 보호, 지원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6대 필수노동자 지원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원과제로는 인식 개선 캠페인, 추가방역 업무에 따른 물품·수당 지급, 휴게공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서울시의 제안 사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원과제의 추진 주체 및 예산, 시기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7) 본 내용은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표 2-26>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안)

기본방향	지원과제	주요내용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	필수노동자 중요성 공감대 형성	필수노동자 캠페인 확대
	추가 방역업무에 대한 보상	인력확충, 방역물품 지원, 방역수당 지급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작업시설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지원	유급 백신휴가 정착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직종별 필수노동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계획 수립	직종별로 순차적 조사 및 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자료: 전북연구원(202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p.89

3) 충청남도⁸⁾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정책사례연구」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정책의 제안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의 대분류와 네 가지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대분류는 첫째, 필수노동자 건강증진 및 방역 강화, 둘째, 필수노동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셋째, 지자체 정책토대 구축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충남형 상병수당·휴가제도 도입, 적정한 인력충원제도 및 휴게시간 보장·유연근무 확대, 충남 필수노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직종별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이 제시되었다.
- 해당 제안 사업들은 다른 시·도 제안 사업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지원과제의 추진 주체 및 예산, 시기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8) 본 내용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표 2-27>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안)

대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1. 필수노동자 건강증진 및 방역강화	-	· 필수노동자 무료 건강검진, 백신접종 사업 · 마스크, 소독제 등 정기적인 개인 건강·위생·소독물품 지급 · 작업장 보호 장비·시설 설치(체온감지기, 공조기, 향균필름, 가림막 등)
2. 필수노동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1) 충남형 상병수당·휴가제도 도입	· 충남형 상병수당·휴가 제도 실시 · 민간영역은 사회적 협약, 사업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병수당 및 휴가제도 도입 촉진
	2) 적절한 인력충원제도 및 휴게시간 보장·유연근무 확대	· 대체인력 풀(pool) 지원 · 휴게시간 보장 · 유연근무제도 확대
3. 지자체 정책토대 구축	1) 충남 필수노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직종(분야)별 필수노동 실태조사 · 충청남도 필수노동 지원계획 수립
	2) 직종별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 필수노동 분야(또는 직종)별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자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21).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연구」. pp.40-42.

4) 경상남도⁹⁾

- 경남연구원에서 제출한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조사 용역」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정책의 제안 사항은 필수노동자 분야별, 전략별 매트릭스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분야는 첫째, 공통, 둘째, 보건의료, 셋째, 돌봄, 넷째, 택배, 다섯째, 음식배달노동자이며, 전략은 첫째, 방역강화, 둘째, 건강보호, 셋째, 인력확충, 넷째, 처우개선, 다섯째, 사회안전망, 여섯째, 제도개선, 일곱째, 기반조성으로 제시하였다.
- 분야별, 전략별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처우개선’과 ‘사회적안전망’,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처우개선’, ‘사회적안전망’, ‘제도개선’은 타 시·도에서 제안된 정책 제안들에서도 중요하게 제시됐다.
- 마지막으로 지원과제의 추진 주체 및 예산, 시기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9) 본 내용은 경남연구원에서 발간한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조사 용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표 2-28>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안)

	공통	보건의료	돌봄	택배	음식배달노동자
방역강화	★소규모 사업장 필수노동자 안전보장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건강보호		· (심리) 보건의료 종사자 폭언, 폭력 등 피해 예방 및 정기적 심리 상담 지원 · (안전) 치매환자 대응 등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건강)근골격계 질환 관리		
인력확충		★(운영) 전담병원 지원 확대 · (인력, 장비) 장비 지원 및 파견인력 현실화 촉구(대정부 건의)			
처우개선		· (휴식) 휴게시간 제공 및 휴게 공간 개선 · (휴식) 보건의료 노동자 휴가비 지원 ★(수당) 운영지원 인력 등 코로나19 대응인력 보상기준 마련 · (수당) 미지급 수당 지급 지원(대정부 건의)	★(고용-소득 안정) 방문-이동시 발생하는 교통비, 통신비 등 지급 등으로 처우개선 지원	★ 소규모 대리점 작업장 시설환경 개선지원(레이안정장치, 비가림막, 화장실 등)	· (처우) 대규모 재난 위험수당 도입
사회안전망		· (고용안정) 파견직 노동자 정규직화	· (권익)노동자 권리교육, 제공기관 감시,감독 강화	· [경상남도] 택배노동자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지급	★ 안전거버넌스 운영 및 보험가입 지원
제도개선			· (경력 관리)돌봄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경력인증 보장 ★ 노인생활지원사(맞춤광장앱) 업무관리 방식 개선	· 표준계약서 작성 등 생활물류법 개정사항 지역현장 안착 컨설팅 지원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역배달 대행업체-노동자 컨설팅
기반조성	★ [인식개선] 법 제정 취지와 필수노동자 노동존중 시민의식 캠페인			★[경상남도] 생활물류 노동자 심(센터)터조성(노동자건강·권익상담+차량정비 기능 병행)	

★ : 우선적 시행

자료: 경남연구원(2021).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조사 용역」. p.153

5) 요약

- ❖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수립된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과제」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공통적으로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은 필수노동자가 필수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작업 및 휴게시설 운영·개선·확대, 쉼터 조성 및 운영,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필수노동 시 필요한 방역물품과 장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백신 우선접종, 심리상담 제공 사업 등이 제안된 바 있다.
- ❖ 둘째, 공통적으로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은 고용상태, 급여,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수당 제공, 유급 백신휴가 제공, 유연근무제도 확대, 휴가비 지원,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 등이 제안된 바 있다.

4. 시사점

1) 중앙정부의 지원 제도 및 정책 방향 변화와 위원회 구성

① 지원 제도 및 정책 방향 변화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조정되었다는 것은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이 종사자의 고용안정, 건강보호, 처우개선 등 일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시책들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초점을 두는 정책만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업무 종사자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들(고용안정, 건강보호, 처우개선 등)과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임금 수준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국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 10조(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 2-29> 고용정책심의회 주요 안건

구분	주요 안건
제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의1.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제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호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제9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2항

②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방향

- ❑ 인천광역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위원회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각각 운영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1호), 둘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호),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호), 넷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호), 다섯째,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이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의 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앞서 제시한 <표 2-29>와 같다.
-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고용심의회’와 별도로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와 같이 ‘지역고용심의회’에서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안건을 심의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 자치 군·구의 조례 제정과 협업체계 마련 필요성

- ❑ 인천광역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10개의 군·구 중 4곳(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만이 관련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의 조례 제정 비율은 40%로 광주광역시(100%), 경기도(64.5%), 서울특별시(56.0%), 전라북도(45.5%), 전라남도(4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 인천광역시 내 군·구의 조례제정 비율이 낮을 경우, 해당 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수요를 인천광역시에서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내 군·구의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일선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을 기획·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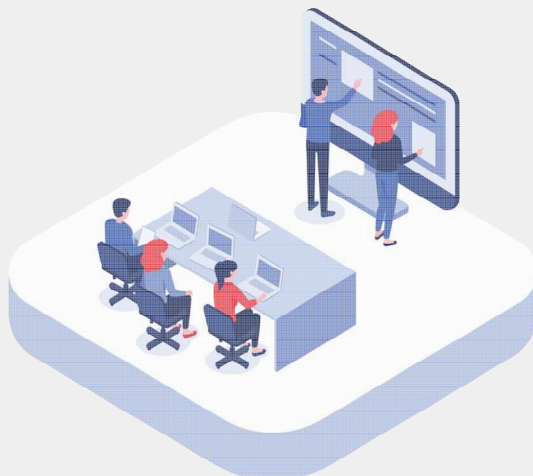
- 한편, 인천광역시 내의 모든 군·구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협업체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인천광역시 내 자치 군·구가 자체적인 보호·지원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사업들에 대한 공유를 통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에 투입되는 시·군·구비의 지원 및 조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대상의 모호성과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분절성

-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 전국 시·도 단위(광역시자체) 및 시·군·구(기초지자체)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한 지자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시·도의 필수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및 정책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노동자 또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필수업무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 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의 지원 제도 및 정책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필수업무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필수업무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취약 노동자의 범주와 중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택배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의 제2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는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 정책 분절에 따른 예산 중복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Ⅲ. 인천지역 필수업무 및 종사자 규모와 분포 추정



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

1)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범주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인천광역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도 “필수업무”의 정의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법률 및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의미하며, 유형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재난의 유형과 종류는 다양하므로 해당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또한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재난의 종류와 유형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표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유형

구분	유형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2)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범주

① 해외 사례 분석

-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또는 핵심노동자(Key worker)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업종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통상 이러한 업종은 락다운(Lock-down)시 이동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¹⁰⁾
- 본 연구의 대상인 SOC 분야도 필수노동자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물품의 생산성 감소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필수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¹¹⁾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기반 시설, 특히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

② 미국

- 미국 국토안전부에서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에 대한 정의를 사회에서 핵심 인프라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operations)들을 운영하고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산업 다양성을 반영하여 16개 직종을 '필수노동자 분류'로 제시하였다.¹²⁾

<표 3-2> 미국의 CISA에서 제공하는 필수노동자 16개 직종

연번	분야	종사자
1	의료/공공보건 Healthcare/PublicHealth	의사, 치과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검안사, 언어병리사, 척추치료사, 진단 및 치료사, 방사선사 등
2	긴급 서비스 EmergencyServices	응급관리 체계에 종사하는 공공, 민간 및 자원봉사자, 소방 구조대, 응급 의료 서비스(EMS), 보안, 공공 및 민간 위험물 대응자, 항공의료서비스 제공자, 수색 및 구조요원 등

10) Fana.M et Al. The COVID confinement measures and EU labour markets

11)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보도자료 :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sector/documents/briefingnote/wcms_746914.pdf

12)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2020, April 17). 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연번	분야	종사자
3	식품 및 농업 FoodandAgriculture	음식료품 종사자, 배달음식 종사자, 편의점 종사자, 식품 제조업체 근로자 및 해당 공급업체 근로자, 식품 포장 및 유통지원 종사자, 농장 및 목장 근로자, 동물보건 종사자 등
4	에너지 Energy	에너지부문 지원 근로자,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지원 종사자, 전기, 석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액체(NGL), 프로판 및 기타 액체 연료 가공 및 제조 종사자 등
5	수자원 Water	수자원 운영 직원, 지역 수도 시스템 운영 종사자, 폐수 처리 시설, 물 및 폐수 운반물 수리·모니터링 작업자 등
6	교통 및 물류 TransportationSystems	화물차/버스 운전기사, 운송업자, 정비 및 수리 기술자, 창고 작업자, 운송 및 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작업자, 도로, 교량, 터널 등 고속도로 필수 인프라 운영 지원 인력 등
7	공공업무 및 기반시설 Government&Facilities	주요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지원 작업자, 폐기물 제거, 보관 및 처리를 지원하는 근로자, 안전, 위생 및 필수적 유지 서비스 제공자 등
8	댐 Dams	댐과 제방의 운영, 점검, 유지보수를 지원 작업자 등
9	정보통신부문 Communications	기술자, 통신 인프라 유지보수 작업자, 통신 서비스 공급자, 통신 장비 지원 근로자, 인터넷·네트워크 관리자 등
10	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데이터 센터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 HVAC 및 전기 엔지니어, 보안 요원, IT 관리자와 구매자, 데이터 전송 엔지니어 등
11	필수 제조업 CriticalManufacturing	금속제조원, 반도체, 의료 및 운송 관련 공급망에 필요한 제품 제조원, 항공우주, 에너지, 통신, 정보기술, 식품, 농업, 화학 제조원 관련 공급망 종사자 등
12	원자로, 재료 & 폐기물 NuclearReactors, Materials&Waste	원자력 시설, 고형 폐기물 처리 작업자, 기타 필수 활동과 관련된 위험 물질(의료 폐기물과 에너지를 포함)을 관리하는 작업자, 위험 물질 대응 및 정화를 지원하는 작업자 등
13	금융서비스 Financial	금융처리,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가 필요한 작업자, 지불,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한 금융 거래 및 서비스 종사자 등
14	화학 Chemical	화학 및 산업용 가스 공급망을 지원하는 작업자, 화학제조 공장, 실험실 종사자와 기초 원료 운송 종사자 등
15	방위산업 DefenseIndustrialBase	국가 안보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 근로자(IT지원, 보안, 항공기 유지관리자 등)
16	상업시설 CommercialFacilities	유통, 창고, 콜센터 시설 및 기타 필수운영 지원자, 운송 및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근로자 등

③ 영국

-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 기타 주요 분야 종사자를 필수노동자(Key worker, Critical worker)로 정하고 있다. <표 3-3>은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총 8개 분야별 필수노동자 직업군을 나타낸 것이다.¹³⁾

<표 3-3> 영국의 필수노동자(Critical workers)

분야	종사자
보건 및 사회복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 의료 지원인력, 의약품 직원, 의료 및 개인 보호 장비 생산자, 의료 유통업체 직원
교육 및 보육	교육 및 보육보육교사, 교직원, 보조교사, 사회복지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교육교사
주요 공공서비스	사법제도 운영 필수인력, 종교 관련 종사자, 주요 최전방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선단체 및 노동자, 사망에 대한 관리 책임자, 공익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언론인과 방송인
지방 및 중앙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EU 이행과 대응 행정원, 정부 독립기관들과 단체들을 포함한 수출입 상품의 인증 또는 검사 관련 업무 행정원, 보조금 지급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 행정원
식품 및 필수재	식품 및 다른 주요 물품의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예: 위생 및 수의약품)를 생산,처리, 유통 종사자, 판매 및 배달 종사자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경찰, 국방 인력, 군인, 소방관, 구조지원 인력, 국가범죄수사국 직원, 국경 보안관, 교도소 및 보호관찰 직원
교통 및 국경	항공, 수상, 도로 및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직원, 운송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국경 기반 시설 운영 인력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 직원, 석유, 가스, 전기 및 물(하수) 관리 인력, 정보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 지원인력, 원자력, 화학, 통신 핵심 인력, 우편 서비스 및 배달, 폐기물 처리 인력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guidance-for-schools-colleges-and-local-authorities-on-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

④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보안 또는 경제적 복지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역할을 하는 종사자를 필수서비스 노동자(essential service worker)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수서비스 기능에 종사자를 다음의 <표 3-4>와 같이 지정하였다.¹⁴⁾

<표 3-4> 캐나다의 필수서비스 노동자(essential service worker)

분야	종사자
건강	COVID-19 검사 인력, COVID-19 임상 작업자, 간병인, 병원 및 실험실 직원, 의료장비 직원, 기타 의료시설 직원, 혈액 및 혈장 관련 관리 직원, 의료 관련 원격근무가 어려운 자
물	식수 및 폐수/배수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직원, 수질 유지 및 테스트 직원, 물 부문 관련 프로젝트 및 서비스 수행자
음식	식료품 및 음료 판매 근로자, 식품 제조업체 직원, 식품 공급업체 직원, 농업, 수산업 근로자, 식품 안전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 관리 직원, 뉴스 기자, 미디어 서비스 근로자, 데이터 센터 및 기타 네트워크 사무실 시설 유지 관리자에너지 및 유틸리티 전기 산업 근로자, 천연가스 및 프로판 가스 작업자, 석유 노동자
운송	운전사, 운송 시설 직원, 항만 근로자, 비상 대응 지원 운송 작업자, 물류 지원 및 유통서비스 제공 근로자, 택배기사, 트럭기사
제조	재료 및 제품 제조에 필요한 근로자, 금속 제조, 1차 금속 생산업체 근로자, 석유 및 가스, 광업 공급망 기업 근로자
금융	금융 거래, 은행 및 대출 서비스에 필요한 근로자, 연금 서비스 및 복지후생 서비스 제공 근로자, 재무 운영 지원 근로자
안전	응급 의료 기술자, 911 콜센터 직원, 최전선, 비상관리 시스템 인력, 의료폐기물 관리 근로자, 테스트 키트 처리 실험실 작업자
정부	필수 기능, 지원 시스템 및 서비스,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연방, 지방자치단체 직원, 필수 공공정보(공고, 규정, 법률, 공공서비스 발표 등) 보급에 관련된 근로자

14) <https://www.publicsafety.gc.ca/cnt/ntnl-scrtr/crtcl-nfrstrctr/esf-sfe-en.aspx>

3) 국내 필수노동자 관련 정의 및 범주

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산업구조는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고객과 직접 대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 강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노동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정리해고 혹은 명예퇴직 등 근로자의 고용환경에서 존재하는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로 보도되었다.
-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망사고들의 주된 이유는 과로, 고용주 혹은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발생 사례들이 지목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 등이 아닌 병원 등 의료·보건시설, 영유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각종 보육·교육시설, 노인이나 치매 환자 등을 관리하는 돌봄 시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존재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근무환경, 저임금의 요소에서 노출된 '밑바닥 노동자', '3D노동자'에게 최근에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된 것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이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방식의 업무 전환 등 각종 강력한 규제 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대면 형태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의미했다.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을 통해 보건 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호 방안을 확대 적용하였다. 이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¹⁵⁾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¹⁶⁾(‘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¹⁷⁾

15)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021년 1.5. 개정, 2021. 7. 1. 시행)

16) 생활물류법, 택배·이륜차·배달업 등록·인증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등(2021.7. 시행)

17)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기준, 근로자 근로조건 등 (2022.6 시행)

- ❖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 즉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의한 봉쇄 조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업무 환경에서 노출될 수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을 위한 성격으로 제정된 법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실시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는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례,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 필수종사자와 관련된 법률은 필수업무종사자법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 의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를 언급하였다.
- ❖ 즉,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필수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 서울시는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필수업종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정의되었다. 서울시는 또한 2021년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은 서울시 내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교통·운수 종사자, 택배 종사자였다.
- ❖ 서울시의 자치구에서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성동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공공 안전, 공공 관리, 의료, 돌봄, 복지, 보육, 물류, 운송 등 재난 시에도 사회기능 유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업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하였다. 마포구에서도 필수노동자 범위를 폐기물 처리, 운송, 청소, 경비, 콜센터, 보건의료, 돌봄의 7개 업종으로 설정하였다.

- ❑ 경기도에서는 ‘공적 기능 제외 우선 원칙’, ‘대면접촉 우선 원칙’, ‘산업재해 노출 우선 원칙’, ‘노동조건 취약 우선 원칙’을 필수업무 종사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선정하였다. 재난 시 생명·신체 보호 업종으로는 의료, 보건, 돌봄 등이 있었고,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 업종으로는 교통,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공동주택경비 등이 있었다.
- ❑ 경상남도에서는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노동자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자 대면 등 감염 위험의 높은 업무 종사자’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필수노동자 후보군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 ‘간병·요양시설 종사자’, ‘정신건강 상담사’,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 생산 및 공급업체 종사자’, ‘제약회사 종사자’, ‘감염병 등 관련 연구자’, ‘방역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청소 및 방역업체 종사자’, ‘119 구급 대원’, ‘응급차 운행 종사자’, ‘농·어민 및 식품업체, 식료품 판매 관련 종사자’, ‘기타 생필품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택배 및 배달 라이터, 상품 배송 관련 콜센터 직원 등 운송 관련 업무 종사자’, ‘가정방문 돌봄 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등 보육 교사’, ‘교직원, 방과후 학교 선생님, 학원 종사자 등 교육서비스 제공 종사자’, ‘가사노동 종사자’, ‘환경미화원 및 쓰레기 수거·재활용업체 종사자’, ‘사회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있었다.
- ❑ 경상남도에서는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 수립 시 단순히 취약노동자 보호·지원 정책이 아니라 ‘기능연속성계획’¹⁸⁾이라는 차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 종사자’나 ‘119 구급대원’, ‘응급차 운행 종사자’ 등이 필수노동자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었다.

18) 기능연속성계획: 자연재난, 화재, 테러 등 기능 중단을 초래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위기 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능의 지속적인 운영 보장을 위한 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

4)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 설정

- ❑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필수노동자에 대해 법률상 정의, 업무의 불가피성,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각종 이슈, 노동현장의 요구사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관성이 높은 직종을 대표적인 필수업무종사자 직종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 ❑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¹⁹⁾에서 필수업종 혹은 필수노동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었던 바들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 및 재난 발생 시 위험도, 재난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 특수성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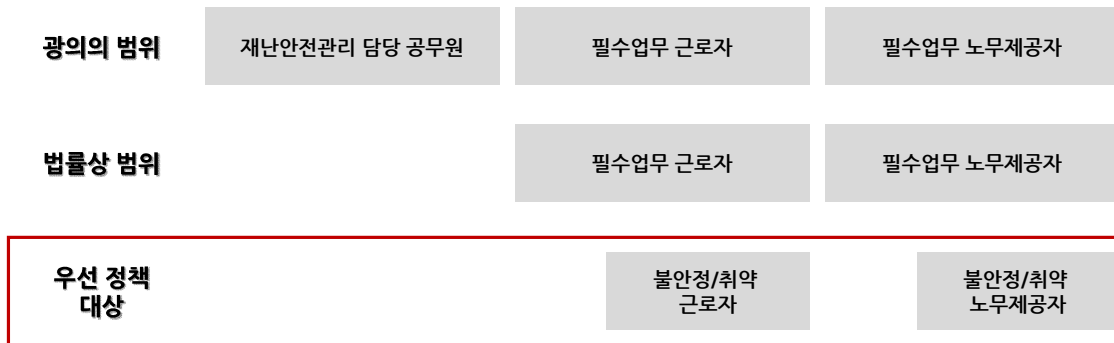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 설정 기준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 기능으로, 용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률상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재난을 극복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적 기관 관련 종사자 중 취약한 업무 여건에 놓인 종사자도 많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률상 범위에서는 제외하되, 광의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에 놓여 있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비사업자인 프리랜서 등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포함시키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와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이들을 보호·지원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9)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2.10.04.)

- 위의 논의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우선 정책 대상을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및 우선 정책 대상



-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 등 전국단위에서 실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재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시키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운송 등

- 지역마다 지역 특성 및 지역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시 전국단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업종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인천광역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지역 내 항구와 공항,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시설이 파괴될 경우 피해가 국가 수준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항구와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는 여러 지역이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해온 도시로서 생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역이 일부 존재하며, 노후·낙후된 지역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 시 위험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업종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천광역시 생활기반시설 피해 사례

뉴스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사회간접자본(SOC)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뉴스 기사를 통해 본 인천광역시 사회간접자본 피해사례(2001~2022)

발생일자	피해시설	사고 내용
2022-10-06	생활기반시설	지하수도
2022-10-04	산업기반시설	도로
2022-08-12	산업기반시설	도로
2022-08-08	산업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2022-08-03	산업기반시설	도로
2022-03-22	산업기반시설	도로
2021-01-14	생활기반시설	주거(아파트)
2021-01-07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주택, 항만
2020-07-22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2020-07-15	생활기반시설	학교
2020-02-20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2019-09-07	산업기반시설	철도
2019-08-29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2019-07-01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2019-06-17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2018-07-05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7-07-31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7-07-30	생활기반시설	도로, 공원
2017-07-25	산업기반시설	도로, 철로 등
2017-03-20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도로, 상가
2016-04-05	생활기반시설	도로
2016-03-29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5-07-16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4-12-19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4-07-29	산업기반시설	도로
2012-05-31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2010-09-11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도로, 주거(주택)
2005-07-20	생활기반시설	상하수도

- 위의 표를 피해시설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3-6>과 같으며, 도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도에
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인천광역시 사회간접자본 피해사례(2001~2022)

피해시설	빈도	사고원인
도로	17	정화조 폭발, 집중호우, 폭우, 산사태, 폭설, 싱크홀, 지하차도 발파공사, 배수관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 폭우, 한파, 노후화된 상수도관
상하수도 및 지하수도	9	불은 수돗물, 폭설, 기름 유출, 토양오염, 수돗물 오염, 노후화된 상수도관, 수돗물 오염, 수돗물 유출
주거·주택	3	폭설, 물탱크 파열, 폭우
철로·철도	3	태풍, 집중호우, 폭우
항만	1	폭설
학교	1	수돗물 오염
공원	1	싱크홀

- 인천광역시가 물류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난으로 인해 도로 피해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의 측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이나 배수관의 파열로 인한 도로 붕괴나 지반 침해, 수돗물 오염 등의 사례가 인천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업종은 인천광역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③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 설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인천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표 3-7>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운송 관련 업종이 전국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종이라면, 상·하수도, 공항, 항만, 도로 관련 업종은 인천광역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업종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	분류코드	
상·하수도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공항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항만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501 해상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41221 도로 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폐기물 처리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보건·의료	8610 병원	8620 의원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90 기타 보건업
돌봄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운송	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주 : '(501) 해상운송업'에는 '외항 및 내항 여객 운송업'이 포함되며,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에는 '내륙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과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이 포함됨

2.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사업체조사」는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 활용,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 더불어, 2019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자료는 10차 산업분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면접 및 전수 조사를 통해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
- ❖ 필수업무와 관련된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비율은 다음 <표 3-8>와 같다. 또한 <표 3-9>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인천광역시 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광역시 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표 3-8>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유형	구분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	타지역*	인천	타지역*	인천
상·하수도	생활용수 공급업	517	18,045	505	12	17,192	853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¹	16,147	101,324	15,308	839	97,103	4,221
	하수 처리업	719	11,493	695	24	10,898	595
	폐수 처리업	310	4,051	275	35	3,606	445
공항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3,954	49,359	3,830	124	48,065	1,294
	항공 여객 운송업	142	31,565	105	37	29,888	1,677
	항공 화물 운송업	51	1,022	46	5	913	109
	공항 운영업	20	6,041	17	3	2,359	3,682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6	7,617	77	19	3,638	3,979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78	14,344	751	27	12,020	2,32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370	55,903	4,183	187	54,238	1,665
항만	항만,수로,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14	2,665	212	2	2,665	-
	해상운송업	1,122	19,170	979	143	18,059	1,11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136	1,124	125	11	1,076	48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43	3,908	36	7	3,175	73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409	8,666	377	32	8,341	325
철도·도로	도로 건설업	1,945	40,656	1,915	30	40,231	425
	철도 여객 운송업	236	7,311	236	-	7,311	-
	단독 주택 건설업	6,652	52,745	6,433	219	50,453	2,292
폐기물 처리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649	24,936	1,518	131	23,361	1,575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673	4,680	635	38	4,380	30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695	3,678	644	51	3,309	369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593	12,320	566	27	11,378	942
	지정 폐기물 처리업	241	2,582	229	12	2,463	119
	건설 폐기물 처리업	689	9,005	656	33	8,534	471
보건·의료	병원	3,816	577,825	3,627	189	548,309	29,516
	의원	63,445	388,024	60,363	3,082	368,230	19,794
	공중 보건 의료업	3,569	34,759	3,497	72	33,253	1,506
	기타 보건업	4,866	22,550	4,679	187	21,381	1,169
돌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8	166,517	8,485	533	155,989	10,528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65,945	843,359	62,422	3,523	796,607	46,752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070	81,826	1,023	47	80,700	1,126
경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408	69,822	1,340	68	62,053	7,769
운송	육상 여객 운송업	163,725	417,333	154,422	9,303	392,755	24,578
	도로 화물 운송업	204,973	316,505	190,242	14,731	294,798	21,707
	소화물 전문 운송업	9,139	75,620	8,727	412	69,462	6,158
합계		573,375	3,488,350	539,180	34,195	3,288,193	200,157

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도로 분야에도 해당됨

* 타지역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의 종사자 수를 의미함

<표 3-9>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비교 현황

(단위 : 개, 명, %)

유형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인천광역시	비율	전체	인천광역시	비율
상·하수도	생활용수 공급업	517	12	2.3	18,045	853	4.7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¹	16,147	839	5.2	101,324	4,221	4.2
	하수 처리업	719	24	3.3	11,493	595	5.2
	폐수 처리업	310	35	11.3	4,051	445	11.0
공항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3,954	124	3.1	49,359	1,294	2.6
	항공 여객 운송업	142	37	26.1	31,565	1,677	5.3
	항공 화물 운송업	51	5	9.8	1,022	109	10.7
	공항 운영업	20	3	15.0	6,041	3,682	61.0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6	19	19.8	7,617	3,979	52.2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78	27	3.5	14,344	2,324	16.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370	187	4.3	55,903	1,665	3.0
항만	항만,수로,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14	2	0.9	2,665	-	-
	해상운송업	1,122	143	12.7	19,170	1,111	5.8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136	11	8.1	1,124	48	4.3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43	7	16.3	3,908	733	18.8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409	32	7.8	8,666	325	3.8
철도·도로	도로 건설업	1,945	30	1.5	40,656	425	1.0
	철도 여객 운송업	236	-	-	7,311	-	-
	단독 주택 건설업	6,652	219	3.3	52,745	2,292	4.3
폐기물 처리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649	131	7.9	24,936	1,575	6.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673	38	5.6	4,680	300	6.4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695	51	7.3	3,678	369	10.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593	27	4.6	12,320	942	7.6
	지정 폐기물 처리업	241	12	5.0	2,582	119	4.6
	건설 폐기물 처리업	689	33	4.8	9,005	471	5.2
보건·의료	병원	3,816	189	5.0	577,825	29,516	5.1
	의원	63,445	3,082	4.9	388,024	19,794	5.1
	공중 보건 의료업	3,569	72	2.0	34,759	1,506	4.3
	기타 보건업	4,866	187	3.8	22,550	1,169	5.2
돌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8	533	5.9	166,517	10,528	6.3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65,945	3,523	5.3	843,359	46,752	5.5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070	47	4.4	81,826	1,126	1.4
경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408	68	4.8	69,822	7,769	11.1
운송	육상 여객 운송업	163,725	9,303	5.7	417,333	24,578	5.9
	도로 화물 운송업	204,973	14,731	7.2	316,505	21,707	6.9
	소화물 전문 운송업	9,139	412	4.5	75,620	6,158	8.1
합계		573,375	34,195	6.0	3,488,350	200,157	5.7

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도로 분야에도 해당됨

* 타지역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의 종사자 수를 의미함

- ❖ <표 3-8>과 <표 3-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내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는 총 200,15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필수업무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전체 필수업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해당한다.
-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51,849,861명으로 인천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2,957,026명)이다. 따라서 현재 추정된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 전체 필수업무 종사자에서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공항 운영업(61.0%),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2%),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18.8%),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16.2%) 순으로 나타났다.
- ❖ 인천광역시 내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으로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46,752명), 병원(29,516명), 육상 여객 운송업(24,578명), 도로 화물 운송업(21,707명), 의원(19,794명), 순으로 나타났다.
- ❖ 둘째, 인천광역시 내 필수업무 사업체 수는 총 34,195개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필수업무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전체 필수업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해당한다.
-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 수는 4,176,549개로 인천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206,244개)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필수업무 사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천시가 항공 및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타 지역보다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항공 및 항만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발달로 인해 관련 사업체 수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전체 필수업무 사업체에서 인천시 필수업무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항공 여객 운송업(26.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19.8%),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16.3%), 공항 운영업(15.0%), 해상운송업(12.7%), 폐수 처리업(11.3%) 순으로 나타났다.
- ❖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로 화물 운송업(14,731개), 육상 여객 운송업(9,303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523개), 의원(3,082개) 순으로 나타났다.
- ❖ 종합하면,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항공 및 항만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와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천시 내 필수업무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돌봄 서비스(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병원, 의원)와 운송(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업종이므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관심 또한 요구된다.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 처우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필수 업무를 기준으로 상용 종사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상용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정책 대상인 필수업무 종사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음 <표 3-10>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종별 상용 종사자의 비율 현황을 나타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업종은 운송(42.6%), 상·하수도(50.1%), 철도·도로(63.5%), 돌봄(67.8%) 순으로 나타났다.
- 둘째,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용 종사자의 비율 차이가 큰 업종으로는 경비(-9.7%), 돌봄(-3.5%), 콜센터(-0.9%) 순으로 나타났다.
-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업종 종사자의 상용 종사자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국 상용종사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사회간접자본시설(SOC) 업종 종사자의 상용 종사자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국 상용종사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3-1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비교 현황

유형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상용 종사자 비율 비교(%)
		총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비율(%)	총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비율(%)	
SOC 유형	공항	13,436	12,887	95.9%	165,851	136,142	82.1%	13.8%
	상·하수도	6,114	3,063	50.1%	134,913	67,697	50.2%	-0.1%
	운송	52,443	22,365	42.6%	809,458	315,975	39.0%	3.6%
	철도·도로	2,717	1,724	63.5%	100,712	54,399	54.0%	9.4%
SOC이외 유형	경비	7,769	6,090	78.4%	69,822	61,512	88.1%	-9.7%
	돌봄	57,280	38,849	67.8%	1,009,876	720,723	71.4%	-3.5%
	보건·의료	51,985	46,261	89.0%	1,023,158	909,783	88.9%	0.1%
	콜센터	1,126	1,034	91.8%	81,826	75,897	92.8%	-0.9%
	폐기물 처리	3,776	3,560	94.3%	57,201	52,155	9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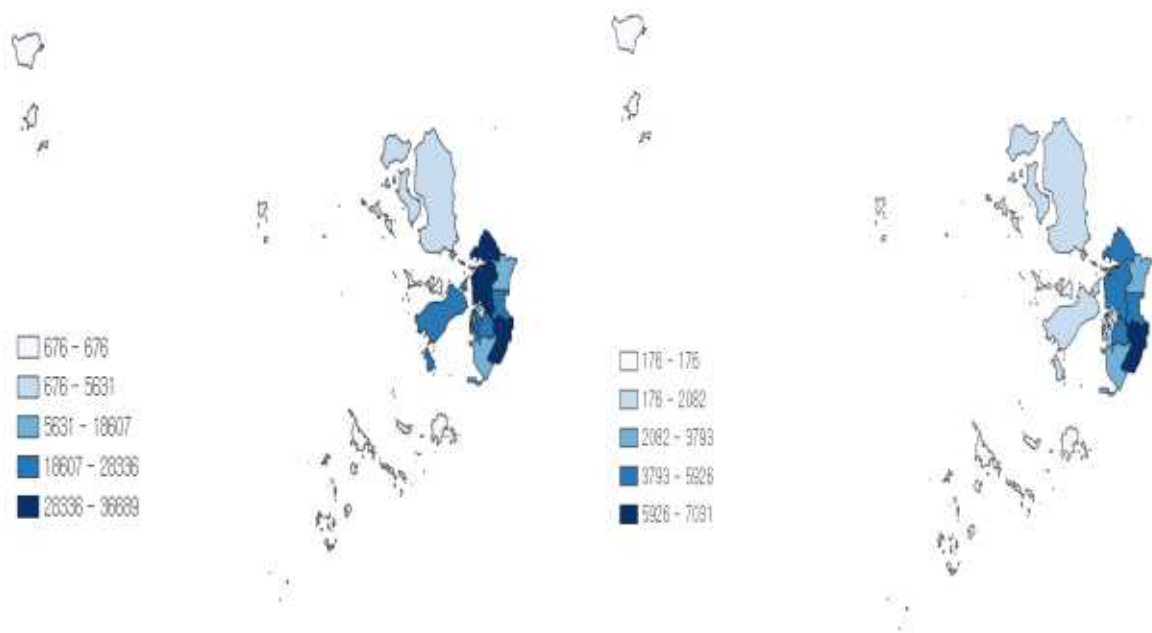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군·구)

- ❖ 다음 <그림 3-2> 및 <표 3-11>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군·구별 분포현황을 나타내며, 「전국 사업체 조사」의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를 활용해 작성하였다.
- ❖ 해당 자료는 2019년 자료만 공개되고 있으며, X표기는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군·구별 현황은 앞선 <표 3-8>과 <표 3-9>의 현황과 불일치할 수 있으며,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한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군·구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Jenks(1967)의 '네츄럴 브레이크(Natural Breaks) 등간격'을 활용하였다. 네츄럴 브레이크 등간격은 간격 내 분산을 최소화하고 간격 간 분산을 최대화하여 군집 패턴을 분류하는 방식이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자료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간격 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문승민 외, 2016: 59에서 재인용).
- ❖ 더불어,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자료값은 0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석 시 등간격은 자료값의 분포에 따라 설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수와 사업체 수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① 필수업무 종사자 분포현황

- 필수업무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종사자 수를 0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림 3-2> 필수업무 종사자 분포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1> 필수업무 종사자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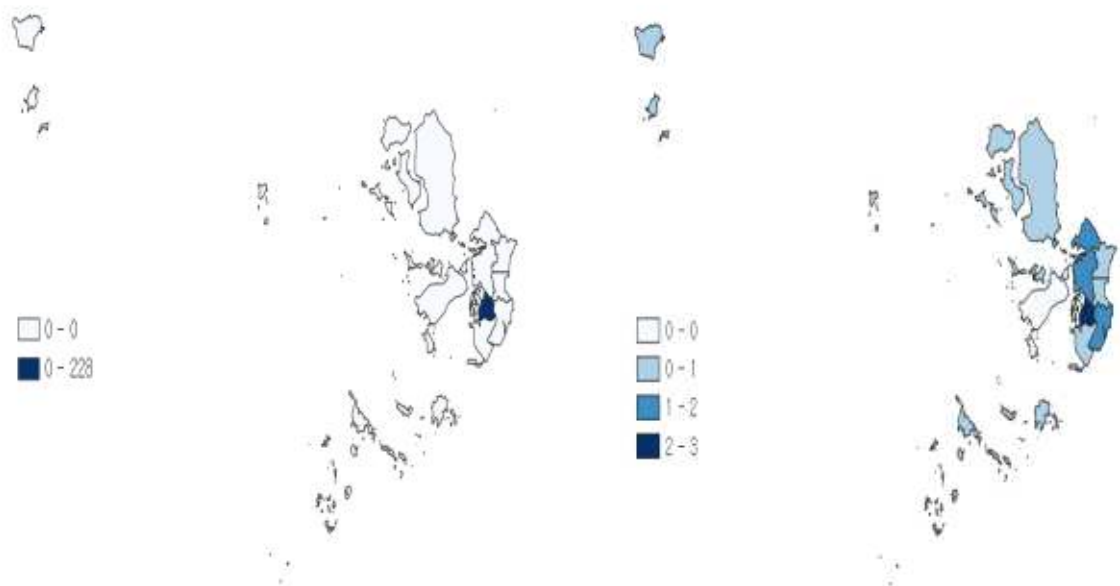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96,933	28,336	5,631	17,401	36,689	27,506	18,607	32,740	25,008	4,339	676
사업체수	34,195	2,082	1,116	2,965	7,031	5,532	3,793	5,926	4,859	715	176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② 생활용수 공급업 분포현황

- 생활용수 공급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추홀구로 나타났다. 다만, 미추홀구의 종사자 수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 생활용수 공급업의 종사자 수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생활용수 공급업의 사업체 수는 군·구 간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3-3> 생활용수 공급업 분포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2> 생활용수 공급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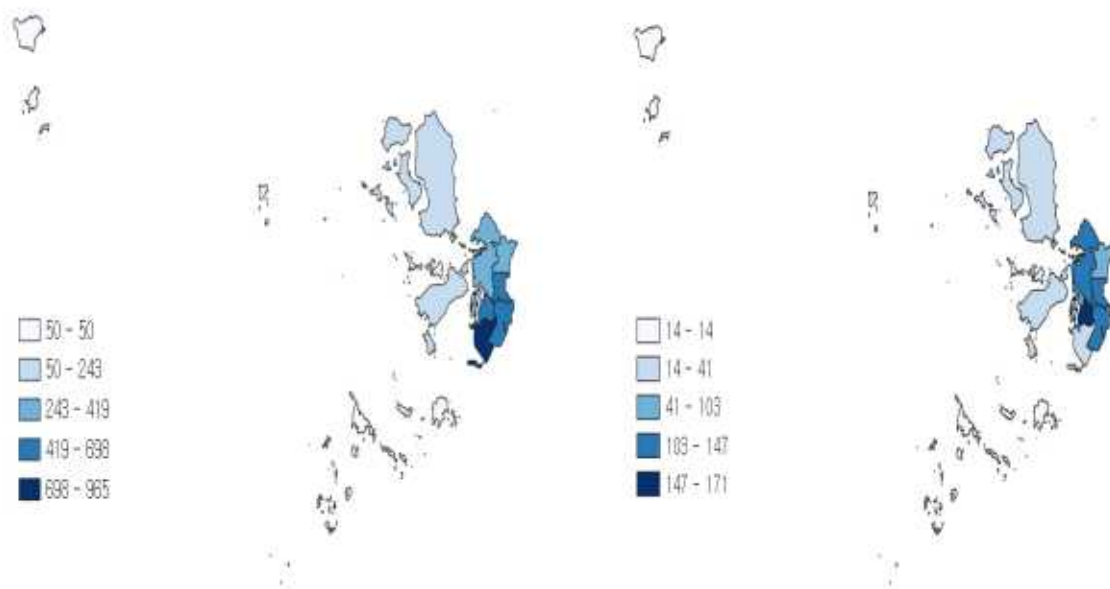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28			X	X	X	X	X	228	X	X
사업체수	12			1	2	1	1	2	3	1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분포현황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추홀구,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분포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3>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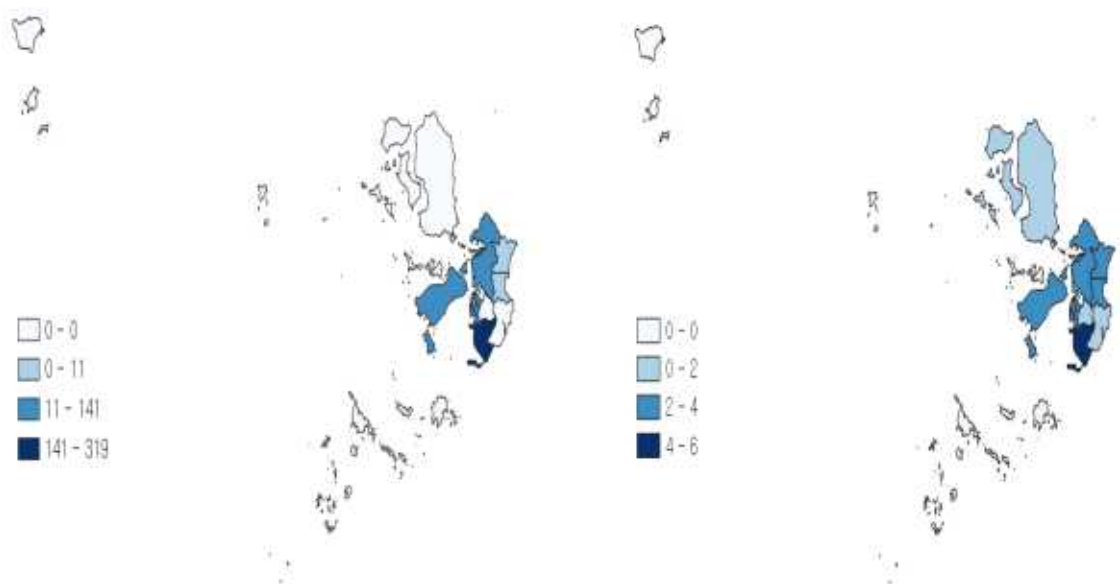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4,221	99	243	965	698	553	419	413	666	115	50
사업체수	839	29	60	41	147	123	103	123	171	28	14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④ 하수 처리업 분포현황

- 하수 처리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로 나타났다.
- 하수 처리업의 종사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평구이며, 사업체가 가장 적은 지역은 미추홀구로 나타났다.
-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하수 처리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하수 처리업의 사업체 수는 군·구 간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3-5> 하수 처리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4> 하수 처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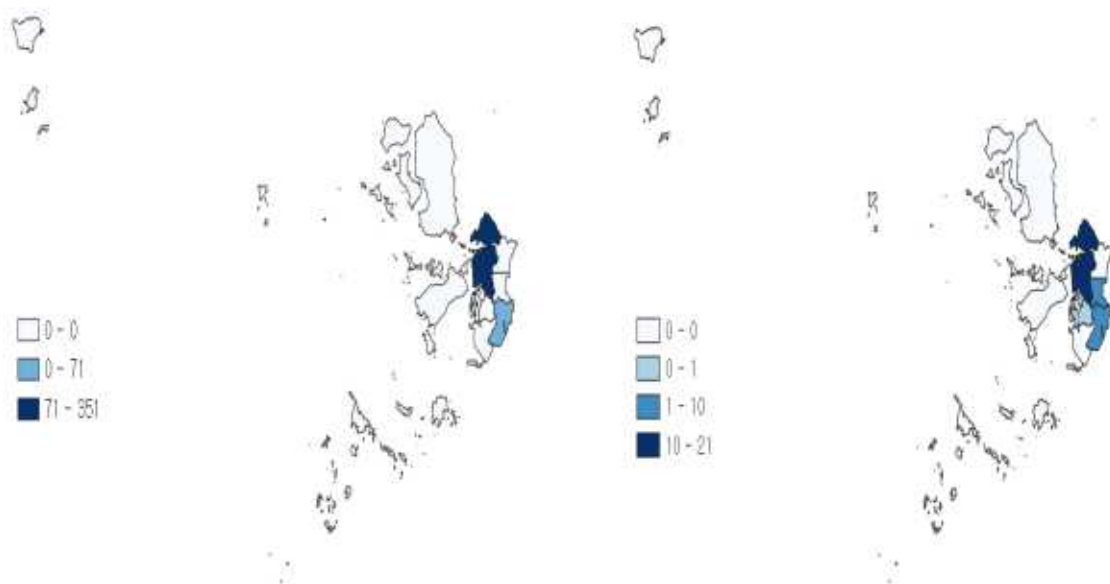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557	76		319	X	10	11	141	X	X	
사업체수	24	3		6	2	3	3	4	1	2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⑤ 폐수 처리업 분포현황

- 폐수 처리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폐수 처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 미추홀구로 나타났다.
-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폐수 처리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6> 폐수 처리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5> 폐수 처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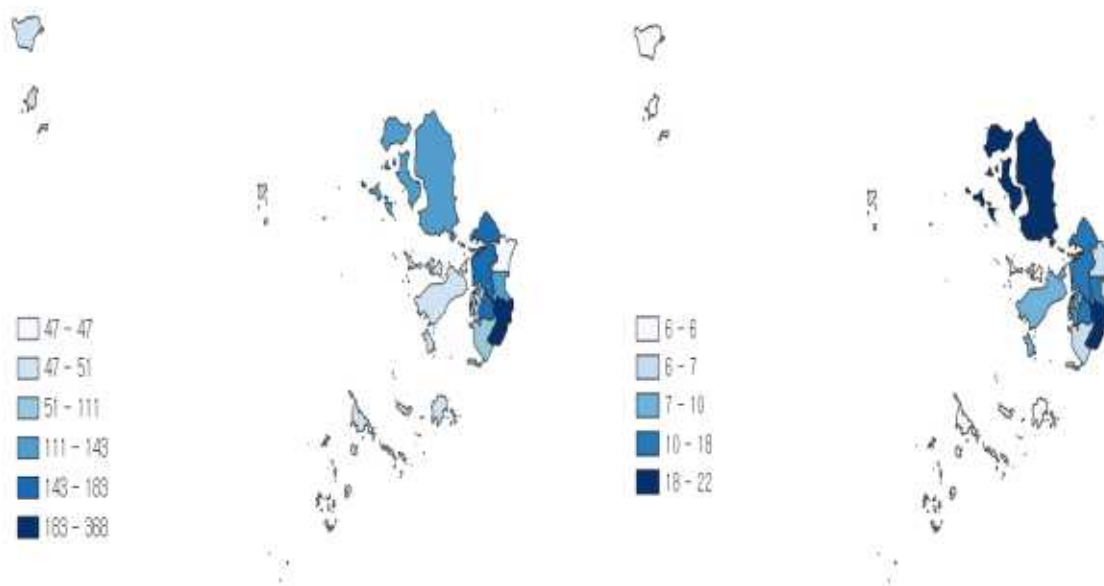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422	-	X	-	71	X	-	351	X	-	-
사업 체수	35	-	1	-	10	2	-	21	1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⑥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분포현황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계양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6>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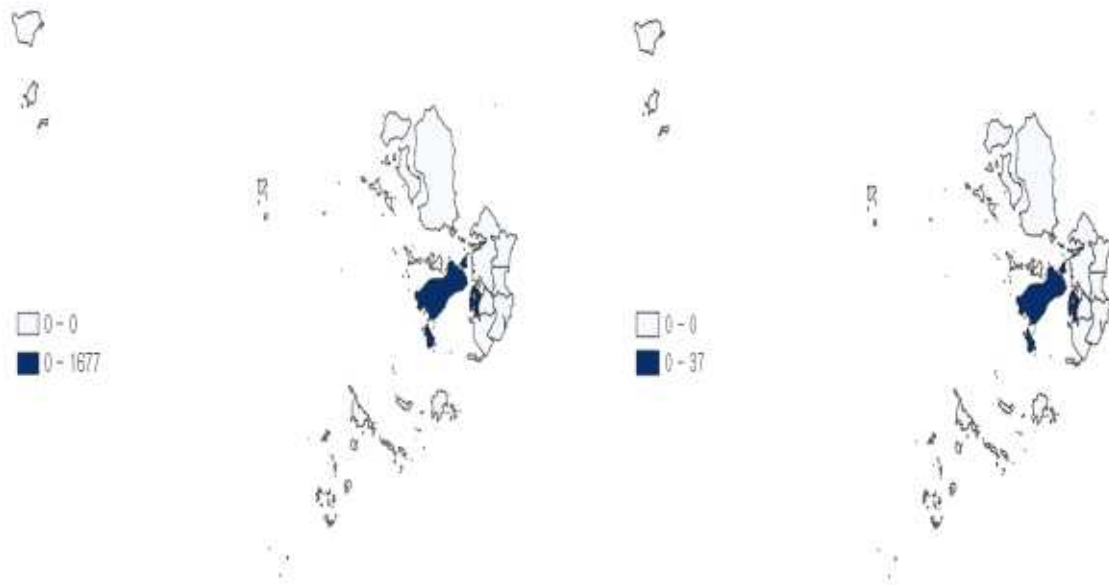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294	51	62	111	368	123	47	158	183	143	48
사업체수	124	10	9	7	22	11	7	12	18	22	6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⑦ 항공 여객 운송업 분포현황

✚ 항공 여객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는 중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8> 항공 여객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7> 항공 여객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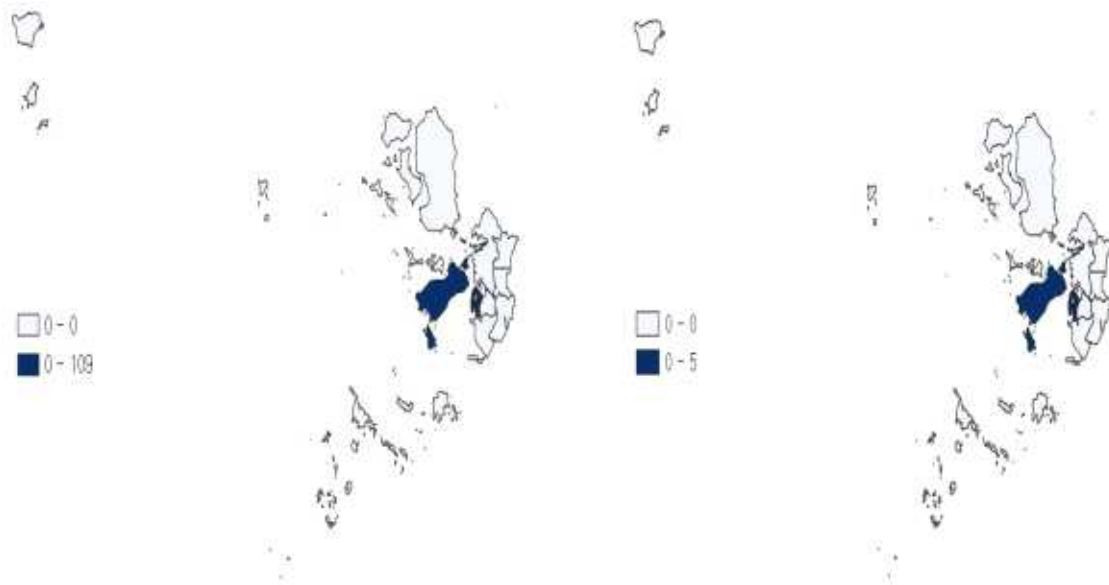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677	1,677	-	-	-	-	-	-	-	-	-
사업체수	37	37	-	-	-	-	-	-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⑧ 항공 화물 운송업 분포현황

✚ 항공 화물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는 중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9> 항공 화물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8> 항공 화물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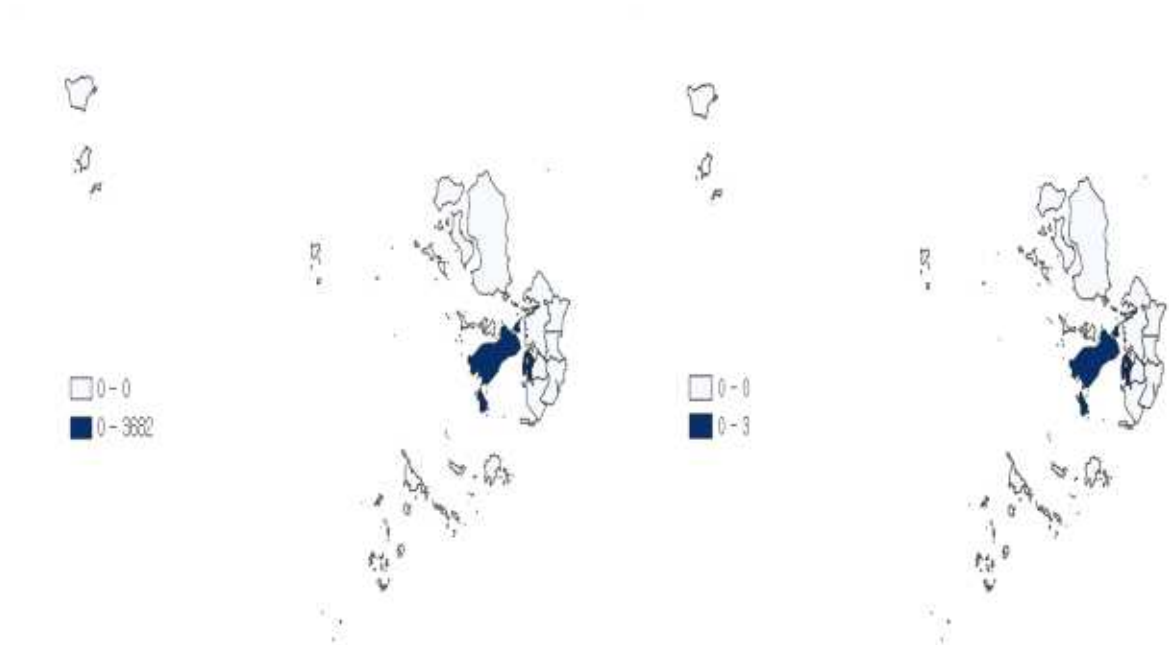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109	109	-	-	-	-	-	-	-	-	-
사업 체수	5	5	-	-	-	-	-	-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⑨ 공항 운영업 분포현황

- 공항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 공항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는 중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0> 공항 운영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19> 공항 운영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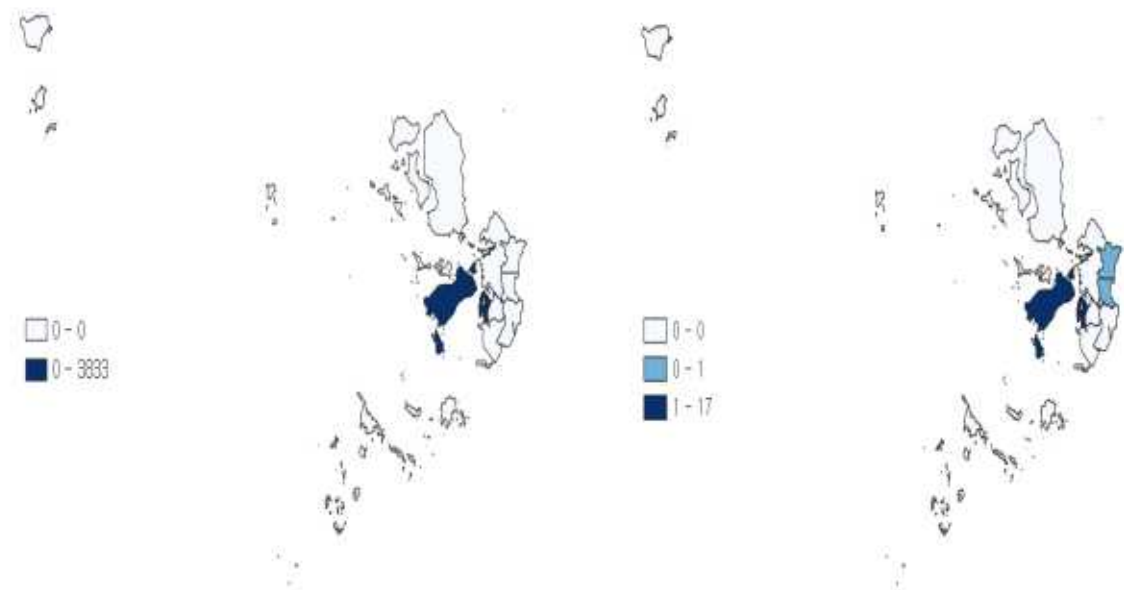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3,682	3,682	-	-	-	-	-	-	-	-	-
사업 체수	3	3	-	-	-	-	-	-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⑩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분포현황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다만, 중구의 종사자 수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평구, 계양구로 나타났다.
- 부평구, 계양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0>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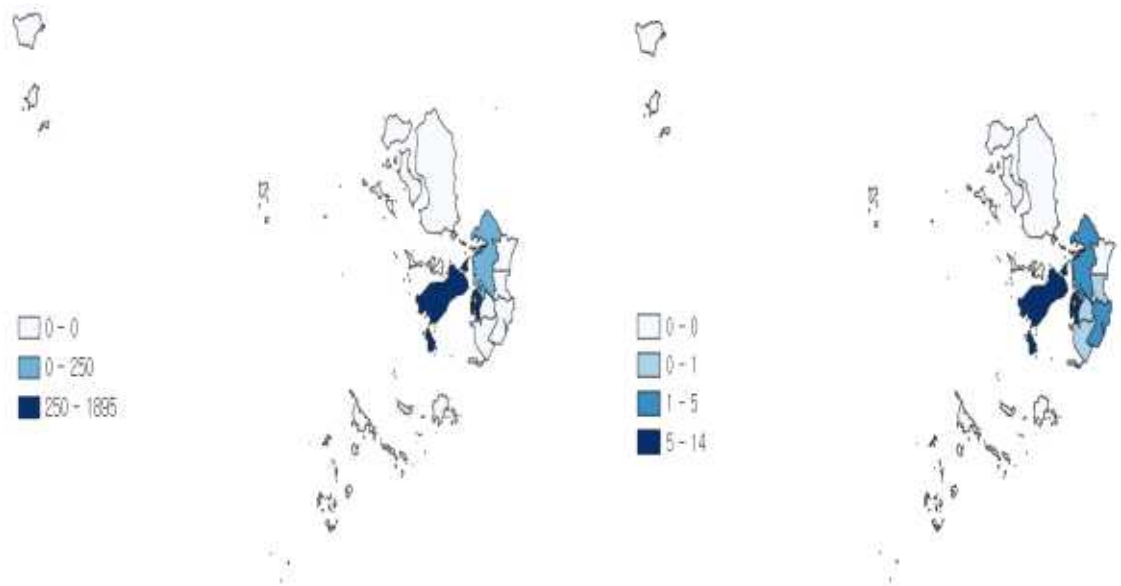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3,833	3,833	-	-	-	X	X	-	-	-	-
사업체수	19	17	-	-	-	1	1	-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⑪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분포현황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수구, 부평구, 미추홀구로 나타났다.
-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2>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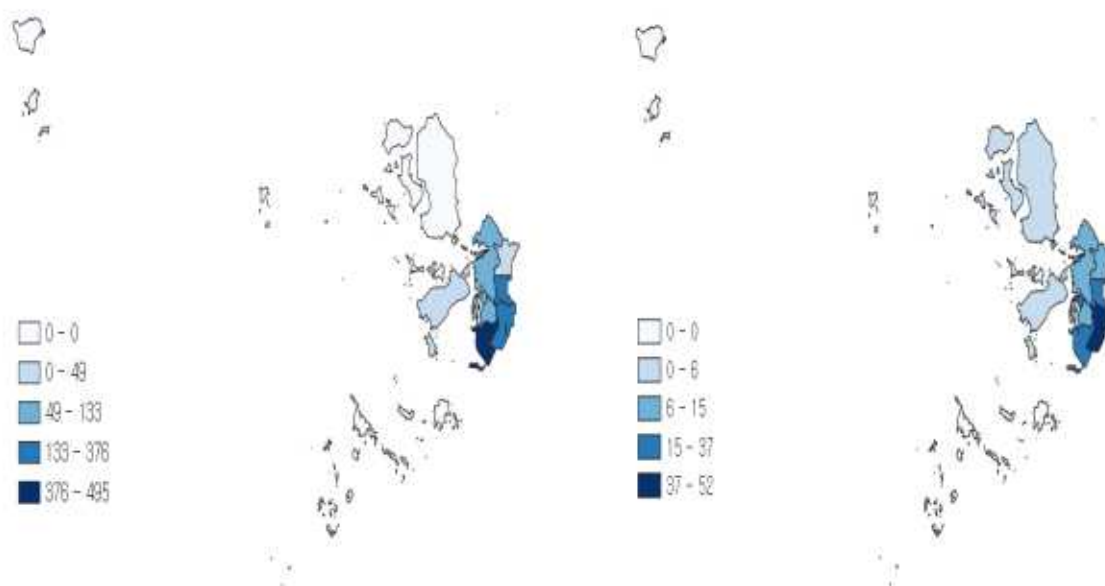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242	1,895	250	X	X	X	-	97	X	-	-
사업체수	27	14	5	1	2	1	-	3	1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⑫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포현황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이며,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 강화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3>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포표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662	10	129	495	364	376	49	133	106	X	-
사업체수	187	6	22	37	52	28	12	15	14	1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⑬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남동구, 서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사자수의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
- 반면, 남동구와 서구의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의 사업체 수는 모두 1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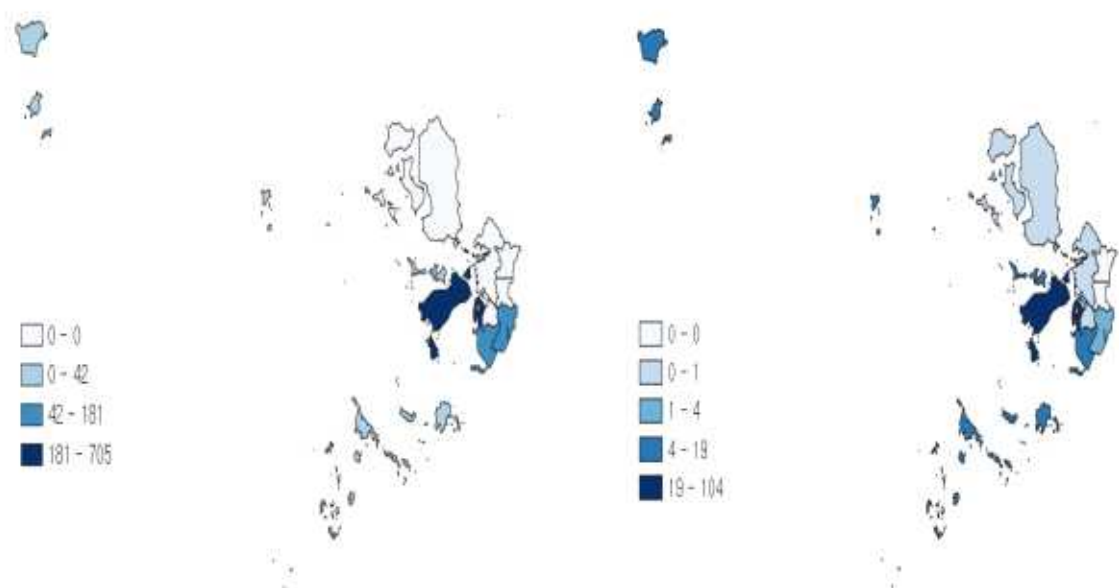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	-	-	-	X	-	-	X	-	-	-
사업체수	2	-	-	-	1	-	-	1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⑭ 해상 운송업 분포현황

- 해상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 해상 운송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 동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해상 운송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5> 해상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4> 해상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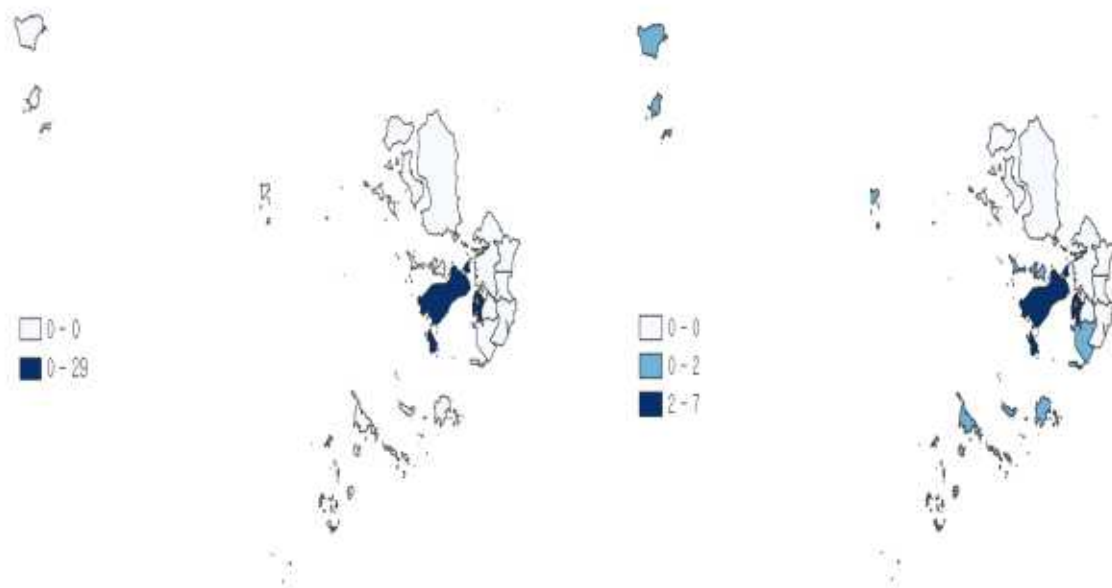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990	705	X	181	62	-	-	X	X	X	42
사업체수	143	104	2	11	4	-	-	1	1	1	19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⑮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분포현황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다만, 중구의 종사자 수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 연수구와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6>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5>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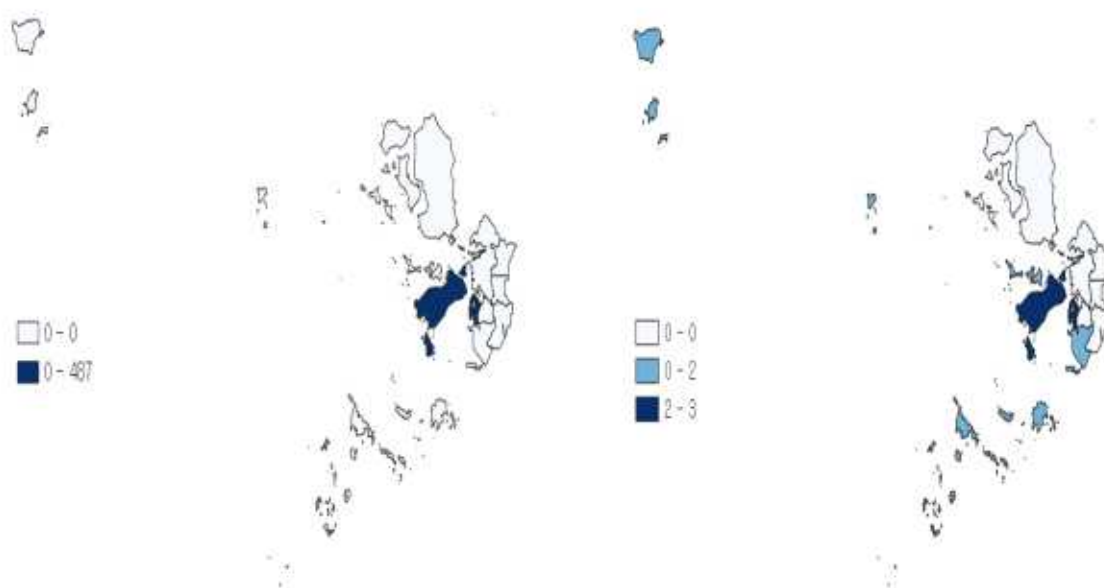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9	29	-	X	-	-	-	-	-	-	X
사업체수	11	7	-	2	-	-	-	-	-	-	2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⑯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분포현황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다만, 중구의 종사자 수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의 사업체 수는 군·구 간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연수구와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7>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6>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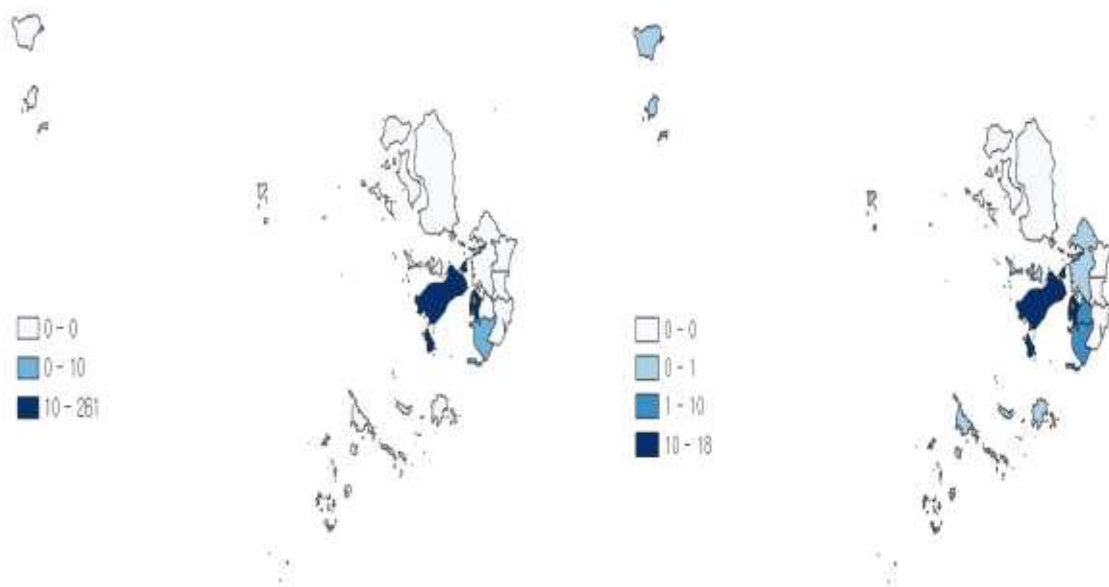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487	487	-	X	-	-	-	-	-	-	X
사업체수	7	3	-	2	-	-	-	-	-	-	2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⑰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분포현황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다만, 중구 및 연수구의 종사자 수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구,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서구, 미추홀구,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8>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7>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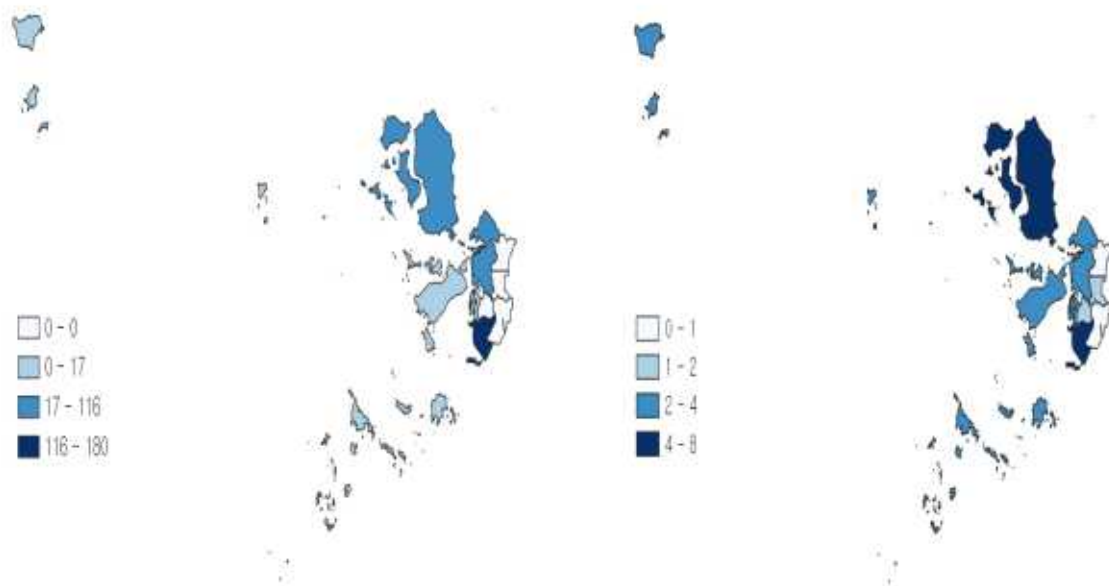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71	261	-	10	-	-	-	X	X	-	X
사업체수	32	18	-	10	-	-	-	1	2	-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⑱ 도로 건설업 분포현황

- 도로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 도로 건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남동구, 계양구로 나타났다.
-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도로 건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9> 도로 건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8> 도로 건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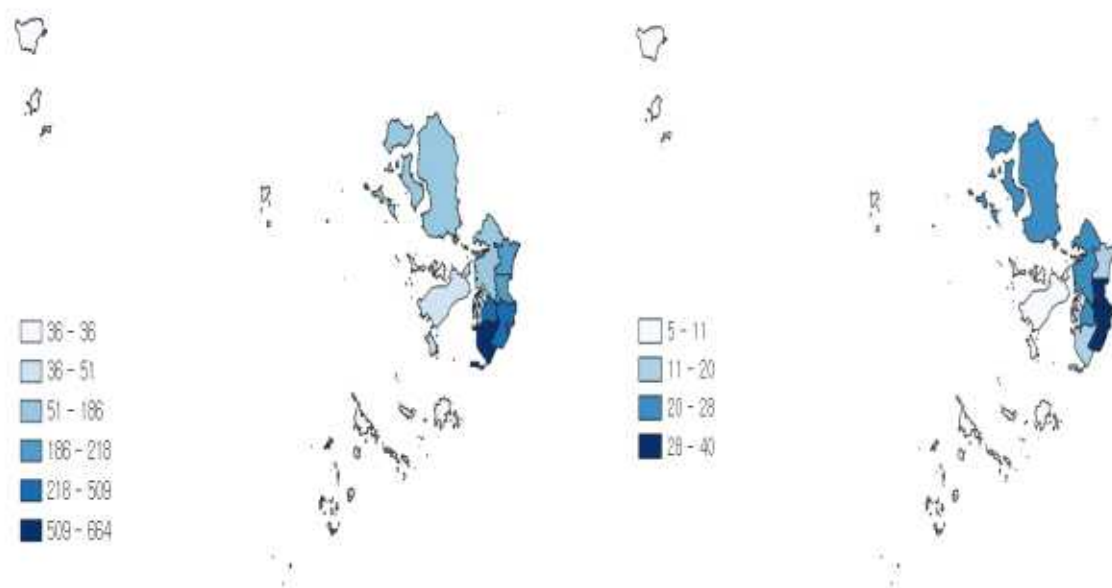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351	16	-	180	X	X	X	22	X	116	17
사업체수	30	4	-	6	1	2	1	3	2	8	3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⑬ 단독 주택 건설업 분포현황

- 단독 주택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단독 주택 건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로 나타났다.

<그림 3-20> 단독 주택 건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29> 단독 주택 건설업 분포표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292	51	49	664	509	218	212	186	283	84	36
사업체수	219	11	5	20	40	35	18	26	28	2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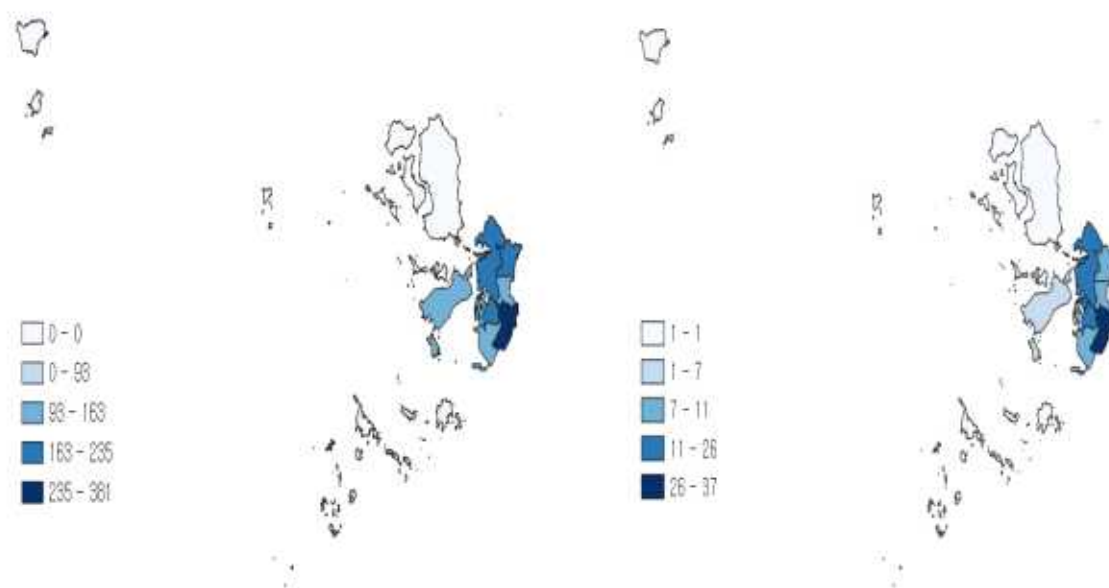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②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현황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강화군,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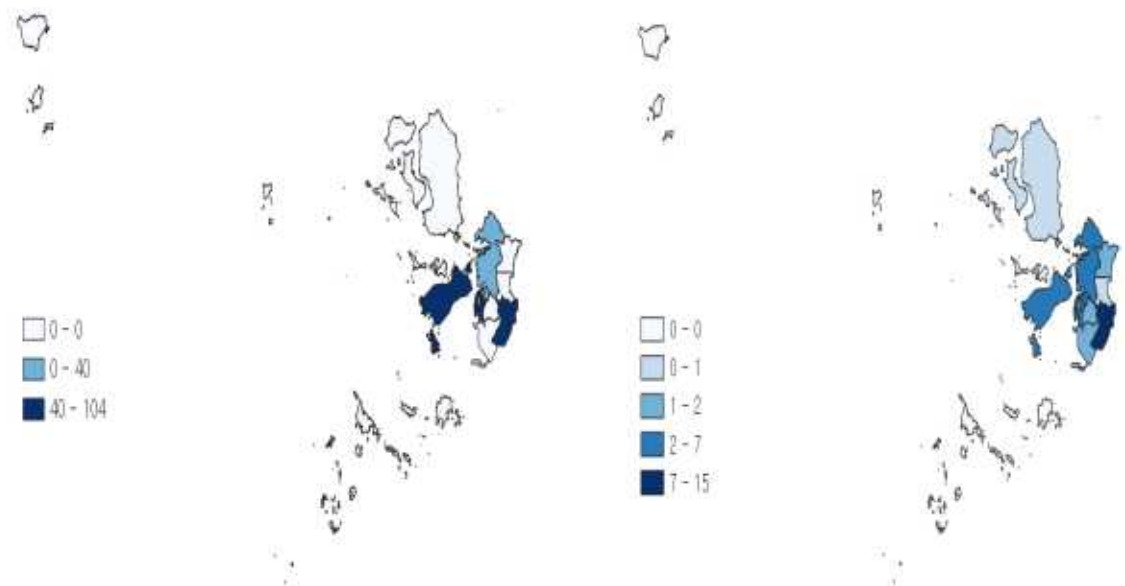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570	131	93	147	381	163	235	224	196	X	X
사업체수	131	7	13	10	37	11	11	26	14	1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⑫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현황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평구,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강화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1>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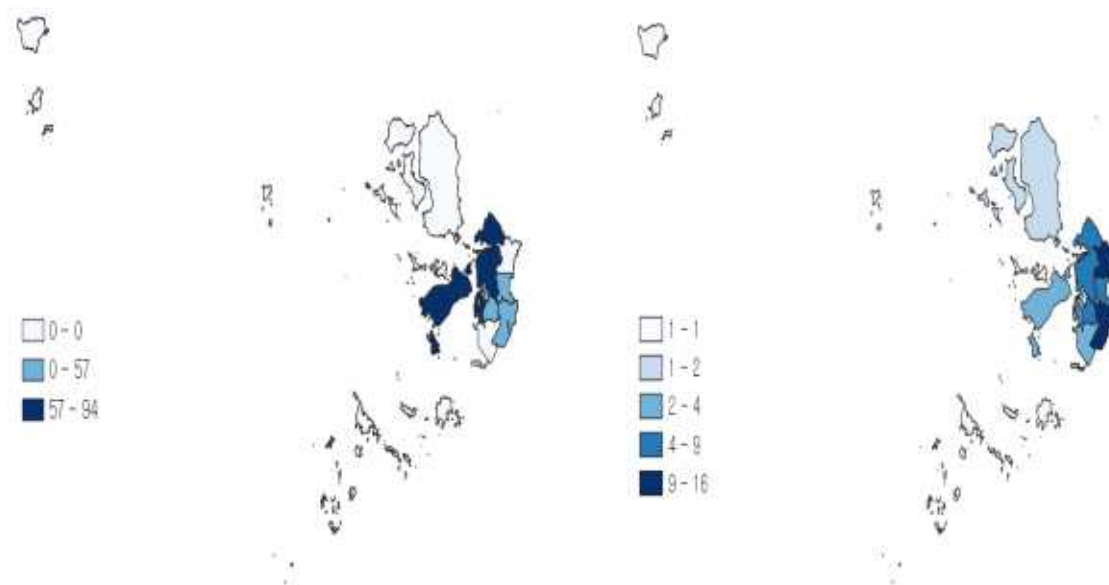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49	90	15	X	104	X	X	40	X	X	-
사업체수	38	4	4	2	15	1	2	7	2	1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㉓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현황

-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2>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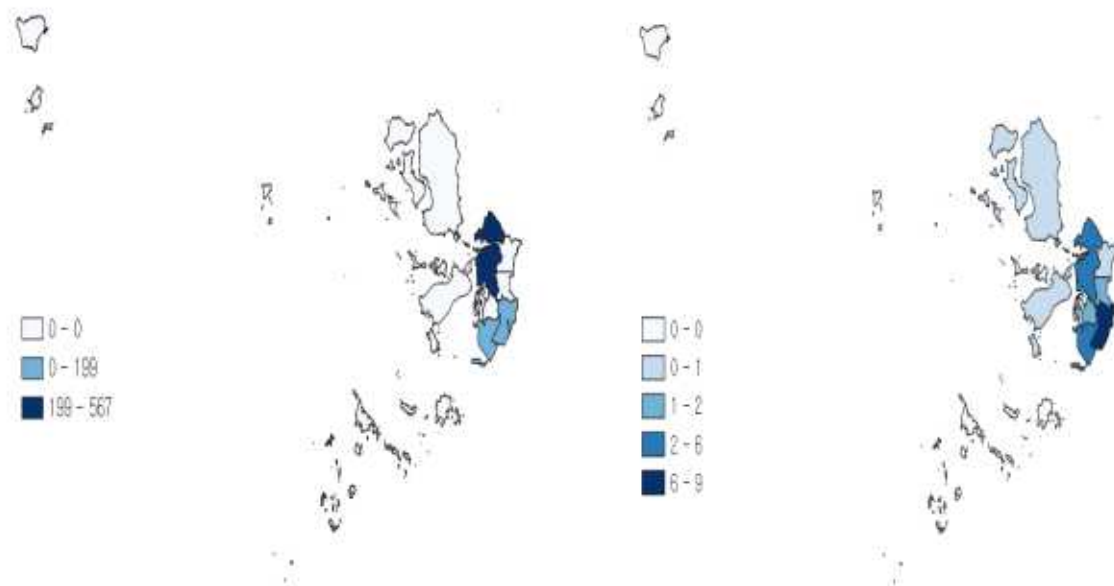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331	72	34	X	57	33	X	94	41	X	X
사업체수	51	4	4	1	9	7	2	16	6	1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②4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분포현황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계양구로 나타났다.
- 중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강화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4>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3>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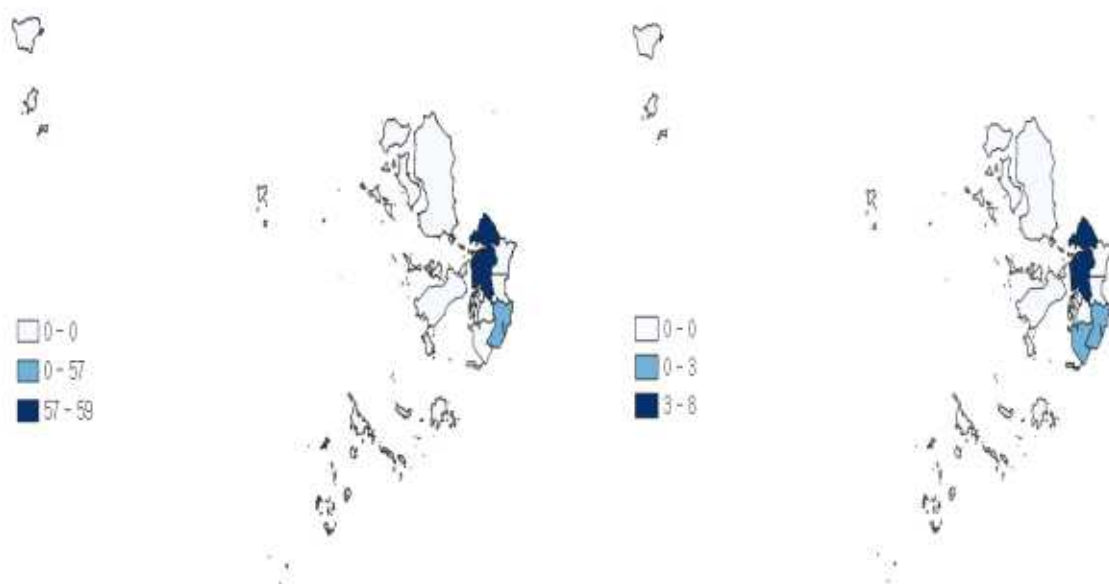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866	X	-	199	100	X	X	567	X	X	-
사업체수	27	1	-	5	9	2	1	6	2	1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㉕ 지정 폐기물 처리업 분포현황

- 지정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지정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수구로 나타났다.
- 연수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지정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5> 지정 폐기물 처리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4> 지정 폐기물 처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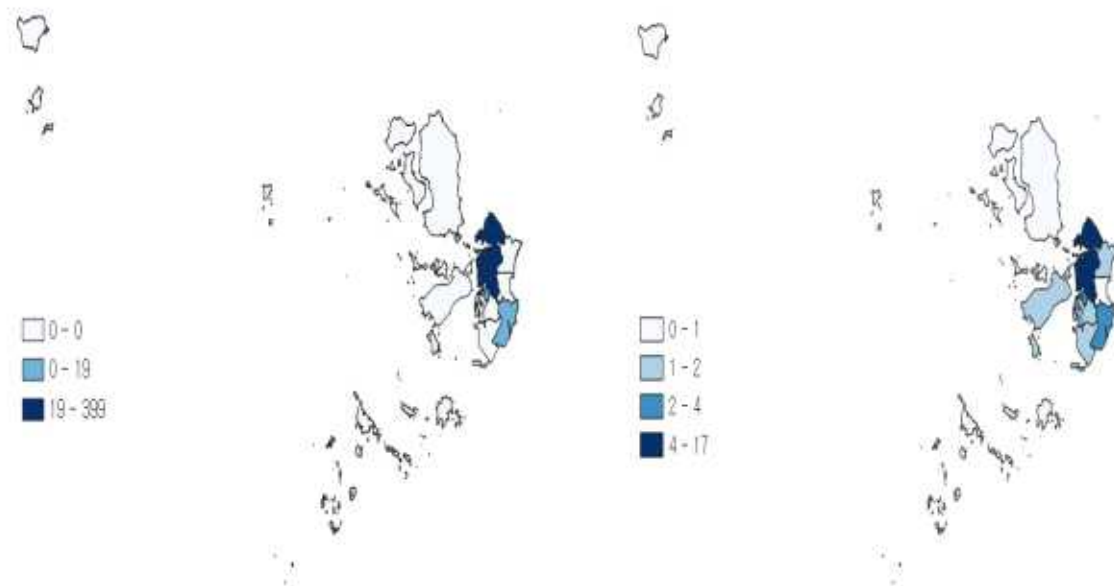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16	-	-	X	57	-	-	59	-	-	-
사업체수	12	-	-	1	3	-	-	8	-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㉔ 건설 폐기물 처리업 분포현황

-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평구로 나타났다.
-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6> 건설 폐기물 처리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5> 건설 폐기물 처리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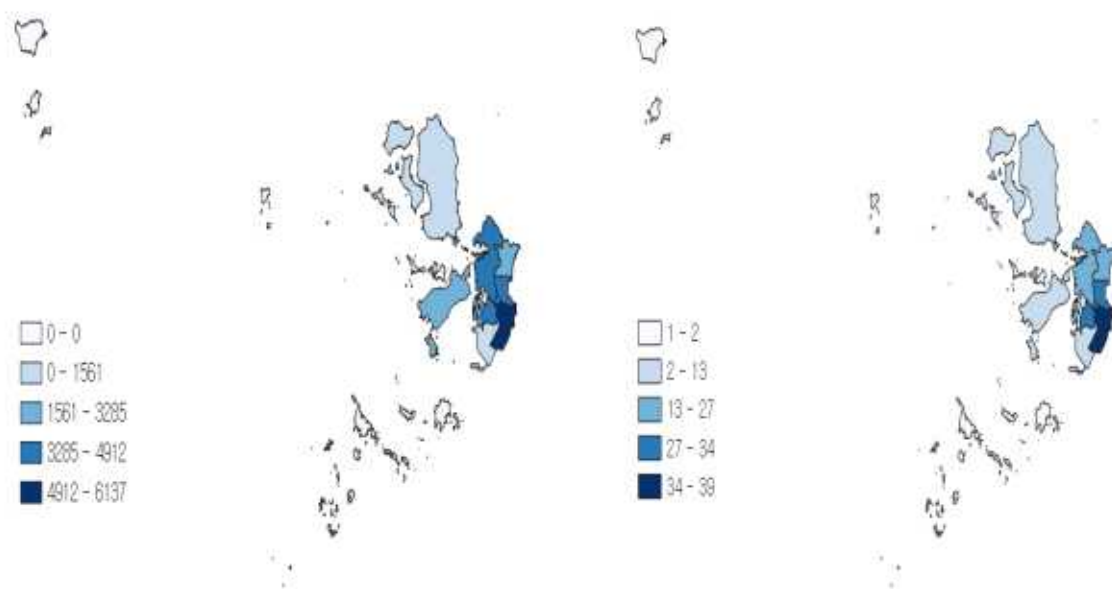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430	X	19	X	12	X	X	399	X	-	-
사업체수	33	2	3	2	4	1	2	17	2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②⑦ 병원 분포현황

- 병원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병원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동구,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병원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7> 병원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6> 병원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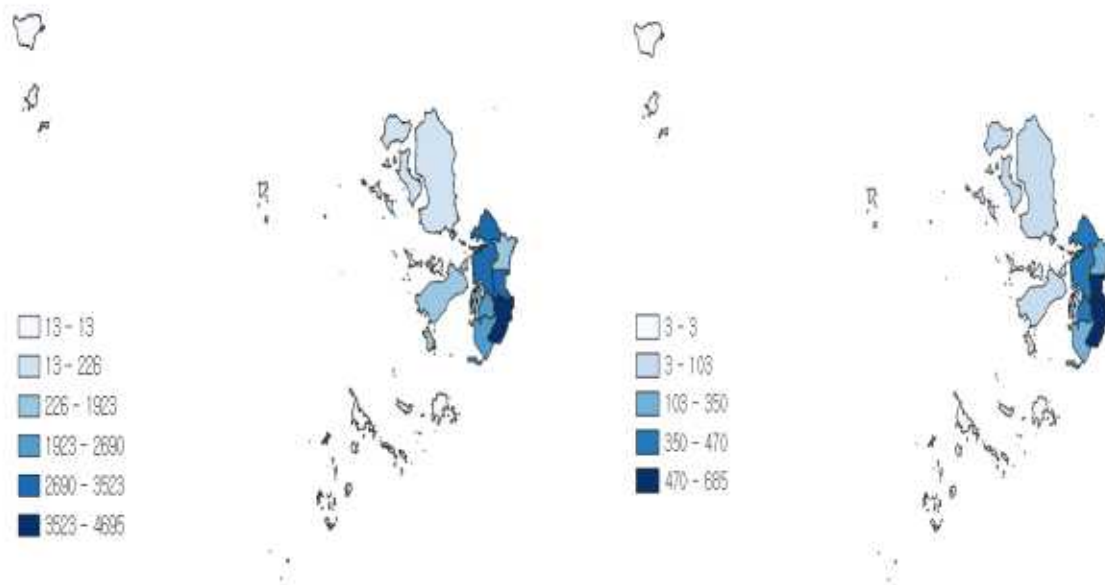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28,722	2,944	X	1,561	6,137	4,912	3,285	4,846	4,548	489	X
사업 체수	189	9	2	13	39	32	24	27	34	8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㉔ 의원 분포현황

- ❑ 의원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의원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7> 의원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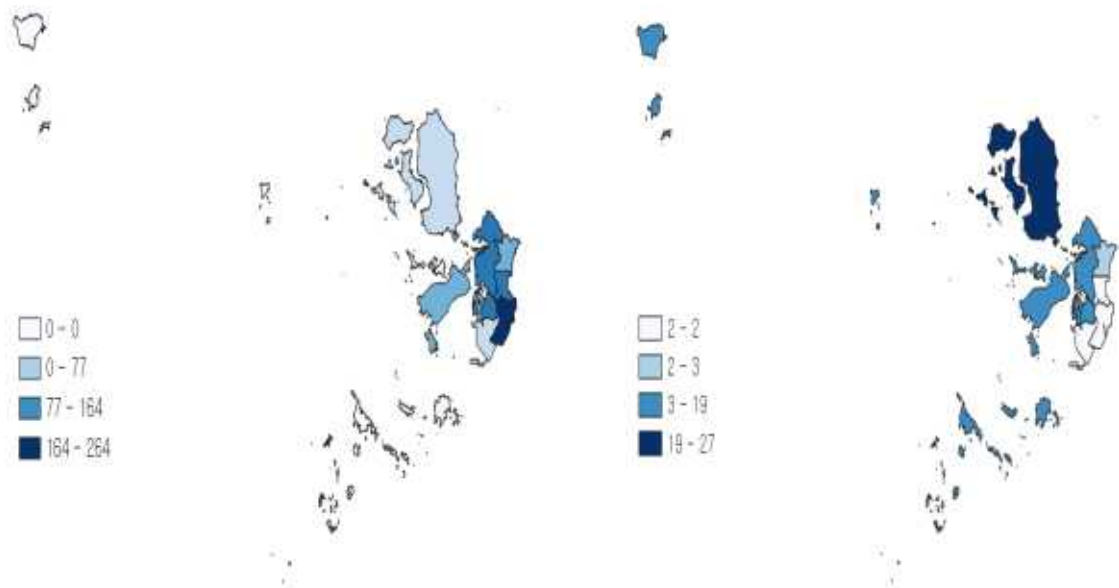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9,794	614	488	2,690	4,695	3,523	1,923	2,979	2,643	226	13
사업체수	3,082	103	82	350	685	591	329	470	421	48	3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 공중 보건 의료업 분포현황

- ❖ 공중 보건 의료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추홀구로 나타났다.
- ❖ 공중 보건 의료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로 나타났다.
- ❖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공중 보건 의료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9> 공중 보건 의료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8> 공중 보건 의료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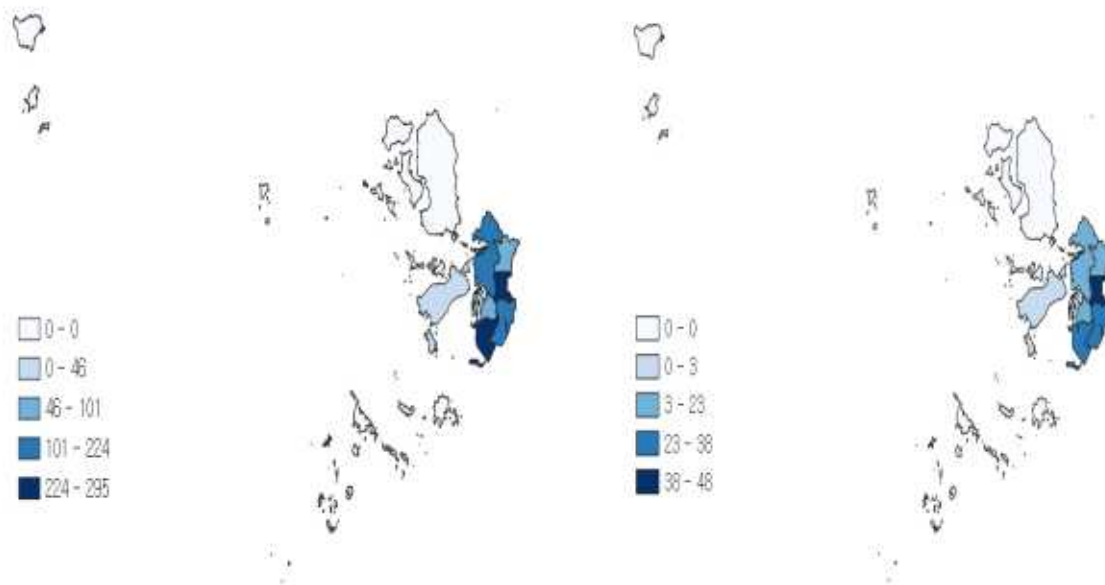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964	147	X	X	X	X	158	154	264	164	77
사업체수	72	5	2	2	2	2	3	5	5	27	19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 기타 보건업 분포현황

- 기타 보건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그림 3-30> 기타 보건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39> 기타 보건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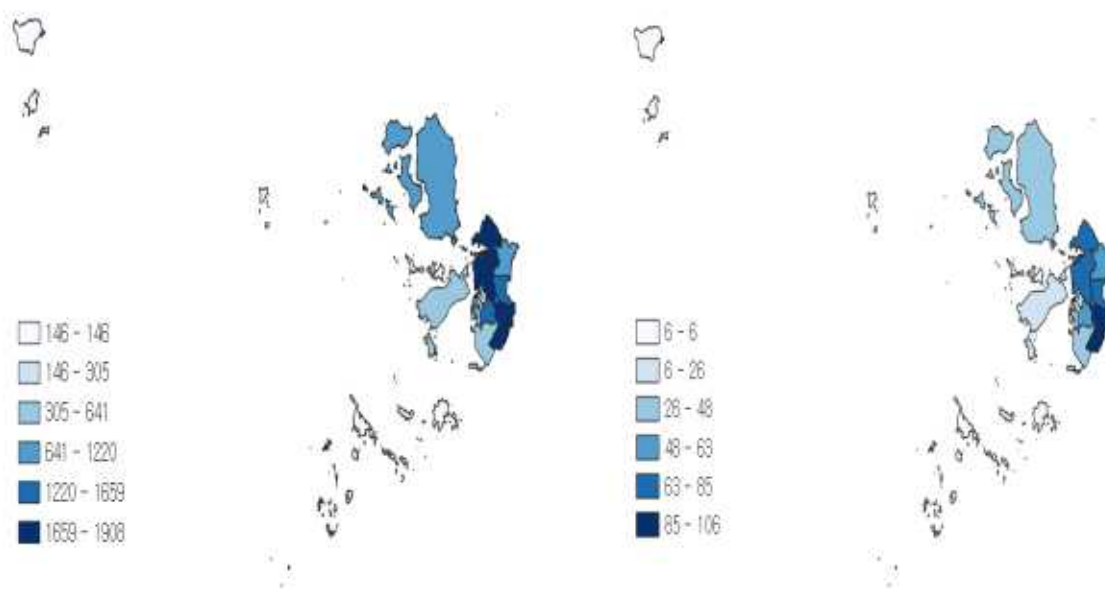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1,169	13	46	282	224	295	101	135	73	-	-
사업체수	187	3	3	29	38	48	21	22	23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분포현황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분포표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10,528	479	305	641	1,771	1,659	1,220	1,908	1,461	938	146
사업 체수	533	26	13	42	106	84	63	85	60	4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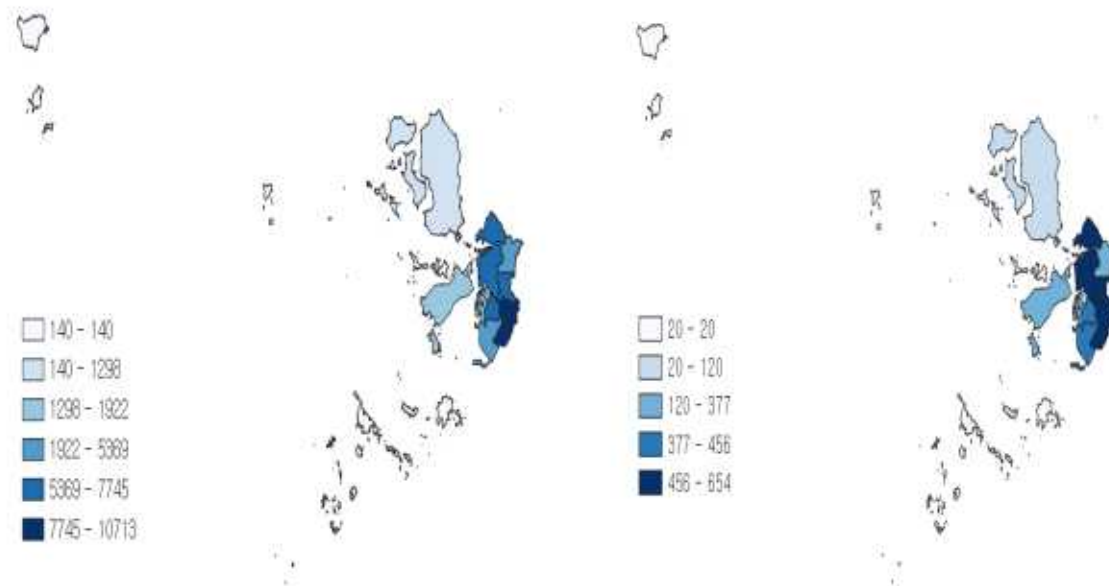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분포현황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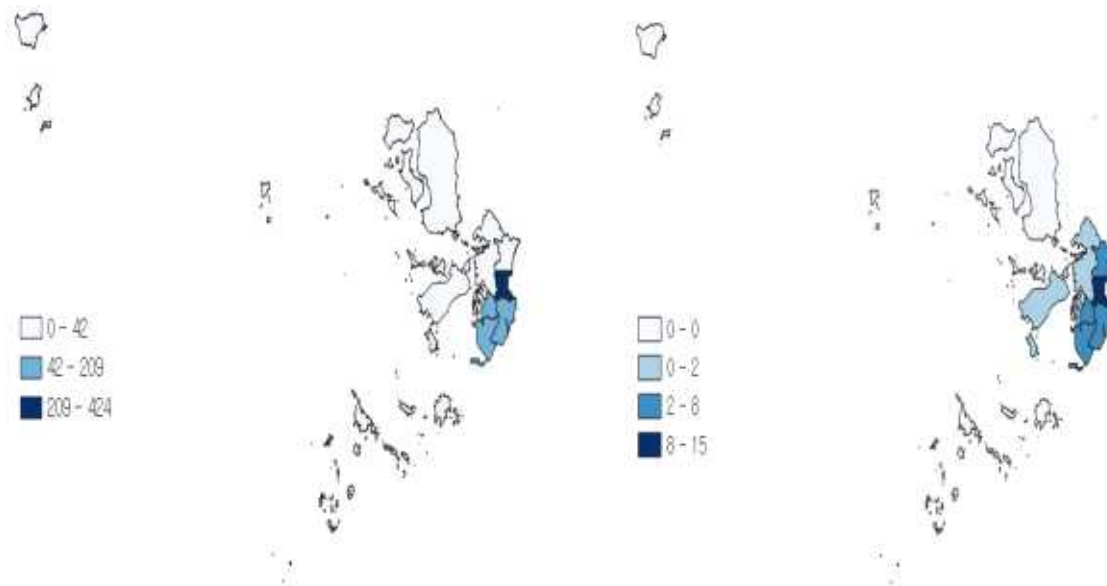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46,752	1,922	1,671	4,640	1,0713	7,745	5,369	6,704	6,550	1,298	140
사업체수	3,523	183	120	444	654	575	377	624	456	70	20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분포현황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로 나타났다.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로 나타났다.
- ❖ 중구, 동구, 서구는 비밀보호를 위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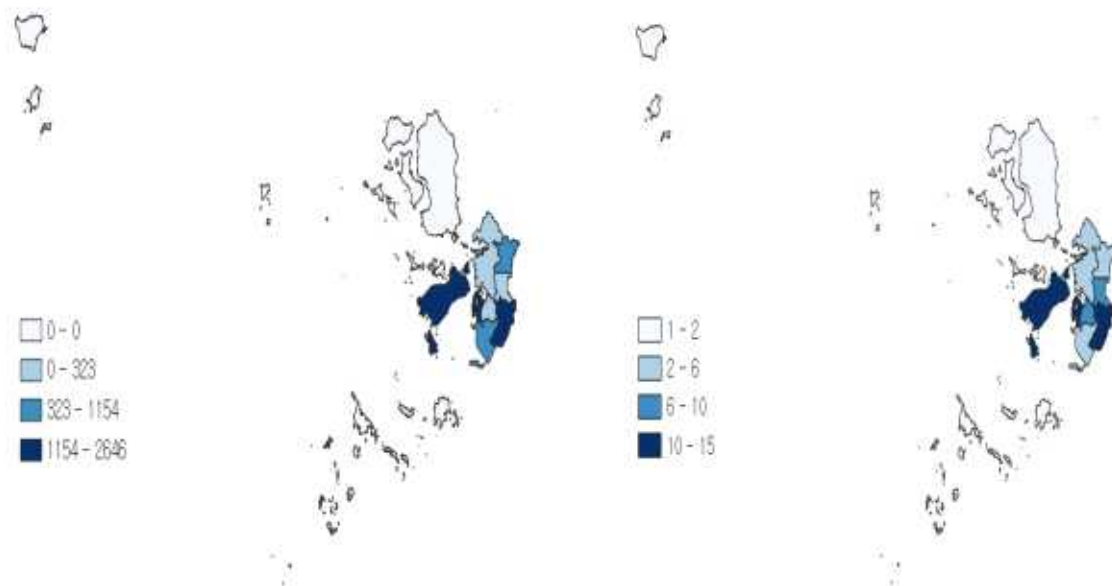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930	X	X	209	162	424	42	X	93	-	-
사업체수	47	2	1	8	7	15	7	2	5	-	-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4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분포현황

-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다.
-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34>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3>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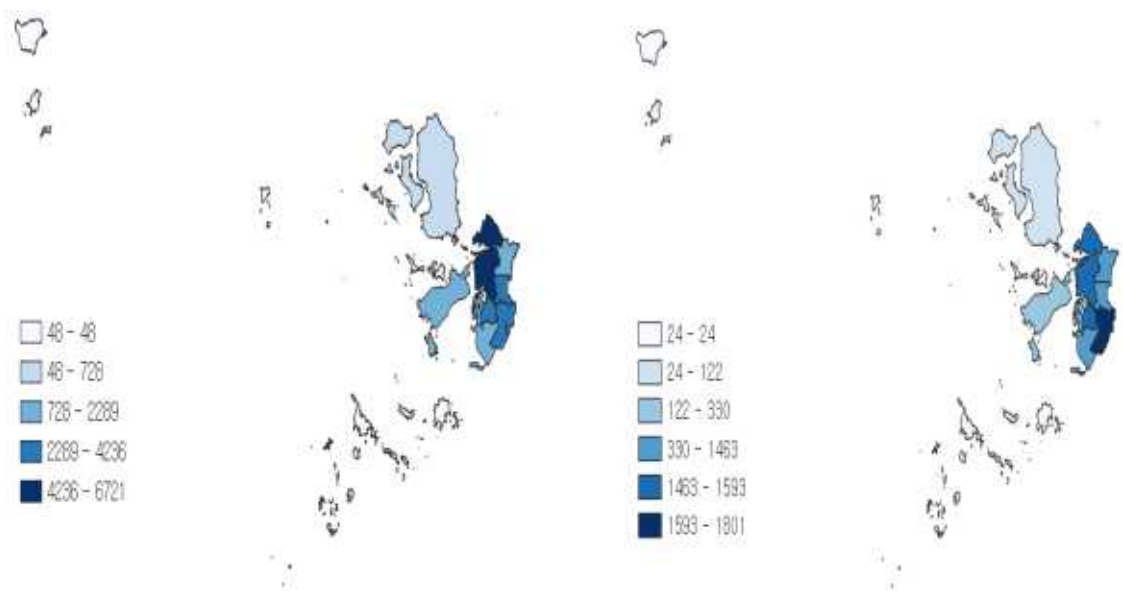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7,744	2,646	X	660	2,520	259	1,154	323	182	X	X
사업체수	68	15	2	5	14	10	6	5	9	1	1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㉓ 육상 여객 운송업 분포현황

- 육상 여객 운송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 육상 여객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육상 여객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4> 육상 여객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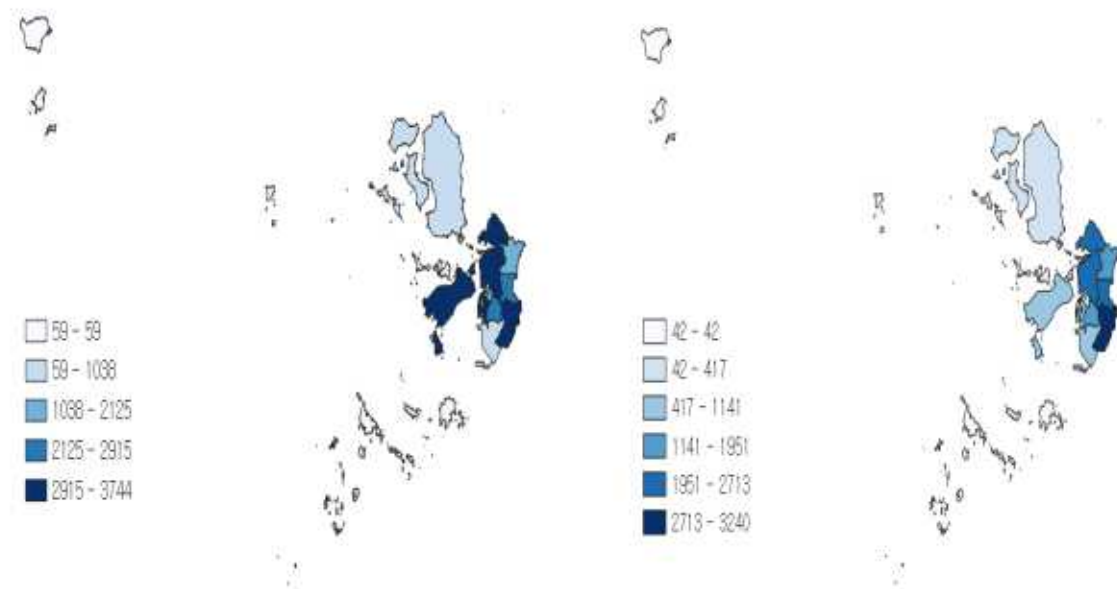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 구	남동 구	부평 구	계양 구	서구	미추 홀구	강화 군	옹진 군
근로 자수	24,578	1,605	728	2,289	3,310	3,400	1,863	6,721	4,236	378	48
사업 체수	9,303	248	330	1,055	1,801	1,463	1,084	1,583	1,593	122	24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⑥ 도로 화물 운송업 분포현황

- 도로 화물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도로 화물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표 3-45> 도로 화물 운송업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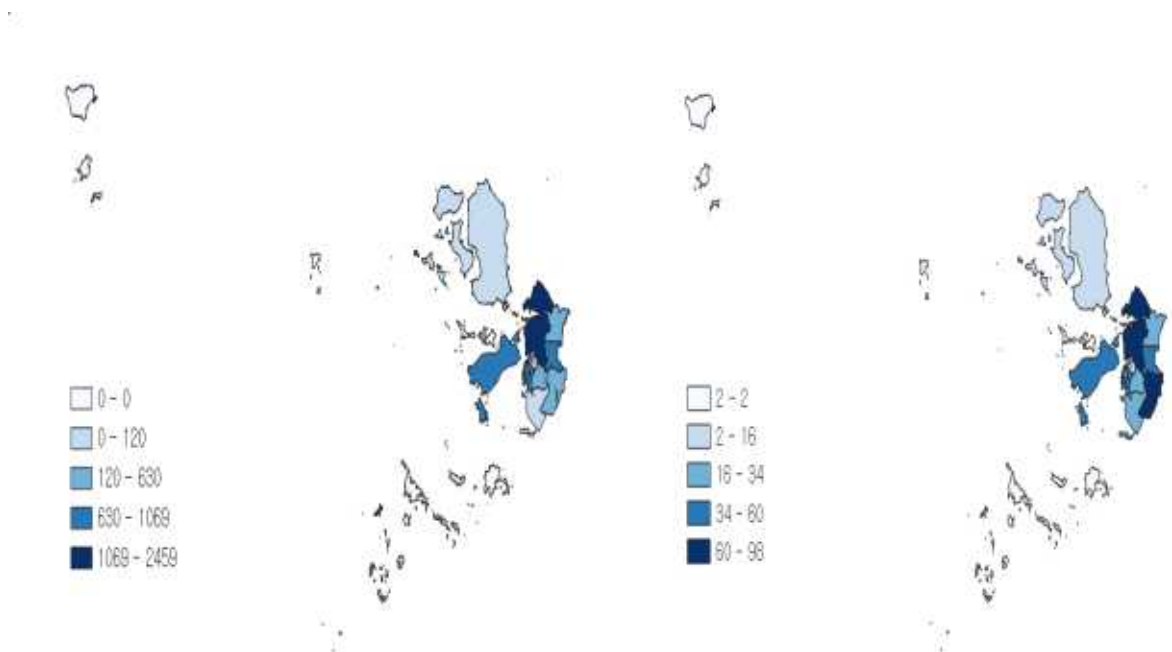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21,707	3,623	1,421	1,038	3,744	2,915	2,125	3,627	2,811	344	59
사업체수	14,731	1,141	417	828	3,240	2,423	1,687	2,713	1,951	289	42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③⑦ 소화물 전문 운송업 분포현황

-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나타났다.
-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옹진군은 비밀보호를 위해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종사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37> 소화물 전문 운송업 그림



주: 근로자수(좌), 사업체수(우)

<그림 1-2> 소화물 전문 운송업 분포표

구분	합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근로자수	6,136	1,069	78	120	630	898	394	2,459	444	44	X
사업체수	412	58	16	24	85	60	28	98	34	7	2

주: X가 표기된 지역은 비밀보호를 위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단위: 명, 개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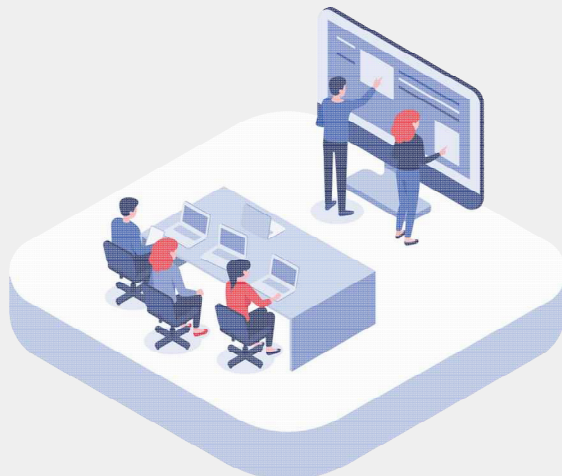
-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정하고자 하였다.
- ❖ 따라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피해는 17개 시도의 평균적인 피해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즉, 인천광역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재난 피해가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인명 피해(이재민 발생), 건물 침수에 의한 피해, 선박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도, 주거·주택, 철로·철도 등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 ❖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현황과 특징과 선행 연구에서 지정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검토하여, 재난 발생 시 잠재적 위협 요인을 고려한 필수업종을 도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항공·항만 인프라가 발달 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시설과 종사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도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도, 주거·주택, 철로·철도 등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피해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시설 종사자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총 10개 산업(중분류) 37개 업종을 제시하였다.
- ❖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 및 사업체 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본 연구의 기준에 의한 인천광역시 내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는 총 200,157명, 사업체 수는 34,195개로 나타났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는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며, 사업체 수는 항공 및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타 지역에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 둘째, 인천광역시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지는 필수업무 분야는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폐수처리업 △항공화물 운송업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인천광역시에서 주목해야 하

는 정책 대상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종사자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더불어, 사업체 수의 경우에도 △항공 여객 운송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해상운송업 △폐수 처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종에 사업체 수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사자 수와 동일하게 항공·항만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분야로 나타났다.
- ❖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행 연구와 지원 정책의 현황 검토를 통해 관련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으며, 필수업무 노동자로 경비, 돌봄, 보건·의료, 콜센터, 폐기물 처리 분야 종사자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필수업무 노동자는 근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약노동자로도 분류되어 정책 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기도 하다.
- ❖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필수업무 노동자와 비 종사자 간의 상용종사자 비율의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광역시 내 비 사회간접자본시설 종사자의 상용종사자 비율은 전국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정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비, 돌봄, 콜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우선 정책 대상인 필수업무 종사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 넷째, 구·군별 필수업무 종사자 및 사업체 분포를 검토한 결과,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밀 보호를 위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며, 세부 업종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원 정책 추진 시 분야별·지역별 특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IV. 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 본 용역은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근로일 수, 임금 수준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형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 보호 기본 계획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내 종사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본 장은 인천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광역시는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항만(인천항), 철도(도시철도) 등 수도권 내 핵심 사회기반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형 필수업무 종사자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4-1> 인천광역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설계

구분	사업체 실태조사	종사자 실태조사
조사 대상	- 2022년 조사일 기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및 소속 종사자 필수업무 업종 : 상·하수도, 공항, 항만, 도로 분야	
표본 배분	- 유의 배분	- 유의 배분
유효 표본	- 20표본	- 200표본
조사 방법	- 전문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 본 조사 웹(web)/모바일 응답 시스템 병행 - 응답자 편의에 따라 이메일, 팩스 조사 병행	
조사 기간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1월 14일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종 범위는 자연 재난과 사고재난의 발생 유형, 지역안전지수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2022년 기준 공개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자료는 2019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며, 10차 산업분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면접 및 전수 조사를 통해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

2) 모집단 정의

- 이상의 인천광역시 재난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표4-2>와 같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모집단은 아래 업종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표 4-2>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	분류코드
상·하수도	☐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37011 하수 처리업
	☐ 37012 폐수 처리업
공항	☐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 52931 공항 운영업
	☐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항만	☐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501 해상운송업
	☐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52929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 41221 도로 건설업
	☐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폐기물 처리	☐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보건·의료	☐ 8610 병원
	☐ 8620 의원
	☐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 8690 기타 보건업
돌봄	☐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운송	☐ 492 육상 여객 운송업
	☐ 493 도로 화물 운송업
	☐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3) 모집단 구축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모집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내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는 총 200,157명이며, 사업체의 수는 34,195개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및 사업체 수와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 6.0%에 해당한다.

<표 4-3>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유형	구분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	타지역*	인천	타지역*	인천
상·하수도	생활용수 공급업	517	18,045	505	12	17,192	853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¹	16,147	101,324	15,308	839	97,103	4,221
	하수 처리업	719	11,493	695	24	10,898	595
	폐수 처리업	310	4,051	275	35	3,606	445
공항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3,954	49,359	3,830	124	48,065	1,294
	항공 여객 운송업	142	31,565	105	37	29,888	1,677
	항공 화물 운송업	51	1,022	46	5	913	109
	공항 운영업	20	6,041	17	3	2,359	3,682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6	7,617	77	19	3,638	3,979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78	14,344	751	27	12,020	2,32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370	55,903	4,183	187	54,238	1,665
항만	항만,수로,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14	2,665	212	2	2,665	-
	해상운송업	1,122	19,170	979	143	18,059	1,11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136	1,124	125	11	1,076	48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43	3,908	36	7	3,175	73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409	8,666	377	32	8,341	325
철도·도로	도로 건설업	1,945	40,656	1,915	30	40,231	425
	철도 여객 운송업	236	7,311	236	-	7,311	-
	단독 주택 건설업	6,652	52,745	6,433	219	50,453	2,292
폐기물 처리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649	24,936	1,518	131	23,361	1,575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673	4,680	635	38	4,380	30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695	3,678	644	51	3,309	369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593	12,320	566	27	11,378	942
	지정 폐기물 처리업	241	2,582	229	12	2,463	119
	건설 폐기물 처리업	689	9,005	656	33	8,534	471
보건·의료	병원	3,816	577,825	3,627	189	548,309	29,516
	의원	63,445	388,024	60,363	3,082	368,230	19,794
	공중 보건 의료업	3,569	34,759	3,497	72	33,253	1,506
	기타 보건업	4,866	22,550	4,679	187	21,381	1,169
돌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8	166,517	8,485	533	155,989	10,528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65,945	843,359	62,422	3,523	796,607	46,752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070	81,826	1,023	47	80,700	1,126
경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408	69,822	1,340	68	62,053	7,769
운송	육상 여객 운송업	163,725	417,333	154,422	9,303	392,755	24,578
	도로 화물 운송업	204,973	316,505	190,242	14,731	294,798	21,707
	소화물 전문 운송업	9,139	75,620	8,727	412	69,462	6,158
합계		573,375	3,488,350	539,180	34,195	3,288,193	200,157

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도로 분야에도 해당됨

* 타지역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의 종사자 수를 의미함

❖ 통계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대체하여, 2020년 「경제총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는 가장 큰 범위인 대분류부터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총조사」는 공표 주기가 5년 주기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예정된 후속 연구를 통해 통계청에서 2021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²⁰⁾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시의성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조사 항목 설계 사례 검토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항목은 타 지자체에서 선행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항목을 설계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사 설계를 면접조사 등 정량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일부 업종을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정의하여 해당 업종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혹은 심층 인터뷰(IDI, In depth interview)로 진행했다.

❖ 타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업종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의하고, 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경기도(2022년)와 서울특별시(2021년)에서 시행된 조사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필수업종

- 필수업종이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에도 도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 필수노동자

- 필수노동자는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이다.

20) 2021년 전국사업체 조사의 잠정 결과는 2022년 9월 29일 발표하였으며, 확정자료는 2022. 12에 공표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하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필수업종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필수업종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 필수노동자

- 필수노동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를 정의하였는데, 필수업무에 대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분석 기준은 앞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필수업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분석은 생략을 하고자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경기도

■ 경기도는 2022년 7월 “주요 재난유형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연구”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사례, 정책 중복 방지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정책 체계화 등 전반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으로 실태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필수업무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 및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829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경기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직업 사전에 나오는 용어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교통, 환경미화, 기타 영역(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총 5개의 영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였다. 그 외에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기사,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기사, 제설기사, 교통사고 구조원, 인명구조원을 추가적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 실태조사에 활용된 문항은 필수업무 중요도, 필요한 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 인구통계학 정보 등 총 6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교통, 환경미화, 기타 영역 종사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 ❑ 경기도에서 시행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세부 업종보다는 필수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영역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조사항목 역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주로 설계되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교통·운수분야, 택배 분야, 보건·의료·돌봄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역시 세부업종별로 필수업무 및 종사자를 정의하기보다는 유사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유형별로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조사대상 분야를 3개 분야로 교통·운수분야, 택배 분야, 보건·의료·돌봄 분야로 제한했다는 측면에서 필수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현안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 ❑ 직종별로 지원제도, 규모 및 현황 파악,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직종별로 필수업종의 범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수행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와 대리운전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했다.
- ❑ 조사대상 항목의 경우 필수노동자 대상 지원제도, 규모 및 현황 파악 등 설계된 문항에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으로 정량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 반영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수행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 ❑ 서울특별시(2021)의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 방역에 의한 안정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사례들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들이 주로 설계되었다.

<표 4-4>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설계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기본 정보	- 연령, 성별, 직책, 재직기간
노동환경	- 근무형태, 연소득, 건강상태, 보유 질병
노동환경 변화	- 근무조건 변화, 업무 부담 증가 이유, 직무환경 변화, 휴가사용 자유 제약 정도, 이직욕구 등
코로나19 감염	- 업무 수행중 코로나19 감염 위험 공간, 코로나19 감염 및 자가격리 상황과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 방역	- 업무에 필요한 방역정보 출처, 회사의 코로나19 예방조치 적절성
재난 시기 필수노동자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정책

- 서울특별시(2021)의 또 다른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서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수행했으며,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전성, 고용환경의 변화 정도,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타 광역지자체에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에 대한 종사자를 정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성조사를 진행하여 종사자의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4-5>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설계 내용

구분	내용
업무 범위	- 환경미화원의 업무 범위 및 수행방식
노동환경	- 작업환경, 휴게시설
고용안정	- 고용형태, 계약형식
노동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코로나 상황	-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성,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
애로사항	- 임금, 고용안정성, 장시간야간 근무, 부족한 휴식, 휴가, 부족한 인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 임금체계개선, 근로시간 단축, 서울시가 지원해야할 과제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운송, 보건의료, 돌봄, 생활서비스, 식품가공 분야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 주요 조사 항목은 도내 필수노동자의 근로여건 및 환경, 코로나19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필수노동자의 보호·지원 정책 수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보건의료, 돌봄, 택배,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34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항목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조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 변화, 근로여건 개선 과제를 통한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세부 항목을 설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 및 집단심층면접조사에서 언급된 응답자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공무원에 따른 처우문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고강도 업무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보건의료, 돌봄,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 부산노동권익센터(2020)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돌봄, 배달, 택배, 경비, 청소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광주전남연구원, 2021)

⑧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구청의 행정력, 지원 체감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해 7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7개 업종은 폐기물 처리, 운송, 청소, 경비, 콜센터, 보건의료, 돌봄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대상에 포함된 필수노동자의 직업군은 <생활폐기물 수거/청소>, <아파트경비원>, <배달기사>,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등 총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 환경미화 등 총 5개의 직업군을 필수노동자 직업군으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병원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 등), 영양보호사(시설, 방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을버스 기사,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 수거), 경비원 등 11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의했다.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일자리, 차별, 필수노동, 코로나19, 정책 수요 등 5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업무 필수성, 대면업무의 필요도 등의 세부적인 질문을 구성했고, 실태조사는 면접조사(449개 표본)와 심층인터뷰(15명)를 수행했다. 한편, 택배기사, 보육교사들은 바쁜 업무 등으로 인터뷰 대상에는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 구로구에서 진행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선행된 실태조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설계, 진행되었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보육교사, 병원청소 및 환자 이송 근로자, 청소노동자 등 일부 직종을 활동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사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이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영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돌보미, 청소,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 11개 지자체들의 실태조사 사례들을 종합하면, 대부분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 복지·돌봄 분야, 운수업, 환경미화 직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업군(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했다.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단위에서 논의, 시행된 지역에서는 필수노동자와 관련

하여 기존부터 논의되어온 직종들을 중심으로 정량조사 혹은 정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6>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설계 내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요> - 주요 조사대상 :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배달기사,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 표본 : 353표본 <조사항목> - 고용 및 노동실태 (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적용) - 코로나19와 일자리 변화 -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요> - 주요 조사대상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 환경미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총 11개 - 표본 : 449표본 <조사항목> - 일자리, 차별 경험, 필수노동, 코로나19 정책 수요, 업무의 필수성, 대면 업무의 필요도 등
전라북도	<개요> - 주요 조사대상 : 운송, 보건의료, 돌봄, 생활서비스, 식품가공분야 종사자 11명 <조사항목> - 전북도 내 필수노동자의 근로여건, 코로나19에 의한 환경 변화 등

-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혹은 필수업무종사자 대상 실태 조사에서는 주로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 환경미화, 돌봄,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필수성,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임금 및 근로시간)를 비롯한 고용환경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조사항목 설계

사업체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항목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필수업무 지원 제도 관련 필요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단,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질문은 최근 확진자 수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각종 규제조치가 해제된 점을 반영하여 문항에서 제외하고, 근로 환경 변화와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였다.

<표 4-7>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체 부문] 설문 설계 내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체명, 지역, 종사자 규모, 사업체 구분, 설립연월, 자본금 규모 -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인원 - 자격증 보유 종사자 인원
종사자 근로조건	- 고용안정성에 대한 평가 - 근무교대 주기 - 최근 3년 이내 노사갈등 경험 여부, 노사갈등이 발생한 이유
시설 현황	- 시설 장비 보유 현황
필수업무 지원제도의 필요성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 -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위험 정도 -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에 불편 정도 - 재난대응지원, 소득보전, 노동 조건, 인력 복지 관련 제도의 필요성

- 종사자 부문 실태조사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화 정도보다는 보편적 상황에서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위주로 설계하였다.

<표 4-8>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종사자 부문] 설문 설계 내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응답자 일반현황	- 연령, 성별, 고용형태, 고용 방식, 근무형태, 회사 소재지, 종사자 규모 - 필수업무 직종 해당 유형 - 업무 경력, 4대보험 가입 유형, 복리후생 혜택 여부, 노조 가입 여부, 노조에 대한 인식
종사자 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반복/갱신 횟수 - 연간 소득, 현재 건강상태, 최근 주요 질병 유무, - 주당 근로일수, 초과 근로시간, 근로 인정시간, 식사/휴게 시간 등 - 수당 혜택 여부, 휴게공간 여부 등
애로사항	- 근로조건에서 경험하는 각종 어려움 정도 - 노동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작업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근로자 보호 및 관리	- 최근 1년간 업무수행 상황, - 근로여건 만족도 - 직무 스트레스 관련 항목 정도

3. 표본 설계

-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는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업종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재난 유형,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보건의 분야, 운수업 분야 등은 앞에서 서술된 선행연구를 통해 필수업무 유형과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된 유형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 ❖ 사업체 대상 조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필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공항, 항만, 도로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필수업무 유형별 사업체와 종사자 대상 표본 크기는 유의배분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배분, 설계하였다.
- ❖ 인천광역시 내 업종별로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상이하지만,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비교하기 위해 유형별로 동일한 목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 ❖ 종사자 대상 조사는 사업체와 소속 종사자 간의 페어(pair) 조사를 통해 사업체-종사자 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4-9> 인천광역시 필수업무종사자 사업체 표본 배분(안)

구분	표본 배분(안)	
	사업체 표본 수	종사 표본 수
상하수도	5	50
공항	5	50
항만	5	50
도로	5	50
합계	20	200

4. 실사 및 자료 수집

① 실사 진행

- ❖ 본 연구는 방문면접조사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등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Web)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방문면접조사와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사를 수행하였다.
- ❖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서는 조사에 대한 안내문, 설명문, 그리고 각 문항별로 응답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효율적으로 쉽게 문항과 보기를 인식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 방문면접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를 유선상으로 컨택하여 사업체 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되, 1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종사자는 10명 이상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② 조사원 선발 및 투입

- 본 용역에 투입된 조사원은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사업체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수행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였고,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총 22명의 조사원을 선발, 투입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4-1〉 조사원 선발 및 투입

| 인천광역시 내 조사원 선발 계획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서	계양·부평	중구·동구	강화·옹진	합계
총 투입 조사원 수	사업체 조사	5명						5명
	근로자 조사	3명	3명	3명	3명	3명	2명	17명
← 제안사 경험(콘텐츠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전국 단위 사업체 조사) 조사원 Pool →								
조사원 수		104명	32명	31명	33명	29명	27명	256명
실사 전담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투입 조사원 수 산출 근거	사업체 조사	투입 조사원 수 20명	X	하루 평균 진행 건 수 1.2건	X	조사원 실제 투입 일수 9일	≒	20개
	근로자 조사	투입 조사원 수 17명	X	하루 평균 진행 건 수 2.8건	X	조사원 실제 투입 일수 10일	≒	200명

1) 조사원 교육

- 본 과업에 투입된 조사원은 책임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원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본 조사에 투입되었다. 조사원 교육과정에서는 본 조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종사하는 사업체와 종사자가 본 조사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응답자가 설문지에 기재된 문항, 보기 외에 조사에 대한 취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였다.
- 조사원 교육은 기본 교육, 설문지에 작성된 문항 및 보기에 대한 이해, 사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조사에 대한 취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했다.
-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등은 응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기카드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본 조사에 대해 적극적, 정확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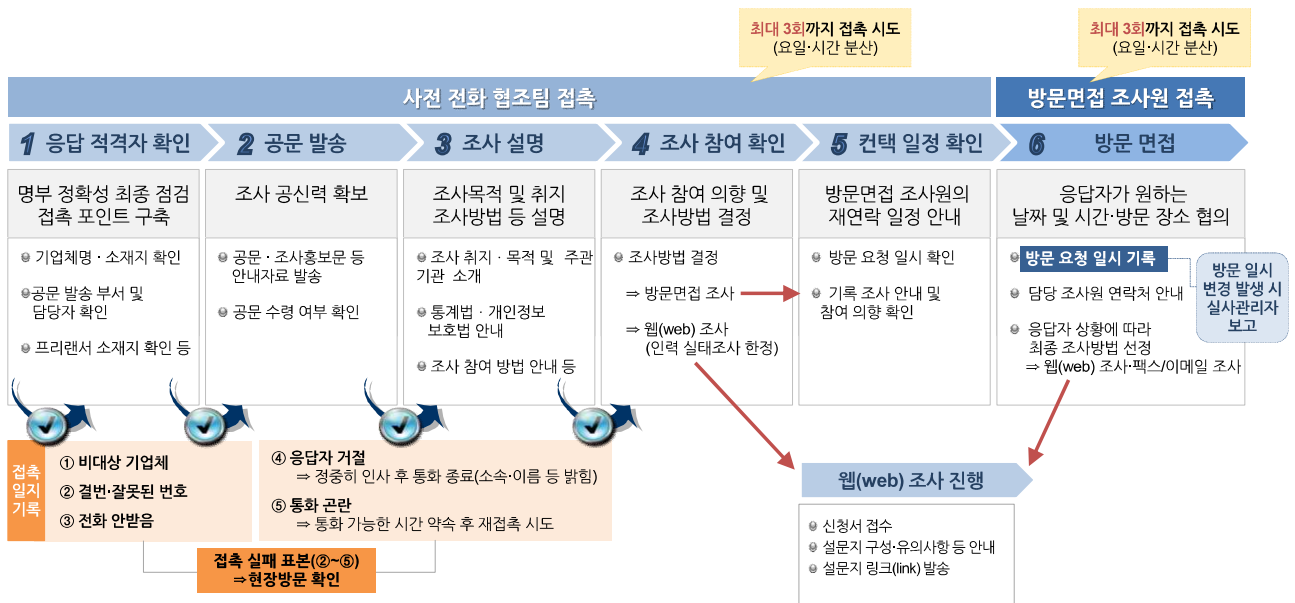
<그림 4-2> 조사원 교육



1) 자료 수집

- 필수업무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수행 업체가 데스크리서치, 신용평가 정보, 유관 사업체 조사 수행 경험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DB를 구축했다.
- 구축된 DB의 대표 전화번호 등은 데스크리서치 등을 수행하여 확보하였으며, 컨택원이 해당 사업체에 조사에 대한 취지를 유선상으로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했다.
- 자료 수집은 컨택원이 사업체에 전화 컨택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고 사업체의 방문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2단계로 구성되었다.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사업체 내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스케줄 근무 등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링크를 전달하여 온라인 조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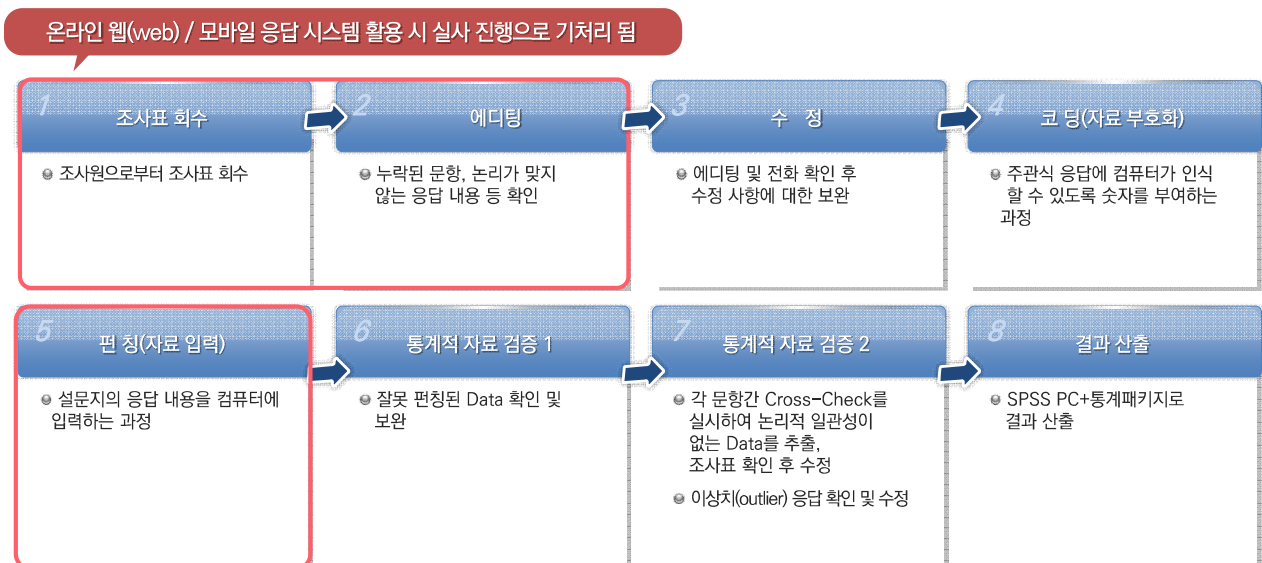
<그림 4-3> 자료 수집 절차



2) 자료 검증

- 자료 검증은 총 8단계에 걸쳐 면밀하고, 꼼꼼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최종적으로 사업체 20표본, 종사자 대상 200표본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 확보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집된 설문지에 대한 육안 검수, 에디팅, 코딩 단계 등 다단계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된 자료에 대해 100%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4-4> 다단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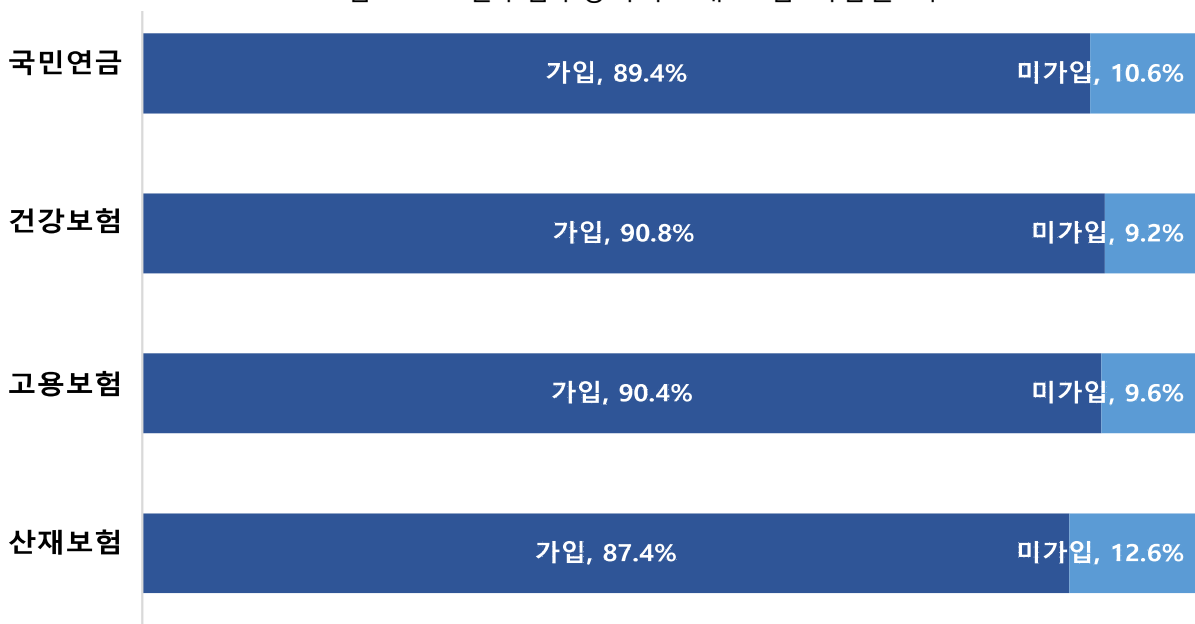


5. 조사결과 분석

1) 필수업무 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

-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89.4%, 건강보험 가입률은 90.8%, 고용보험 가입률은 90.4%, 산재보험 가입률은 87.4%로 나타났다.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대 보험 가입시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임시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상용직근로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임시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실수령액 감소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대상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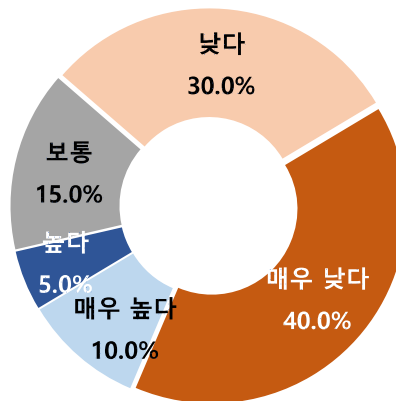
<그림 4-5> 필수업무종사자 4대 보험 가입률 비교



2)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 ❑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 사업체(n=20)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0%(n=14)는 고용 안정성에 대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5%(n=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고용안정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감이 많이 줄거나 기복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업무 유형별로 통계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체감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아직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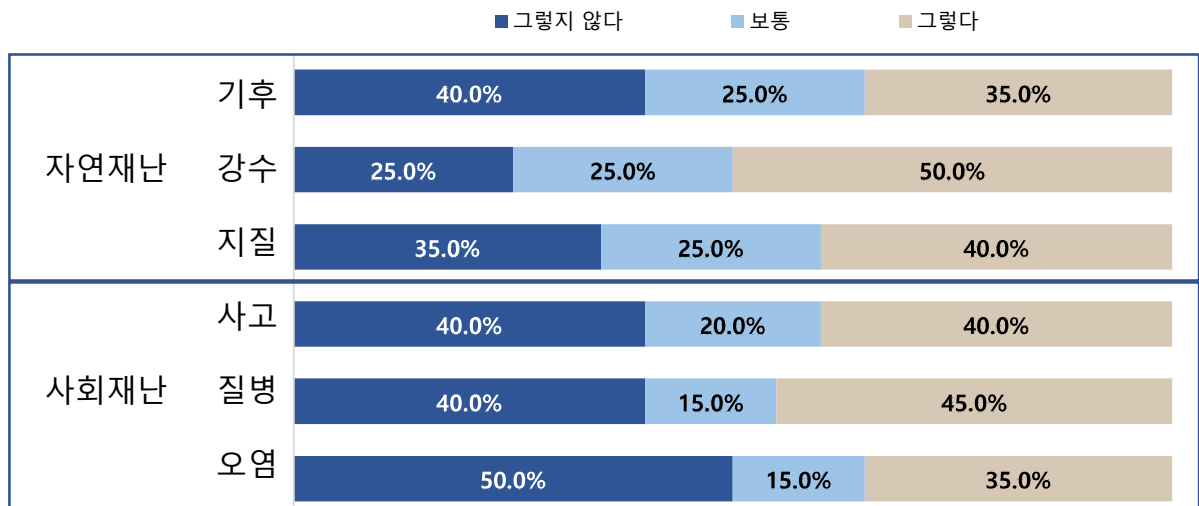
<그림 4-6>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n=20) 】



3) 필수업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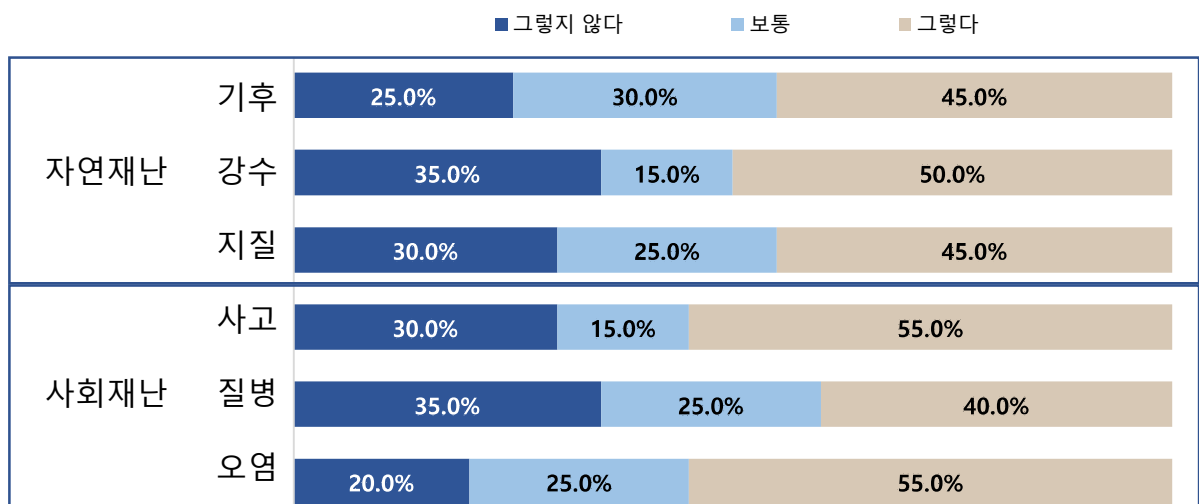
-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체(n=20)를 대상으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가 지속되어야 할지 조사한 결과, 재난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수, 질병, 사고의 상황에서는 필수업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재난 유형별로 업무에 대한 지속 혹은 중단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7> 필수업무 지속 유지에 대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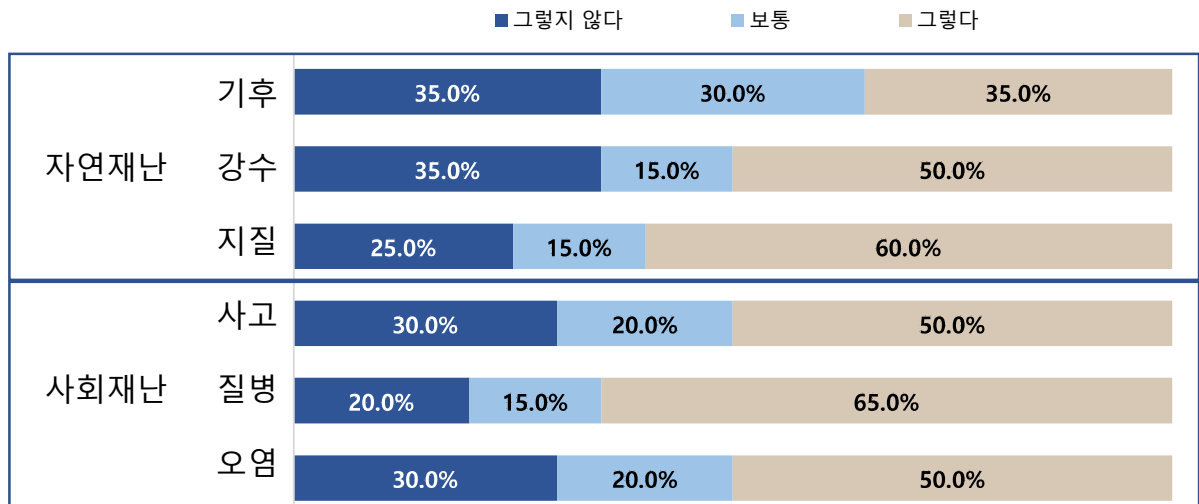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중단된다면, 국민의 안전 위험성 전망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국민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4-8> 필수업무 중단 시 국민의 안전 위험 예상 수준



- 응답자들은 재난이 발생할 때, 필수업무가 중단된다면 사회기능 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필수업무 중단 시 사회기능 유지에 대한 불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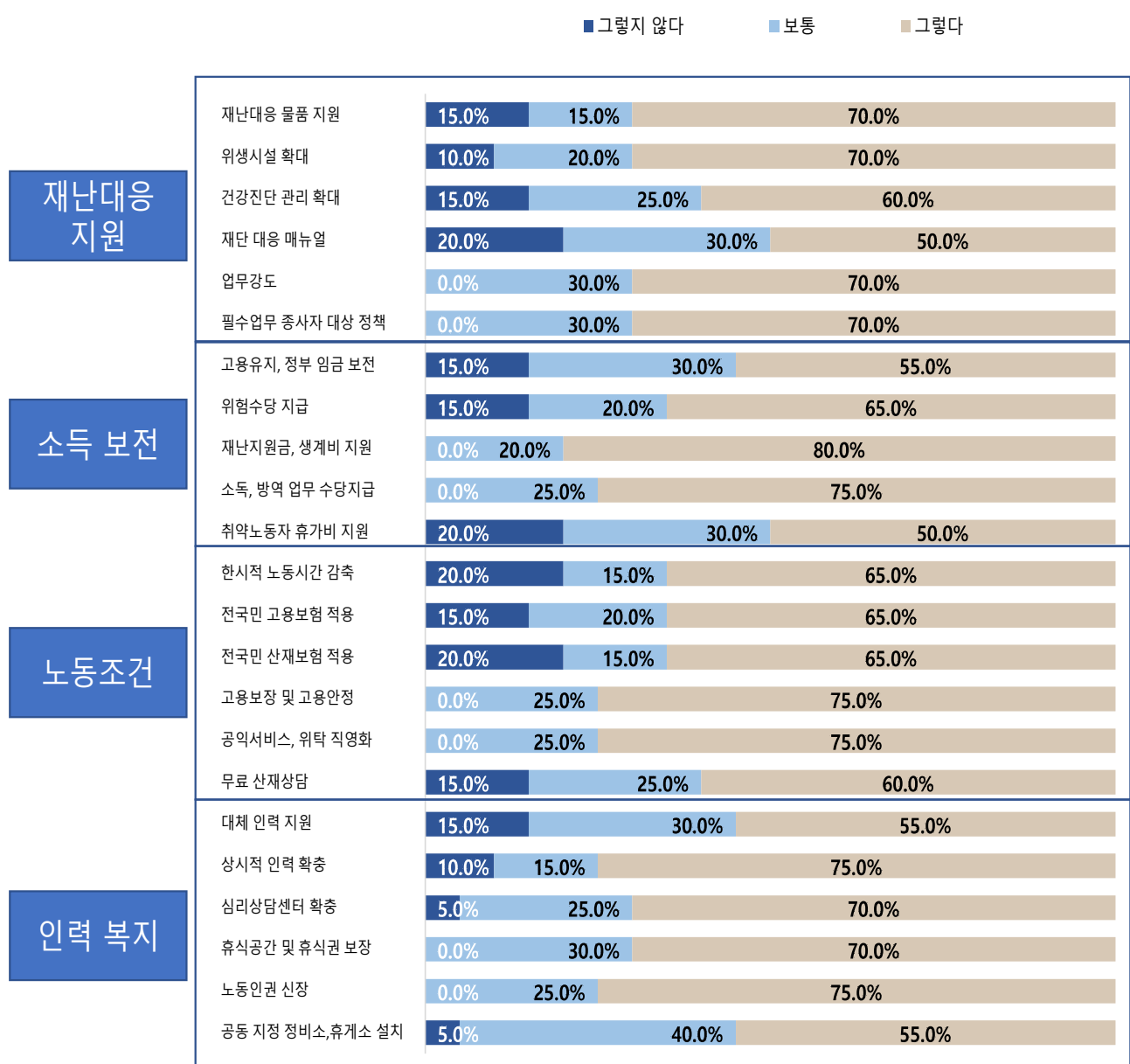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필수업무의 지속성, 국민 안전의 위험성, 사회기능 유지에 대한 불편 정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수의 사업체는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업무가 중단된다면 국민이 위험한 상황 혹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볼 수 있다.
- 또한 재난 발생 요인마다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언급되었다. 일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업무가 계속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상 악화 등의 자연 재난 발생 시 종사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즉, 업무의 지속, 중단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의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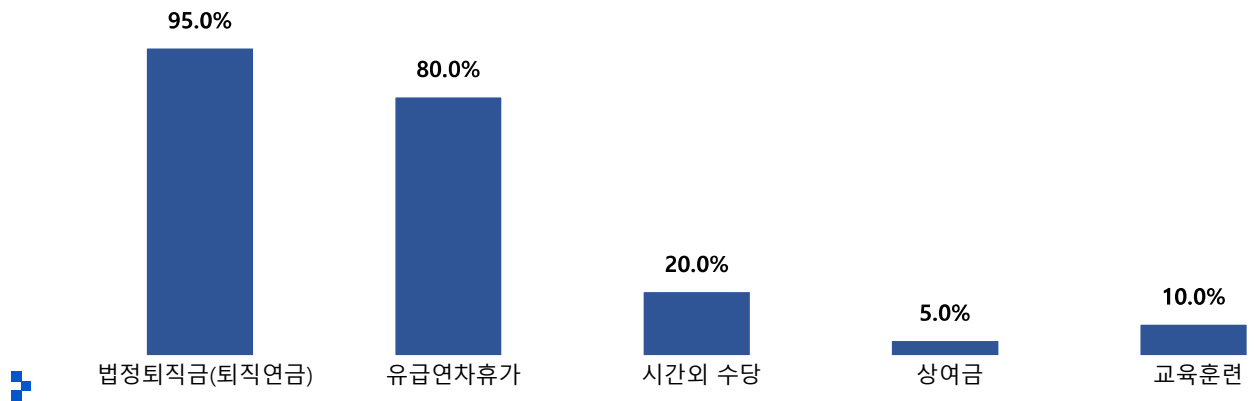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에 대해 필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재난 대응 지원, 소득보전, 노동조건, 인력복지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0>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필요성



5) 직장 내 각종 복리후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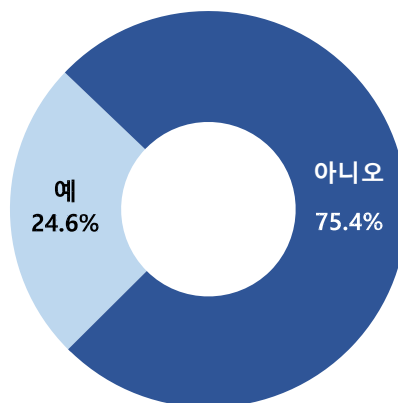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중 직장에서 제공받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정퇴직금(퇴직연금)이나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제공받는 비율은 높지만, 반면에 시간 외 수당, 상여금, 교육훈련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 노동조합 가입

- 필수업무 종사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4.6%로 응답자 4명 중 1명 가량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7) 필수업무종사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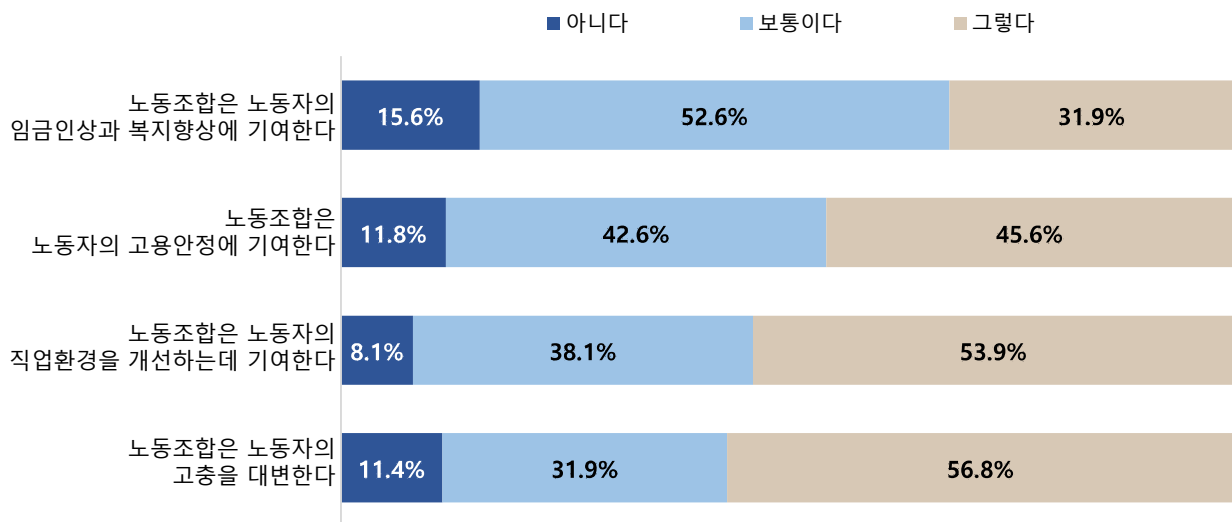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중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48.0%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 노동조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고충을 대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8%로 나타났고, 반면에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9%로 나타나 응답자 간에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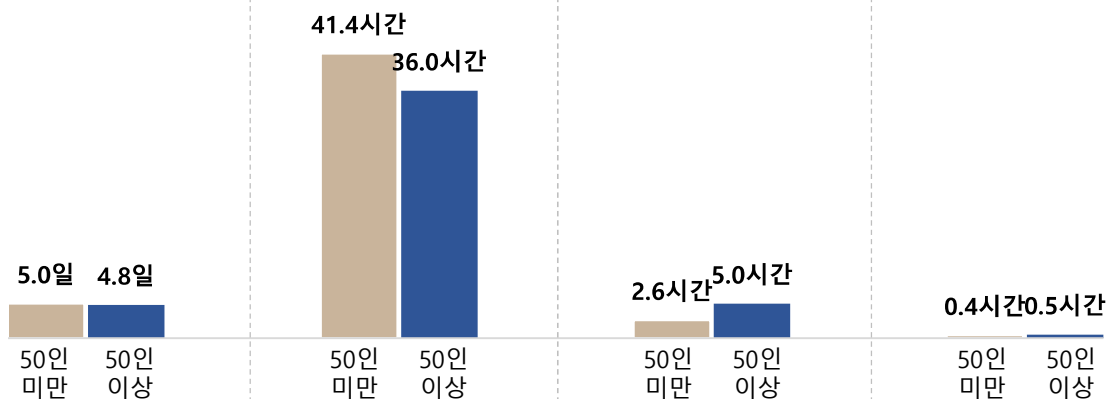


8)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 실태

- ❖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 ❖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5.0일(50인 미만)과 4.8일(50인 이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주당 정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1.4시간 50인 이상 사업장이 3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1주일 기준으로 약 5.4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반면에 주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5.0시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2.6시간으로 나타났다.
 - 50인 이상 규모의 일부 사업장의 초과 근로 시간이 높게 측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근무 중 평균 식사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 30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24분(0.4시간),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 30분(0.5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11> 근로시간 등 근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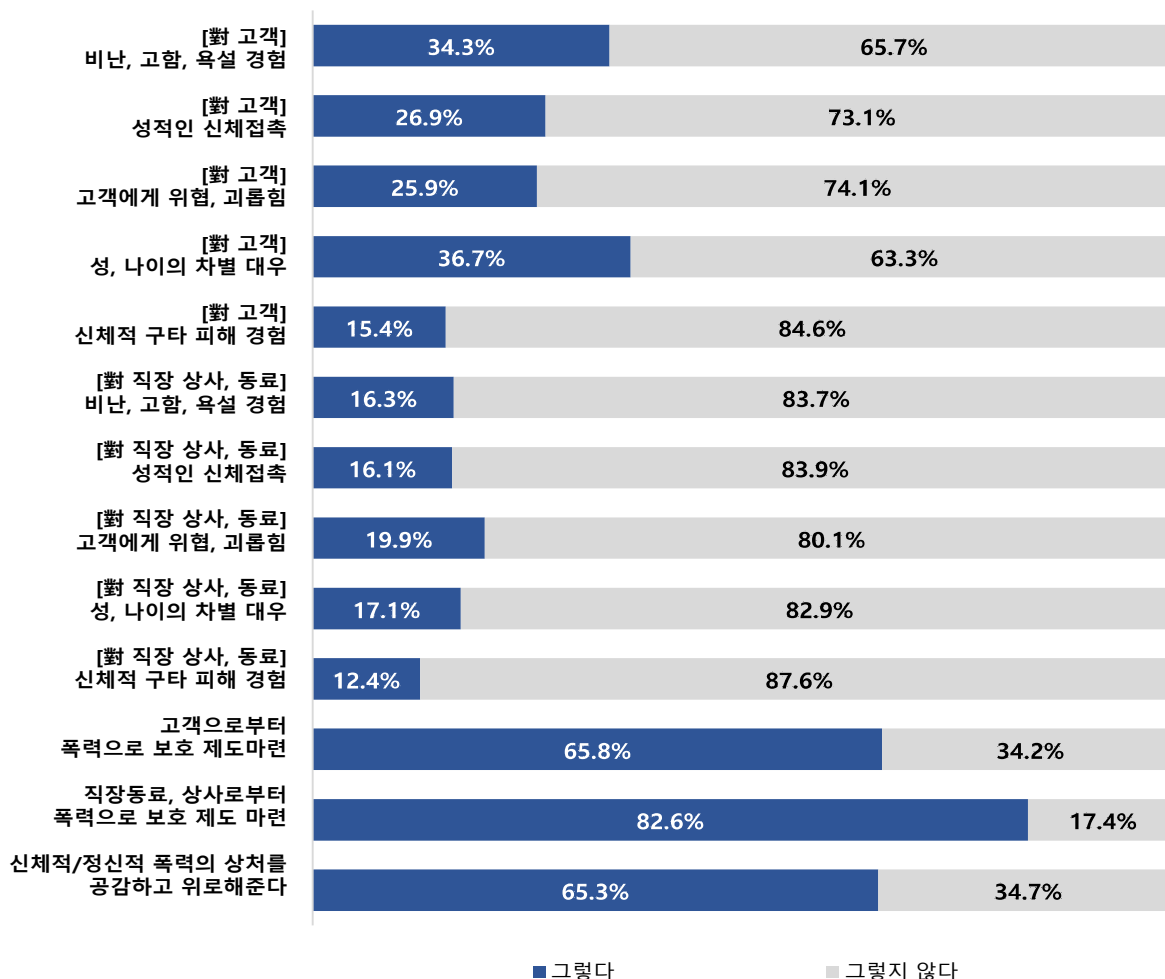
【 주당 정규 근로일 수 】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 근무중 평균 식사시간 】



9) 최근 1년 동안 업무수행 상황에서 겪은 경험

- 필수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객과 직장 상사, 동료들로부터 각종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고객으로부터 성별, 나이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고객과 직장 상사·동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장치 마련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동료, 상사로부터 보호는 82.6%, 고객으로부터 보호는 65.8%만 관련 장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직장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65.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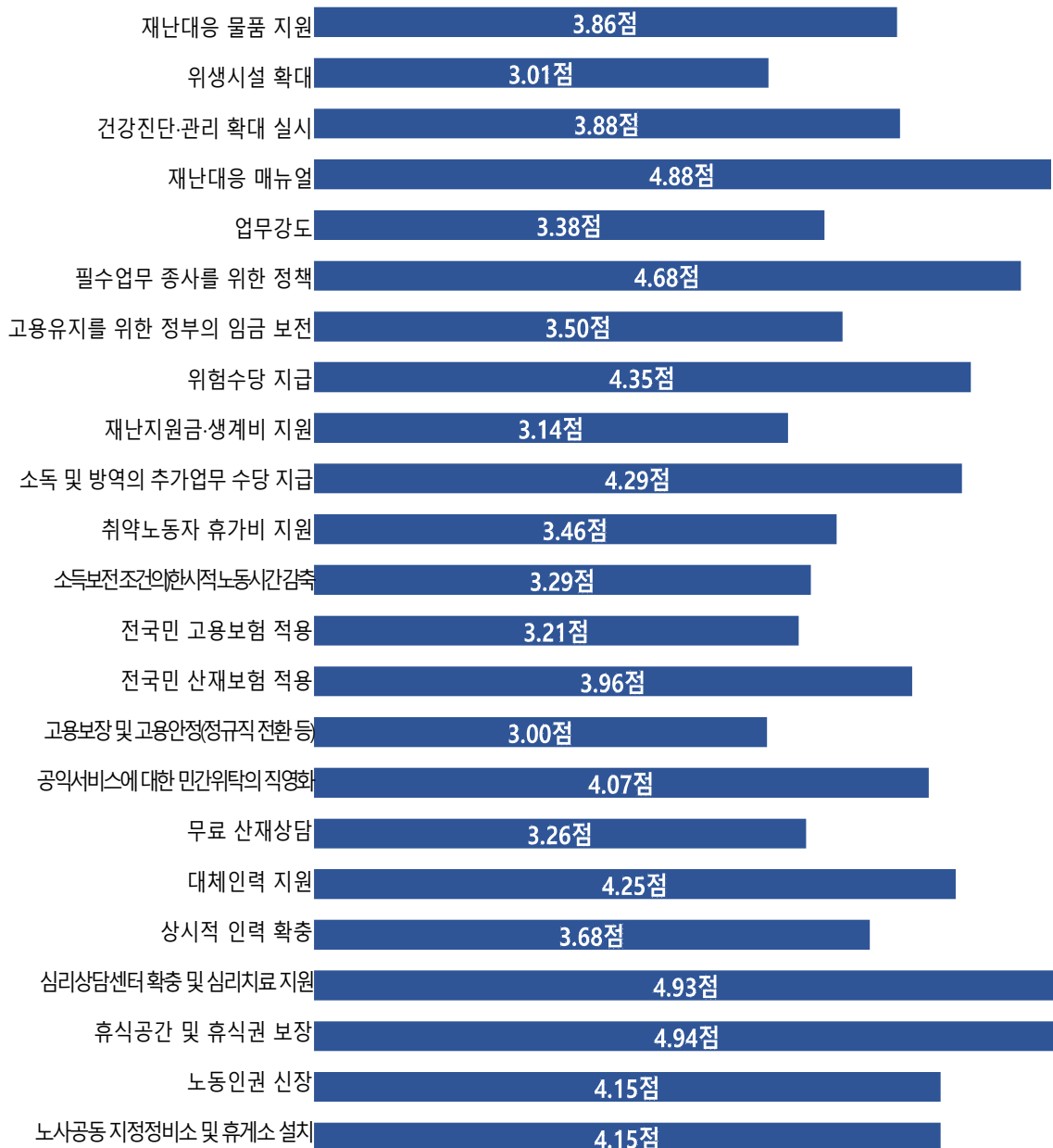
<그림 4-12> 최근 1년 동안 업무수행 상황에서 겪은 경험



10) 필수업무 유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필요성

-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4.94점), '심리상담센터 확충 및 심리치료 지원'(4.93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노동조건, 인력 복지와 관련해서 법률, 제도적인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물품,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필수업무 유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필요성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

V.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의견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제5장 면접조사 분석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업무'의 종사자 및 그와 관련된 정책 연구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 다양한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할 지역적 조건과 삶의 맥락,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이 기존 법제도 및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등에 관련된 의견들을 수집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① 면접조사 대상

- 면접조사 대상 크게 '유관 정책 전문가 집단'과 '노동자 당사자 집단', '유사 연구 수행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유관 정책 전문가로는 △지역단위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전문가 △지역단위 노동정책 전문가 등을 모집하였다..
- 노동자 당사자로는 △인천지역에서 필수업무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종사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조직의 활동가 △해당 업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 그 외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정책'을 주제로 조사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를 면접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은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연번	이름	소속	직책	비고
1	최○○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	유사 연구 수행자
2	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유사 연구 수행자
3	오○○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유관 정책 전문가
4	이○○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관 정책 전문가
5	신○○	충부지방 고용노동청	재해관리 부서 과장	유관 정책 전문가
6	구○○	포스코 건설	자문위원	유관 정책 전문가
7	이○○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유관 정책 전문가
8	김○○	관세청	행정관	노동자 당사자
9	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	노동자 당사자
10	장○○	한국노총 연합노련 인천지역본부	사무국장	노동자 당사자

② 면접조사 방식

-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사전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질문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집단토의하는 방식, 또는 개별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조사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면접조사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음성을 글로 전환하여 전사록으로 제작하였다.
- 이렇게 획득된 전사록에 대해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면접조사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 권익 침해 및 구제사례 심층 인터뷰 항목

구분	주요 질문
필수업무 및 종사자 관련 법제도 추진에 대한 평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의 의미 - 필수노동자대책이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시기에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추진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보십니까?
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목적과 대상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목적에 관한 의견 - 이러한 법제도가 제시하는 목적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원활한 인력수급(결과) - 적절한 노동시간과 처우(원인)'의 인과관계 설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 필수업무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 중앙정부 위원회와 시도단위 또는 시군구단위 위원회는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필수업무 종사자가 투입되는 '재난'과 관련한 의견 - 최근 상황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 관련 정책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재난' 상황으로는 전염병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천광역시의 특성(예컨대 공항과 항구 입지, 도시재생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전염병 이외의 재난 상황이라면, 어떤 업무가 필수업무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인천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세부 과제 기획	○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사업 내용에 관한 의견 -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가 실제 추진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정부가 추진한 사업 내용에는 관련 노동단체가 직종/업종 처우개선을 위해 평소에 요구하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획과 관련한 의견 - 광역자치단체로서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노동 관련 사업을 지역의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 정책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필수노동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의 기획과 심의는 민관협치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인천광역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집행 방향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집행 방향과 관련한 의견 - 정책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원, 연결망, 역량 등이 다양하게 동원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원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 인천광역시청 내 담당 부서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설기관 또는 관련 시설이나 장비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인천광역시가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지역사회 내 조직/주체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민관협치에 참여하는 노동자대표단체 활동가 등이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천광역시장이나 관련 기관장 등의 리더들이 필수노동자 또는 필수업무종사자 관련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조사분석 결과

1) 필수업무 종사자 정책 추진의 배경과 맥락에 관한 의견

- ❖ 인천지역 노동 및 재난 전문가들은 2020년 말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 과정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주요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이들은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이들을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방치했던 한국 고용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했다.
- ❖ 또한, 이러한 정책 전환과 법제도의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당사자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요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① 필수서비스 관련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응

- ❖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보건의료, 돌봄, 운송, 물류 등] 필수서비스를 국가나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 많이 맡겨놔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런 걸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서 서비스 공급도 불안정해지니까…… 뒤늦게 재난을 경험하면서 필수노동자법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 ❖ [필수업무로 지정할 수 있는 건] 가장 우선은 보건의료랑 돌봄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사회 보건의료 또는 돌봄이 사유화되어 있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 요양기관은 한 99%가 민간이고 공공 요양기관은 대충 1%밖에 되지 않아요. …… [필수업무로 볼 수 있는 것들의 관리가] 주로 민간 부분에 맡겨져 있다 보니,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력수급 [관리]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재정은 공공에서 많이 들어가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고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업무종사자 법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 가능할까요? 저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한국사회 노동 인식 변화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에 신경을 썼지만, 그걸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법제화가 되고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오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감염병 재난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법제도 변화를 계기로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성숙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처를 위해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보건, 근로시간, 급여 이런 부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평상시에는 사회적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직종들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꼭 해야 하는 업무라는 점이 체감된 거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좀 취급되던 그런 업무들, 직접 몸으로 뛰면서 대면해서 하는 노동의 실질적인 중요성이 드러난 거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는 정부에서도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특히나 의료진들이 중무장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나서, 이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이제 대책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수업무종사자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영됐다는 생각입니다.

③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

■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매뉴얼이 없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돌봄을 맡은] 장애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들어가서 평소처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느냐, 또 병원에서는 장애인은 일반 환자와 다르게 누군가 계속 옆에 붙어서 케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 노조 조합원인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면, 생활폐기물 안에 쓰고 버린 마스크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가 정부에게 매뉴얼 내놔라, 그리고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줄거냐, 대책을 내놔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죠.

2) 필수업무종사자 법제도 형성 결과에 관한 평가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과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첫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법제화는 이중 노동시장, 균열 일터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고, 법·제도와 대책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 가사노동자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제·개정된 것은 그러한 추세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대세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법제화는 단지 고용노동정책으로서 의미를 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연재난의 위험이 산업 및 기술 사고의 위험과 결합하여 심각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는바, 광의의 안전관리 정책으로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법제화는 새로운 초석이라 할 수 있다.
- 셋째, 법·제도의 내용 변화와 정책 수립은 전향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변화가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법과 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꾸준히 관찰하여 공론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 요컨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는 협의의 광의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이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전향적 시도로 의미화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① 구조적 문제에 호응한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이 논의될 당시는]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택배 종사자가 한참 파업하고 할 때였는데…… [그런 시기에] 필수노동자 얘기가 나오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사실 이 시기[=코로나19로 인한 제도 변화 과정]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 관련 법률이 여러 개 제정이 됐거든요. 예컨대 필수업무종사자법도 제정이 됐고 또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제정이 됐고 가사근로자법도 제정이 됐고 또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관련 법제도 개정이 있었고……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② 복합적 위험사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 국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인데…… 과거보다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지자체에게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당연히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난에 대응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본인의 목숨이 위험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제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괜찮게 잘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 현대사회가 아주 복잡해졌기 때문에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의적절하지 않느냐 싶어요.

③ 법제도 변화 이후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의견

■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종사자법, 생활물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제개정이 우르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돌이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 제정하는 것도 제정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제대로 운영하는 거에도 계속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인천지역은 어떤 재난에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가

-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사회재난’의 측면에서는 인천이 산업 및 물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은 국가 수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물류 중심지로서 공항과 항구 등이 집적해 있다. 또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설립된 지 오래돼서 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도 있다. 이런 물류 및 산업(기반)시설에 사고가 나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수준으로 피해가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인천지역은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발생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 둘째, ‘자연재난’의 측면에서는 특히 ‘수재’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은 바다에 접한 도시로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의 경험이 많다.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점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인천은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오래된 생활기반시설에 기초한 구역과 새롭게 만들어진 생활기반시설에 기초한 구역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생활기반시설이 오래된 구역에서는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과거 경험을 보면, 특히 상하수도 배수관의 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인천시민들은 상하수도 배수관이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집단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셋째, 재난이 주는 피해의 형태는 전염병 상황처럼 상대적으로 장기간 넓은 범위에 걸쳐 약하게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태풍 상황처럼 상대적으로 단기간 좁은 범위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경우로 나눠서 고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우선은 전자의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상황에서는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들에게 더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필수업무는 ‘광의의 안전관리’에 주로 관련돼 있고 ‘협의의 재난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련돼 있다.
- ❖ 종합하면, 인천지역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재난 피해는 항구와 공항, 산업단지, 그리고 수재, 특히 상하수도 배수관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인천지역에 특화된 필수업무 및 종사자를 지정할 때는 이러한 맥락을 포괄해야 한다.

① 사회재난: 항구와 공항, 산업단지, 그리고 전쟁(?)

❖ 인천의 특성이 공항하고 항구와 관련된 해외 유입 인구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수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화학 공장이나 이런 게 인천에 일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좀 노후화된 남동 3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일반 산업 재해겠지만 그것이 화재나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 사회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분에도 초점을 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도 북과 멀지 않은 접경지역이니까는 긴장 상태가 되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② 자연재난: 태풍과 해일, 황사, 가뭄과 폭염, 상하수도

❖ 인천은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고 섬 도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중에서도 태풍처럼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 인천만의 특수한 재난에 대해서 필수업무를 지정하게 된다면……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인천지역은 항구도시다 보니까 바다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재난은 당연히 태풍, 그런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 또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황사도…… 다른 내륙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그게 재난이냐 아니냐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어느 정도 와야 재난이고 어느 초속 풍속으로 따지는지 어쨌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재난의 바다와 관련된 재난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폭염이나 가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상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③ 짧고 강한 여파의 재난인가, 길고 지속되는 영향을 주는 재난인가

- 재해재난에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구분해보면 한편에는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을 주는] 쇼크로 다가오는 재해재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태풍이나 교통사고나 일시적으로 파괴를 가하는 재해재난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염병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처럼 긴 시간 동안 사회를 괴롭히는 재해재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시적으로 파괴를 가하는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정책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가하는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정책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 일시적인 충격을 주는 재난이 왔을 때는 행안부 중심으로 대응하더라고요. 거기서 인력을 투입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해석과 의견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적절하며, 이를 고려한다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우선적으로 고용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이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도 일부 속할 수 있으나 이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의 프레임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자원 투입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다.
-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다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고용노동정책의 틀에서 본다면, 이 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필수업무’와 관련된 산업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 그런 한편으로, 면접에 참여한 이들은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필수업무의 지속적 수행과 적절한 인력수급”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영역으로 산업안전, 작업장환경, 불평등, 야간근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책무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법제도의 목적과 정부 책무에 대한 일반적 해석

- 법률 명칭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 [법률의 명칭을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이 입법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우선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그 후에 거기에서 ‘추가로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거겠죠. …… 우선은 국가 기능, 사회 기능 유지가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필수업무가 지정되면,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거죠.
- 필수업무종사자법 3조를 보면,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적정 인원”을 먼저 제시해야 해요.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수업무로 지정된] 어떤 업무에 이만큼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서 일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재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해고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면 빨리 채용해서 최소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을 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법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② 재난안전법을 보완하는 필수노동자법

- ❖ 재난 안전 분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민간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이 법은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률을 만들었고 경제계와 산업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또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을 재난 대처 대책에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인인가, 아니면 고용노동정책의 틀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 [개인적인 의견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을] 재난 대책의 일부로 생각해야지 지자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 제시의 필요성

- ❖ [필수업무종사자 법제도가]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이런 거를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건…… [논리적 연결이 약한 것 같아요.] …… 여기에[=법제도의 목적 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설정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 산업안전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 같은 거…….
- ❖ 이 법 조항의 뒷부분[=제3조 제2항]이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정 인력수급’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괜찮다고 보는데, ‘근무시간을 보장하라’는 건 너무 구체적인 것 같고,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은 너무 선언적인 것 같아요. …… 보호·지원에 관한 부분은 [안전이라든지 복지처럼 범주를 정해서]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취약노동자 보호나 권리보장 관련] 노동관계법률처럼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나 성차별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 때문에 근무시간 등을 [법률로 정해서] 보장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그러다 보면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야간근로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야간 근로도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예컨대 특별건강검진을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거의 선언적인 문구니까, [법제도에서 정한 책무에 따른 정책 세부과제를]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필수업무 지정 기준에 관한 의견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이라는 조건과 맥락에서 벗어나서 필수업무 범위를 지정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첫째, 필수업무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국가핵심기반”이 필수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²¹⁾
- 둘째, 인천지역의 맥락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 공항과 항구 등 물류와 관련된 산업 기반시설,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반시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인천지역의 재난 특성과 관련돼 있었다.
- 셋째, 한편, 광역지차단체가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나아가 자치구별로 필수업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초자치단체는 미시적인 사회 연결망에 기반해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법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역에서 서로 필수업무의 범위가 다르면 혼란이 크리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① 국가 수준에서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업무: 국가핵심기반

- 우리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기 가장 필요한 게 물, 전기, 가스인데, 이걸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물, 전기, 가스는 재난 상황이든 아니든 다 똑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필요하긴 하죠. 유통이라든가 물류도 [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1)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② 인천지역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업무: 물류와 상하수도 등

- ▶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도권을 위한 물류 도시입니다. 공항과 항만, 물류를 위해 인천의 필수업무 유지인력을 보강하고 물류가 되게 많은 경인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위해서도 [인천지역의] 필수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아시다시피 인천은 컨테이너 집결지예요. …… 인천이 없으면 대한민국 택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업무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유지죠. 보건의료나 돌봄, 콜센터 이런 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에요.
- ▶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뭄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③ 기초자치단체 필수업무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엇갈린 의견

- ▶ 저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디테일하게 정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디테일하게 지정해야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정책 대상이] 모호하게 되겠죠. …… 중앙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필수노동자랑 지역단위에서 얘기하는 필수노동자랑 달라야 한다는 거죠. …… 지원정책이 명확하게 전달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 구 단위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필수업무종사자를 정하면, 여기 구에서는 우리 직종이 필수업무인데 저기 구에서는 왜 우리가 필수노동자가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 [작년 유사 조사연구를 하면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시작했는데…… 그럼 거리를 청소하는 우리는 필수노동자가 아니냐 이런 반박들이 오는 거죠. 필수업무를 지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시 고려 기준에 관한 의견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지만,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률이나 정책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과 정책은 “재난 발생 시”라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공무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규율되는 공무원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법률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과 정책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대상은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노동자가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다.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생겨난 ‘이재민’ 그 자체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아니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노동자도 그 자체로는 필수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 신체·생명 보호’, ‘사회 기능 유지’라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근무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만이 필수업무 종사자라 할 수 있다.
- 셋째, 필수업무 범위, 그리고 그 업무에 종사하며 보호·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확정할 수 있다. 어떠한 유형과 규모의 재난이며, 어떠한 특성과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지원 정책의 적용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명확하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대상은 평상시에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경계를 잡아야 하며, 또한 평상시에도 보호·지원 정책이 유연하고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하고 명확한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능성이 큰 집단은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공무원은 필수업무종사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 ❖ 법률에는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가]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포함한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요. …… [법 조항을 보면] 사실 당연히 공무원은 아니라고 해석해야죠. 그렇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 ❖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는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존의 여러 가지 법률을 보더라도 실제로 공무원들은 전시가 되든 재난이 발생하든 평시든 주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요. ……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도 병원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쟁의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쟁의 시에만 ‘필수 유지 업무 종사자’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마찬가지로 필수업무 종사자도 특별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니고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②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노동자들인가 재난에 대처하는 노동자들인가

- ❖ 처음에 조례가 생기게 된 배경이, 코로나 19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불안정, 실업, 산업안전 이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취약했던 2차 노동자 시장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보호할 것인가 고민했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 그러다 보니까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받았던 [이질적인] 노동자 집단들을 ‘필수노동자’라는 카테고리에 한데 묶은 거죠. ……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산업, 예를 들면 배달, 콜센터 그런 것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한 동시에, 인천 상황으로 봤을 때 [노동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산업, 교통 등 여객, 인천공항 그 노동자를 다 통틀어 필수노동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 맥락에 따라서 필수노동자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 필수업무로 지정된] 업종과 직종들이 잘 매칭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업무로 지정된] 콜센터나 택배는 재난이 아니라 현재 산업구조나 경제발전이 따라 업무가 폭등하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업종이 왜 재난과 관련해서 필수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거하고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③ 평상시에 적용되는 정책인가 재난시에 적용되는 정책인가

- [법제도의 문구를] 상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평상시에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재해나 재난이 됐을 때 필수업무로 지정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필수업무가 지정되고 보호·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 일하도록 하고, 이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해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인력수급 방식이나 근로조건 저하 방지 대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되면 지원·보호 정책을 얼마나 적용받는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됐던 돌봄노동자는 이제 상황이 종료되면 필수업무 종사자가 아닌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 시기에 위원회를 거쳐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업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아 아닐 때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또한 그 종사자 분들이 주로 대면 업무나 서비스 업무를 많이 하는 업무를 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④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관련 프로세스 제안

- 사전에 인천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은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는 누구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인천광역시에서 [조사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겠지만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인천지역의 필수업무나 그 종사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범위를 특정한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또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6) 필수업무종사자 대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 ❖ 첫째,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이 재난 발생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과정 및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기도 했고, 나아가 인천지역의 항구나 공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 ❖ 둘째, 면접에 응한 전문가 중에 일부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적절한 노동강도로 일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규모나 노동과정을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평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업무 종사자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지식이 축적이 되어야 재난 시에 이들에게 적절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 셋째, 재난 시에도 법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근로감독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 면접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평상시 상황이 재난 시에 권익 침해나 위험한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 ❖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당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의 활동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평상시에도 취약한 환경에서 높은 강도로 일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노동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특히 이동노동자와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 마련,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 ❖ 다섯째, 면접에 응한 전문가들은 필수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사용자 없이 일하는 노무제공자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소기업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인 필수업무 종사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사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 여섯째, 면접에 응한 전문가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2020년 말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져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생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정책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 일곱째, 면접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재 필수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취약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인천광역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대상 또한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서 기존에 포괄적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지원 정책을,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적용하는 것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① 업무별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

- ❖ 관계부처에서 [재난 대처와 관련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저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공무원들이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민원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직 일선 공무원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행정안전부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그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놔서 활용되면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필수업무 종사자법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필수업무 관련 매뉴얼 보급]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무르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 인천의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나 이런 데 사고[=대규모 재난]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습본부가 꾸려지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대응할 텐데, 국토부, 해양수산부…… 보고해야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난안전법에 보면 [대규모 재난 대응] 주관을 누가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 저는 [지역단위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에서도]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한 구체성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하나의 루트로 딱 정해서 하는 그런 체계가 설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② 적절한 노동강도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동과정 개편과 인력충원

필수노동자들 상당수가 50대 이상이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관절도 아프고 몸에 이제 이상이 많이 오잖아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많아 돌보게 되고요.] …… 이 노동자들의 치료 지원이나 가족 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일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으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힘드니까……. 이런 걸 보완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게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에 우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수업무 종사자 대책은 [노동자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정 인력을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대책…… 마지막으로 쉼터.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게[적정 규모 인력과 괜찮은 노동조건, 그리고 휴식 보장] 빠지면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것밖에 안 돼요.

③ 재난 상황에서 커질 수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 감시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중에서]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나 근로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 그냥 돈을 얼마 주는 것보다는 여건을 개선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두고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이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국가의 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해가 쉽다고 봅니다. ……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이 법으로 [안정적인 산업생산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 문제를] 커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 마련

- ❖ 인천시에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이동노동자쉼터가 없잖아요. …… 필수노동자 대책을 만든다면 이 부분도 꼭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 다양한 필수노동자 직군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월 18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돼서 휴게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지역 중요 거점들에다가, 이를테면 주민센터이나 공공기관에 조그만 공간만 마련해도 될 텐데, 거기다가 택배라든지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이런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 ❖ [필수업무 종사자인] 돌봄노동은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이 하는 노동입니다. 요양보호사나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 70대도 있습니다. …… 돌봄노동자 치유센터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가 상담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장애인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일을 못 하시는 지경까지…… 이런 분들은 심리치료를 좀 제대로 비용 부담 없이 하면 좋는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늦어요. …… 돌봄 노동자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센터를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⑤ 필수업무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속적 지원

- ❖ 필수업무종사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 많죠. ……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된] 돌봄 종사자,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일 경우가 많은데요. …… 이제 우리가 산재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했고 또 고용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게 했고…… 그런 부분에[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인천공항공사에서 경비나 보안 업무 하청을 주던 것을 얼마 전에 정규직화해서 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죠. ……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필수업무종사자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 공항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하청이었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공항의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종사자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자회사 내지 본사의 공무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규모가 유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콜센터에서도 그 사람들이 유지가 되면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해요. …… 인천광역시든 국가든 필수업무로 정하면 [적정한] 인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금을 준단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⑥ 담당자 정책역량 강화와 시민사회 홍보

- ❖ 필수노동자라든지 필수업무 종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 외에는 실제로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평소에 그런 역량들을 갖춰 놓지 않으면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종사자들을 동원하고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 사실은 법률이 제정됐는지조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체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법률은 제정돼 있는데 정말 위원회를 여는 거에 굉장히 소홀할 수 있거든요. …… [법률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착실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널리 알려져 정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당연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위원회부터 충실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⑦ 상호 보완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먼저 정립된 다음에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으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지금 여기[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적정 임금, 노동시간 보장, 노동권익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만들 때, 봐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유사한 내용이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고] 또 서로 연계해서 상호작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바닥을 받쳐주는 기본 틀이 되고, 그 위에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이 레이어로 쌓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동정책 기본계획 안에 있는 [인천지역 전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성 보장제도, 산재 위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그 위에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시범 사업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틀이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정책들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필수업무종사자 대책의 집행 관련 의견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집행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첫째,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되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무를 맡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재난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부)시장 주관 아래 다양한 부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부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반드시 민관협치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협치 기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자신의 사업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천지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다루거나 필수업무 관련 산업의 조정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① 중앙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과 유관 부처의 협력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률과 그에 따른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데, 장점으로 보면 기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보장이나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이나 그 업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보장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점으로는 이 정책은 결국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 게 [고용노동부]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가 있죠.

최근에 정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게 물론 좋게 보면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치시키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주관하는 것이] 장단점이 확연히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일단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했으니까 노동부에 힘을 실어줘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② 지자체 내 종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필수업무종사자 정책들을 [인천광역시청 내의] 한 부서가 모두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인천광역시 부시장 산하에 회의체로 싹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행정 집행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좋은 정책이면 다른 시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말고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실행하려 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민간 또는 시민사회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마인드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청 내] 부서가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를 같이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 중앙에서도 노동부가 하고 있잖아요? …… 중앙정부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지시나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했을 때, 노동부에서 문서를 내려보냈는데 [지자체의] 재난과나 안전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및 보호 정책들] 병행하고, 재난 담당 부서라든지 또 총무과나 이런 부분의 협조를 받는 게, 중앙 정부하고 좀 일관성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③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방향

- ❖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중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 ❖ 법률에서도 일단 중앙위원회를 먼저 두고 지방정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위원회는..... 코로나19라든지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고..... 지자체의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지역 재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단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하고 지자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각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필수업무를 지정을 하고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④ 인천광역시 기존 자원 및 시민사회 자원 활용의 방향

- ❖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만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잘 돼 있는 부분은 이젠 잘 되겠다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예컨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여기서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하나의 의제로 해서 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노동권익센터의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고요.
- ❖ 최근에 인천노동권익센터가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공공기관 형태로 있어요. 거기가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인천교통공사, 또 도시공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공공기관 주변에] 거기에 [필수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산하 공공기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 [다양한 노동단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도 포함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노동익센터와 협의회,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인천근로자건강센터나 심리상담소, 인천노사발전재단이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같은 데가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연계가 돼서 거버넌스로 해야 제대로 추진되는 거죠.

⑤ 재난 대처 관련 민관협치의 방향

- ❖ 필수업무종사자 정책과 관련해 민간협치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민간협치를 할 때 우선 재난과 관련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되는 노동자 부분에서도 대표로 인정될 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 같은 경우 장관이고 지자체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또 전국 단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도 참여하도록.....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참여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 부분이 이제 민간 전문가가 될 텐데 사실 좀 모호하긴 하죠. 위원회를 운영할 때..... 예컨대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민간인 간의 비율을 2 대 3 그러니까 민간이 더 많게 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끌어들이고, 어떤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전문성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소결

- 제5장에서는 인천지역 노동 및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제도화 추진은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이들'을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노동 조건에 방치했던 한국 고용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추진된 데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당사자를 대표하는 조직들의 참여와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은 이중 노동시장, 균열 일터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만들어진 법·제도와 대책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법제화는 단지 고용노동정책으로서 의미를 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복합재난의 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일차적으로 고용노동에 관한 것이다.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도 일부 속할 수 있으나 이는 부차적이다. 고용노동정책의 틀에서 본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업무'와 관련된 산업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필수업무 범위 지정 및 정책 적용 대상 선정과 관련된 의견

- 인천지역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 첫째, '사회재난'의 측면에서는 인천이 산업 및 물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은 국가 수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물류 중심지로서 공항과 항구 등이 집적해 있다. 또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설립된 지 오래돼서 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도 있다. 이런 물류 및 산업(기반)시설에 사고가 나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수준으로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 둘째, '자연재난'의 측면에서는 특히 '수재'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은 바다에

접한 도시로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의 경험이 많다.

- ❖ 셋째, 인천은 여러 시군구를 통합하여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오래된 생활기반시설에 기초한 구역과 새롭게 만들어진 생활기반시설에 기초한 구역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생활기반 시설이 오래된 구역에서는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과거 경험을 보면, 특히 상하수도 배수관의 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정책 수립 시 ‘필수업무의 범위 지정’과 ‘정책 대상 종사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 첫째, 필수업무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국가핵심기반”이 필수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 공항과 항구 등 물류와 관련된 산업기반시설,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반시설에 주목해야 한다.
- ❖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의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지만,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률이나 정책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과 정책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대상은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노동자가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다. 마지막으로, 필수업무 범위, 그리고 그 업무에 종사하며 보호·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확정할 수 있다. 어떠한 유형과 규모의 재난이며, 어떠한 특성과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대상은 평상시에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경계를 잡아야 하며, 또한 평상시에도 보호·지원 정책이 유연하고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하고 명확한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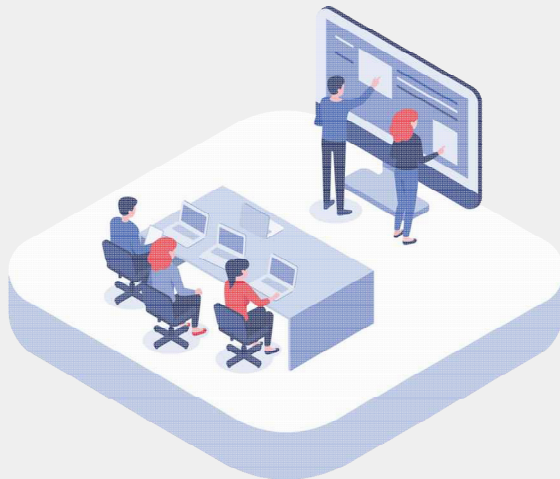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획과 집행 관련 제안

-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 ❖ 첫째, 재난 발생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과정 및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요구된다.
- ❖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적절한 노동강도로 일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규모나 노동과정을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평상시에 이뤄져야 한다.

- ❖ 셋째, 재난 시에도 법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평상시에나 재난 발생 시에 특히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특히 이동노동자와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 마련, 그리고 심리상담 등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 ❖ 다섯째, 필수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사용자 없이 일하는 노무제공자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여섯째,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정책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 상당수는 평상시에도 취약노동자이므로, 이들은 인천광역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 정책 담당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에 주목해야 한다.
-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첫째,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주무를 맡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부)시장 주관 아래 다양한 부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부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반드시 민관협치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협치 기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자신의 사업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천지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다루거나 필수업무 관련 산업의 조정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VI. 정책 수립에 관한 제언



1. 개관

-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과 내용에 관해서 제언하고 논의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먼저, 한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정치적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이러한 맥락에 호응하는 지역단위 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제2장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관 정책에 관한 검토 결과 등에 기초한다. 핵심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와 상보적으로 연결된 ‘고용노동’ 제도에 속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재난 발생 이전(평상시) △재난 발생 시기 △재난 종료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지적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필수업무의 범위와 우선해서 보호·지원 정책을 적용해야 할 대상자를 구체화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5장에서는 다양한 지역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정한 대상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추가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업종을 특정해서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 이어서 제4장 필수업무 종사자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5장 노동 및 안전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 틀과 추진체계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요컨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망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에 근거해야 할지를 논리 모형으로 예시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어떠한 지식과 연결망이 확보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해볼 만한 정책과제 몇 가지를 구체화하여 제안할 것이다. 예시되는 정책과제의 세부 프로그램은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시기 △재난 종료 이후 등의 맥락에 따라 구성할 것이다.
- 본 장에서 예시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축약하면 다음 쪽의 그림과 같다.

전망

재난 시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는 물류·산업 첨단도시 인천

대상

<인천 필수업무 범위>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폐기물
처리 △경비 △운송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도로 등 사업체와 종사자
: 3만 4천여 사업체, 약 20만 명

<보호·지원 정책 대상>

필수업무 부문에서 불안정 고용과 취약
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 돌봄, 공공의료, 콜센터, 경비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음

정책
목표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

필수업무의 지속 수행 및
원활한 인력수급

당사자 이해대변 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추진
과제

-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
건 활동 강화
-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
- 재난 시 작업자 안전보건
지침 및 관련 물품 공급

-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
조건 개선
- 재난 시 고용의 유지 또
는 확대를 위한 지원
- 긴급 생활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
련 제공

- 지속적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
화 지원
-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
처리 채널 확대
-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
모사업 활성화

추진주체
/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
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고용노동부, 시군구 지자체,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
정협의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
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
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대학교캠퍼스·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공동훈련센터,
인천노사발전재단 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의 목표와 방향

- 2020년 12월 이후 한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필수업무의 지속적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으며,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시기 △재난 종료 이후 등의 맥락에서 정책 추진 과정이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합당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 결합의 정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시에도 이러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 배경과 목표

- 한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법·제도상 의제로 부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면서다. 시기적으로 2년간량밖에 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이하,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고, 국회는 5개의 법률 발의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의 제도화 추진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이어졌다. 인천광역시의회의는 2021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를 제정했다.
- 이러한 법·제도 변화의 기저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다음 두 가지의 집단적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그리고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서 우선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필수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그러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평상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체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찰의 결과는 정부가 2020년 12월 긴급하게 발표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추진 배경”과 이어 제정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목적”에 다음 <표 6-1>과 같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다.

<표 6-1> 필수업무종사자법의 목적과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추진 배경

□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1. 추진 배경” 중에서 발췌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 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
- 그럼에도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밑줄은 필자가 강조

■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이러한 배경 인식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집행의 결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다음 <표 6-2>와 같이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지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필수업무를 지속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관리해야 한다.

■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은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안전 및 건강 보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로 △필수업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물품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위생 및 휴게시설 확충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속적 업무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필수업무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취약계층 필수업무 종사자 생계지원 추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등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표 6-2〉 필수업무종사자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총괄 대책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총괄 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필수분야 방역 강화	- 감염 취약 분야 대상 방역 점검 강화 -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 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사회안전망 확대	-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 밑줄은 필자가 강조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은 이상의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과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흐름을 다음과 같이 의미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이러한 제도화의 추진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적극적 행정 대응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다중적인 위해(danger)가 겹쳐서 분출하는 ‘복합재난(Natech)’²²⁾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인천은 특히 복합재난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둘째, 이러한 법과 대책은 ‘균열 일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도 있다. 이를테면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상황에 놓여 있는 주변부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건과 위상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는 협의의 재난관리를 넘어서 광의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이자,²³⁾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전향적 시도로 의미화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정책 추진의 기본 과정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과정은 △재난 발생 이전(평상시) △재난 발생 시기 △재난 상황 종료 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22)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23)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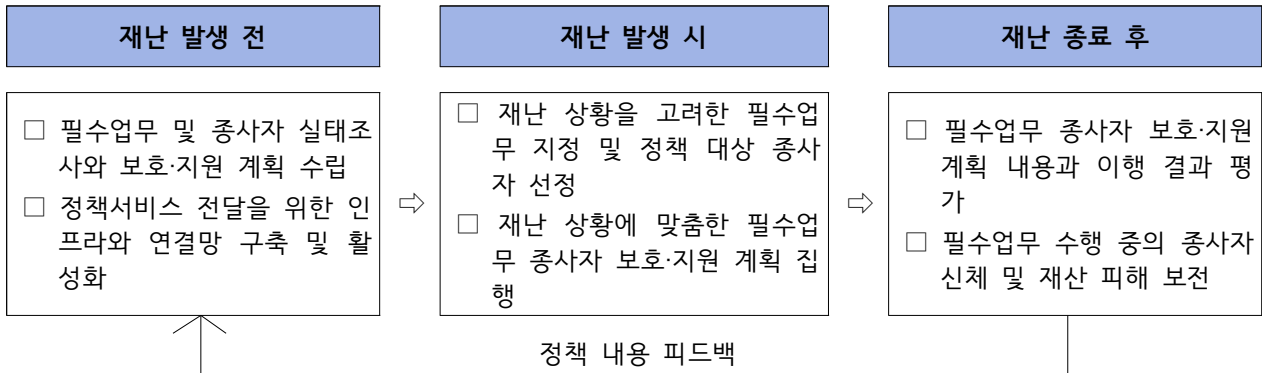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다음 <표 6-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6-3>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재난 발생의 맥락을 고려한 규정들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 ⑥ 생략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6-1>과 같이 정책 추진 과정의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한다. 우선 매년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평상시에 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인프라 등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집행해야 한다.
- ❖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면 필수업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난 상황에 맞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재난의 대응과 복구,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의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일부가 된다.
- ❖ 셋째, 대규모 재난 등 상황이 종료되면 고용노동부는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필수업무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피드백을 해야 한다. 한편, 대규모 재난 종료 후에는 이러한 정책피드백 외에도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입은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 과정



❖ <표 6-2>의 오른쪽 칸에 제시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총괄 대책’에 따른 정책과제들 역시 <그림 6-1>의 흐름에 기초하여 구분할 수 있다.

❖ 이를테면 △감염 취약 분야 대상 방역 점검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등은 ‘재난 발생 시기’에 긴급하게 추진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은 재난으로 인해 필수업무 종사자가 겪은 고충과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지속해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면접조사에 응한 노동 및 안전 전문가들 다수는 이렇듯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난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며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재난 발생 이전 평상시에는 정책 대상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간접 개입’ 방식을 유지하다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고 집중적인 ‘직접 개입’ 방식으로 전환하며,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맥락에 걸맞은 ‘보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재난 발생 이전’에는 ‘고용노동’정책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재난 발생 시기와 그 직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성격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천 필수업무 범위와 보호·지원 정책 대상의 구체화

- 법률에 따르면 필수업무의 범위는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재난 피해 통계와 주요 사례, 그리고 전문가 의견과 외국 및 다른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조건과 맥락에서 필수업무 범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과 관련된 업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기한다.
- 또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지원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표준산업분류와 종사상 지위를 검토하여, △공중보건의료 △경비 △돌봄 △콜센터 등 분야의 취약계층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우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중요한 필수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법과 재난안전법의 대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이 적용에서는 제외된다.

1) 필수업무의 범위 검토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라고 정의한다.
- 또한 필수업무위원회가 필수업무의 범위를 심의할 때는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²⁴⁾ 2020년 12월 발표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라는 재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 등을 필수업무로 지정했다.
- 이는 필수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 한편, 평상시에 필수업무 범위 지정과 관련된 논의할 전개할 때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재해재난의 ‘위해(danger)’ 경험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요컨

24)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정의)와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의 내용 참조

대 인천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떠하였는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광역의 필수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놓는 것이다.

- ❖ 다른 하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미래에 겪을지 모를 ‘위험부담(risk)’을 종합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확대 재생산돼 국가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복합재난(Natech)’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 그러한 경로를 차단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광역의 필수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놓는 것이다.
- ❖ 본 보고서에서는 체계적이지는 않았으나 노동 및 안전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후자의 방식으로 광역의 인천지역 필수업무 범위를 지정하고자 했다.
- ❖ 전자의 방식으로 하면 인천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범위 지정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자연재난) 연보> 검토했더니 통계상으로 인천지역은 재난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두드러진 점이 별로 없었다.²⁵⁾
- ❖ 그러나 지역 특수적인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인천지역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 ❖ 하나는 인천이 국가 수준에서 산업 및 물류의 핵심 집적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오래된 도시와 새로운 도시가 통합하여 지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는 단순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언제든 복합재난으로 발전하여 확장된 범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인천광역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를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도시다.²⁶⁾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간계획 및 주요 개발 예정지 검토 등에 기초하여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는데, 인천광역시는 특화산업 분포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를 전망으

25) 다만, 건물 침수, 무동력 선박 반파 등 수재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의 경우에는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피해가 큰 편이었다.

26) 인천일보(2021년 6월14일), 「인천을 국제물류 첨단산업 벨트로. “향후 20년 인천지역 도시 발전의 기준점이 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의 인천 계획이 정해졌다. 균형발전과 제조업 집중 관리, 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본 뼈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나선다. (중략) 인천시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제조업 집중 관리 △산업단지공급계획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인천 2호선 검단연장과 서울 7호선 석남·청라 등 철도 네트워크 구축, 녹색 공간 조성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인천공항의 아시아 지역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기반 마련·드론 산업 중심지 및 항공산업 육성 도모 △영종~신도 평화도로 2025년 개통 통한 접경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로 확립했다. 여기에는 인천지역에 철도 네트워크와 신규 도로, 공항과 항구 등 물류허브,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설이 집결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 바뀌서 말하면 이렇듯 인천지역에 집결해 있는 중요 산업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림 6-2>와 같이 재난의 연쇄와 피해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맥락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공항, 항구, 철도·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보호, 유지, 운영, 복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6-2> 복합재난의 구조



- 둘째,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여러 시·군·구가 통합하면서 발전해온 광역시로서, 오래전에 개발이 이루어진 구역(예컨대 구도심)과 최근에 발전이 이루어진 구역(예컨대 신도심) 간에 생활기반시설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따라서 재난이 인천지역 전체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도심 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제3장에서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인천지역 재난 피해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이와 관련해서 특히 '상·하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언론보도에서는 인천지역에 태풍이나 호우 혹은 가뭄 등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했을 시, 그로 인해

27) <그림 6-2>는 다음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오윤경(2013). 『Natech 재난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노후화된 상·하수도 배수관’이 파괴돼, 도로 붕괴나 지반 침해, 수돗물 오염 등의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도 주목해야 한다.

- ❖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광의의 인천지역 필수업무 범위는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에서 지정한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폐기물 처리 △경비 △운송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도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3장에서는 이러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업종을 구분하고,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서 해당 업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와 실태를 대략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체는 현재 약 3만 4천여 개이며,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0만 명이다.

<표 6-4> 산업분류에 따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

(단위 : 개, 명, %)

유형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인천시	비율	전체	인천시	비율
상·하수도	생활용수 공급업	517	12	2.3	18,045	853	4.7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¹	16,147	839	5.2	101,324	4,221	4.2
	하수 처리업	719	24	3.3	11,493	595	5.2
	폐수 처리업	310	35	11.3	4,051	445	11.0
공항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3,954	124	3.1	49,359	1,294	2.6
	항공 여객 운송업	142	37	26.1	31,565	1,677	5.3
	항공 화물 운송업	51	5	9.8	1,022	109	10.7
	공항 운영업	20	3	15.0	6,041	3,682	61.0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6	19	19.8	7,617	3,979	52.2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78	27	3.5	14,344	2,324	16.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370	187	4.3	55,903	1,665	3.0
항만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14	2	0.9	2,665	-	-
	해상운송업 ²	1,122	143	12.7	19,170	1,111	5.8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³	136	11	8.1	1,124	48	4.3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43	7	16.3	3,908	733	18.8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409	32	7.8	8,666	325	3.8
철도·도로	도로 건설업	1,945	30	1.5	40,656	425	1.0
	철도 여객 운송업	236	-	-	7,311	-	-
	단독 주택 건설업	6,652	219	3.3	52,745	2,292	4.3
폐기물 처리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649	131	7.9	24,936	1,575	6.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673	38	5.6	4,680	300	6.4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695	51	7.3	3,678	369	10.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593	27	4.6	12,320	942	7.6
	지정 폐기물 처리업	241	12	5.0	2,582	119	4.6
보건·의료	건설 폐기물 처리업	689	33	4.8	9,005	471	5.2
	병원	3,816	189	5.0	577,825	29,516	5.1
	의원	63,445	3,082	4.9	388,024	19,794	5.1
	공중 보건 의료업	3,569	72	2.0	34,759	1,506	4.3
돌봄	기타 보건업	4,866	187	3.8	22,550	1,169	5.2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8	533	5.9	166,517	10,528	6.3
콜센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65,945	3,523	5.3	843,359	46,752	5.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070	47	4.4	81,826	1,126	1.4
경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408	68	4.8	69,822	7,769	11.1
운송	육상 여객 운송업	163,725	9,303	5.7	417,333	24,578	5.9
	도로 화물 운송업	204,973	14,731	7.2	316,505	21,707	6.9
	소화물 전문 운송업	9,139	412	4.5	75,620	6,158	8.1
합계		573,375	34,195	6.0	3,488,350	200,157	5.7

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도로 분야에도 해당됨.

2) 해상운송업에는 '외항 및 내항 여객 운송업'이 포함됨.

3)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에는 '내륙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과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이 포함됨.

* 타지역은 인천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의 종사자 수를 의미함

❖ <표 6-4>에 따른다면 인천지역 필수업무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첫째, △폐수 처리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소화물 운송업 등은 인천지역에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해 있는 편이다. 이런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인천지역에 집중된 맥락과 조건을 파악하고 필수업무 지정

시 반영해야 한다.

- ❖ 둘째,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단독 주택 건설업 △공중 보건 의료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지역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인천에 자리 잡지 않은 맥락과 조건을 조사하여 필수업무 지정 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중 보건 의료업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종사자의 부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대상 필수업무 종사자 검토

-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필수업무위원회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선정을 두고 심의할 때는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가 확인토록 하고 있고,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²⁸⁾
- ❖ 한편, 2020년 12월 발표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에서는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 노출 △과로 및 취약한 근로여건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을 검토했다.
- ❖ 이처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책 적용에 투입되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법·제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우선 대상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정책 대상 필수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당사자가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신분을 나누면, 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의 규정은

28)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정의),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의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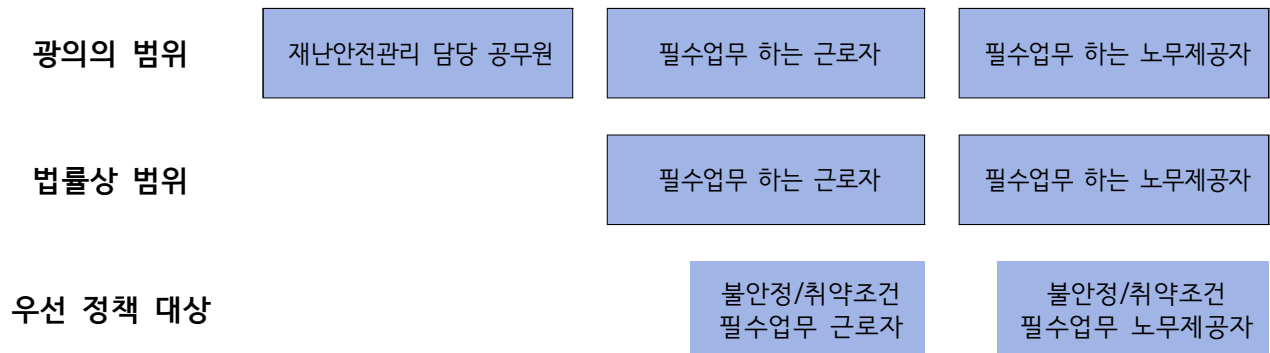
이 중에서 ‘공무원’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명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 여기서 공무원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들로, 광의의 필수업무 정의에 따른다면 이 업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법 및 재난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한편, 최근 노동정책 논의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큼 사용종속 관계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노동력이나 노동의 결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계를 꾸리는 이들을 지칭한다.²⁹⁾ 이를테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종속된 1인 자영업자, 비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20년 발표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에서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넣어 있어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대상을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묶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 둘째, 필수업무종사자법은 보호·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평상시에 이뤄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법률 제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꼭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에 놓여 있다면, “국민 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 ❖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중에서도 위험하고 불결한 근무환경과 취약한 처우 및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이들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우선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그림 6-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노무제공자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례로는 고용보험법상의 다음 규정을 참고하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그림 6-3>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 앞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필수업무로 고려할 수 있는 부문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한편, 같은 자료에서 업종별 종사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전국 평균보다 인천지역에서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은 작고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비임금근로장의 비중이 큰 영역을 가려낼 수 있다.
- 명확하게 정책 적용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종사상 지위 분석 결과는 인천지역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대리적인 조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6-5>에 따르면 ‘상·하수도’ 부문의 △생활용수 공급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공·항·항만’ 부문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보건·의료’ 부문의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돌봄’ 부문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부문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부문의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은 전국 평균보다 인천지역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등의 비중은 높은 영역이다. 선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호·지원 정책 적용 우선 대상의 후보로 고려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표 6-5> 인천과 전국 필수업무 종사자의 상용직 비중 비교

유형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상용 종사자 비율 (%P)
		총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비율(%)	총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명)	상용 종사자 비율(%)	
상·하수 도	생활용수 공급업	853	790	92.6%	18,045	17,418	96.5%	-3.9%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¹	4,221	1,251	29.6%	101,324	35,500	35.0%	-5.4%
	하수 처리업	595	582	97.8%	11,493	10,820	94.1%	3.7%
	폐수 처리업	445	440	98.9%	4,051	3,959	97.7%	1.1%
공항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0	0	0.0%	49,359	28,129	57.0%	-57.0%
	항공 여객 운송업	1,677	1,674	99.8%	31,565	31,281	99.1%	0.7%
	항공 화물 운송업	109	109	100.0%	1,022	1,005	98.3%	1.7%
	공항 운영업	3,682	3,681	100.0%	6,041	5,999	99.3%	0.7%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3,979	3,773	94.8%	7,617	7,299	95.8%	-1.0%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2,324	2,239	96.3%	14,344	11,868	82.7%	13.6%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65	1,411	84.7%	55,903	50,561	90.4%	-5.7%
항만	항만,수로,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0	0	0.0%	2,665	1,523	57.1%	-57.1%
	해상운송업	1,111	964	86.8%	19,170	17,371	90.6%	-3.8%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48	42	87.5%	1,124	948	84.3%	3.2%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733	726	99.0%	3,908	3,882	99.3%	-0.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325	256	78.8%	8,666	5,349	61.7%	17.0%
철도·도 로	도로 건설업	425	279	65.6%	40,656	23,693	58.3%	7.4%
	철도 여객 운송업	0	0	0.0%	7,311	6,819	93.3%	-93.3%
	단독 주택 건설업	2,292	1,445	63.0%	52,745	23,887	45.3%	17.8%
폐기물 처리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575	1,481	94.0%	24,936	23,327	93.5%	0.5%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00	285	95.0%	4,680	4,070	87.0%	8.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369	340	92.1%	3,678	2,928	79.6%	12.5%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942	923	98.0%	12,320	11,299	91.7%	6.3%
	지정 폐기물 처리업	119	108	90.8%	2,582	2,363	91.5%	-0.8%
	건설 폐기물 처리업	471	423	89.8%	9,005	8,168	90.7%	-0.9%
보건·의 료	병원	29,516	28,423	96.3%	577,825	556,201	96.3%	0.0%
	의원	19,794	16,076	81.2%	388,024	309,974	79.9%	1.3%
	공중 보건 의료업	1,506	1,242	82.5%	34,759	30,833	88.7%	-6.2%
	기타 보건업	1,169	520	44.5%	22,550	12,775	56.7%	-12.2%
돌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0,528	9,543	90.6%	166,517	154,741	92.9%	-2.3%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6,752	29,306	62.7%	843,359	565,982	67.1%	-4.4%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126	1,034	91.8%	81,826	75,897	92.8%	-0.9%
경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769	6,090	78.4%	69,822	61,512	88.1%	-9.7%
운송	육상 여객 운송업	24,578	15,202	61.9%	417,333	245,791	58.9%	3.0%
	도로 화물 운송업	21,707	3,536	16.3%	316,505	43,603	13.8%	2.5%
	소화물 전문 운송업	6,158	3,627	58.9%	75,620	26,581	35.2%	23.7%
합계		198,863	137,821	69.3%	3,488,350	2,423,356	69.5%	-0.2%

4.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기본 틀과 정책과제 예시

- ❖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 틀과 협력체계를 예시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 ❖ 또한,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다양한 방향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 중앙정부 및 다른 지역의 유관 정책 검토 결과, 제4장 필수업무 종사자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5장의 노동 및 안전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휴게시설과 쉼터 설치 △재난 시 안전보건 지침 제작 및 보급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 등을 우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1) 정책의 기본 틀과 자원 동원 방향 예시

- ❖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맞춤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시책과 제도 개선 사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조사·연구 △행정적·재정적 지원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다.
- ❖ 한편,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 이상의 내용은 <표 6-6>에 제시돼 있다.

<표 6-6>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의 지원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 관련 조항

□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 제7조(지원계획 수립)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정책의 전망과 목표

- ❖ <표 6-6>의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가 제시하는 틀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모형을 <그림 6-4>와 같이 예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에서 제시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전망과 목표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4>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목표와 전략 예시

전망	재난 시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는 물류·산업 첨단도시 인천		
정책 목표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	필수업무의 지속 수행 및 원활한 인력수급	당사자 이해대변 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 과제	□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활동 강화 □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 □ 재난 시 작업자 안전보건 지침 및 관련 물품 공급	□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조건 개선 □ 재난 시 고용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지원 □ 긴급 생활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제공	□ 지속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지원 □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확대 □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모사업 활성화

■ **사회적 전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재난 시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물류·산업 첨단도시 인천”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화 추세가 형성된 배경과 취지(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에서 안심하고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필수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다는 점 등), 그리고 재난 발생이나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인천지역의 조건과 맥락(인천은 국가 수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와 산업 중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전망’ 설정이다.

■ **전략적 목표:**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중기적인 목표’로는 △재난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 △당사자 이해 대변 체계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필수업무종사자법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다. 마지막의 것은 필수업무 종사자 법과 정책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므로 당사자와 사용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노사정 집단적 관계 또한 새롭게 구축돼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하는 목표다.

■ **추진 정책과제:** 한편,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의 지원사업 조항, 그리고 제2장 등에서 살펴

본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정책 등을 검토하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가 수행해야 할 '추진과제'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 ❑ 첫째,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활동 강화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 △재난 시 작업자 안전보건 지침 및 관련 물품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둘째,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생활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제공 등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 이해 대변 체계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지원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확대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모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정책 적용 대상: 앞에서는 인천지역의 재난 맥락, 국가통계자료, 법·제도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광의의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범위를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도로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경비 △운송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많은 부문의 불안정 및 취약조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우선 정책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부문의 △생활용수 공급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공항·항만' 부문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보건·의료' 부문의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돌봄' 부문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부문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부문의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불안정 및 취약조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되리라 추측했다.
- ❑ 한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인천지역에서는 특히 '공공의료'와 '돌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종합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이 부문의 보호·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자원 투입과 연결망 활용 관련 의견 제시

-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사회 연결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먼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인천광역시청 내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에도 포괄되지만 ‘고용노동’ 측면의 성격이 더 강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청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부서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직구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는 시군구 고용노동 관련 부서 혹은 담당자와 소통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정책으로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정책의 측면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이나 ‘사업장 유해환경 개선’ 등 생활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정책으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시장의 주관으로 다양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정책으로 다뤄지는가에 따라 확보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노동정책으로서 단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시 예산으로,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칭 예산으로, 재난안전정책의 틀에서 다뤄지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예산의 편성 프로세스에 따라 일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6-5>에서 “3. 기반·생활 시설 안전도 제고” 부문 참조).

<그림 6-5>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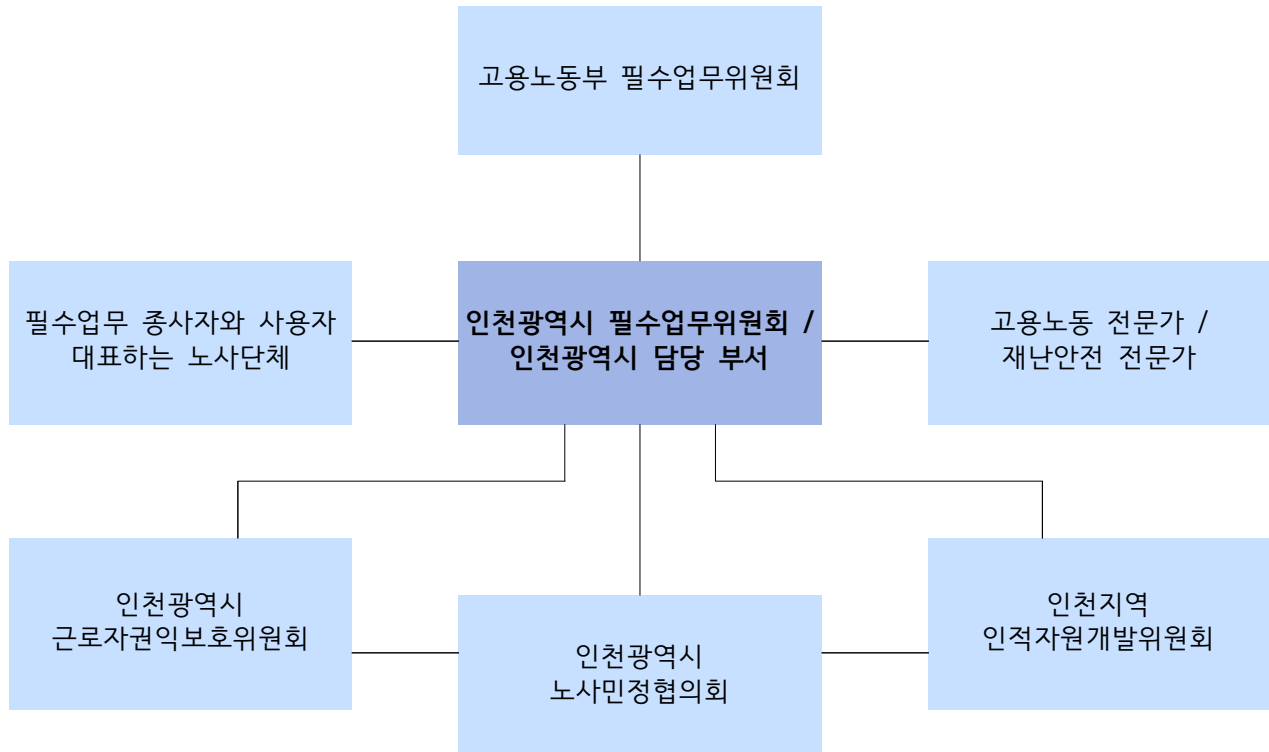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4대 투자방향 및 8대 중점투자 분야

4대 투자방향	8대 중점투자 분야
1. 미래 재난 선제적 대비	• 신종 감염병·가축전염병 방역 역량 확보 • 기후변화 위험에의 선제적 대처
2. 반복되는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3. 기반·생활 시설 안전도 제고	• 지역밀착형 생활SOC 안전 강화 •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및 디지털화
4.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 출처: 행정안전부(2022).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pp. 27.

- ❖ 다음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반드시 민관협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관련 노동자와 사용자 등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는 이미 법률과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다. 예컨대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필수업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필수업무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한편, 필수업무위원회는 지역단위 상급단체 노사 대표자를 포괄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그림 6-6>과 같이 더욱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첫째, 필수업무 관련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를 직접 대표하는 조직과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당성과 효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 둘째, 재난전문가와 노동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고용노동’이 중첩돼 형성된 것이고, 또한 공직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낯설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
- ❖ 셋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기존의 협치 기구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관계자가 될 때 정책 효과가 포괄하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그림 6-6>에서 제시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연결망에 참여하는 주체들 외에도 인천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위탁이나 공모 등의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 ❖ 제5장에 제시된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기관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민간 심리상담소, 인천노사발전재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사회적기업 등이 거론됐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망라하여 사업에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제안됐다.

<그림 6-6>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연결망 구축 방향



2) 정책과제와 세부 프로그램 예시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기본 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기획 및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과제(지원사업)와 그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와 프로그램 제안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의 내용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지역 노동 및 재난 정책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정책의 내용 등일 것이다.

<표 6-6>에서 볼 수 있듯 인천필수업무종사자 조례는 지원사업의 방향으로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조사·연구 △행정적·재정적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 제시한 필수업무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사업은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 △심리상담 센터 건설 및 심리치료 제공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이었다. 제5장에서 제시한 인천지역 노동 및 재난 전문가 면접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면접에 응한 전문가들은 △필수업무별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 △재난 상황에서 커질 수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 감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치유와 휴식공간 마련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속적 지원 등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사업들을 살펴봤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여기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검토해볼 수 있는 3대 정책 목표와 12개 정책과제, 그리고 정책과제에 포함되는 27개 세부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아래 나열된 항목 중 별표[*]가 있는 것은 당사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에서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꼽힌 것들이다.

㉠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

- (1)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활동 강화: ① 인천시민안전감독관 규모 확대 및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활동 강화(상하수도, 돌봄, 콜센터, 경비, 폐기물 처리 등) ② [고용노동부와 매칭] 필수업무 부문 소규모 사업장 유해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강화 ③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활성화
- (2)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우선 추진 사업]: ④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⑤ [신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또는 심리상담센터나 쉼터) 등을 통한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상담 활동 강화(돌봄, 콜센터, 공중보건의료 등) ⑥ [신설] 돌봄노동자 권리보호센터(또는 심리상담센터나 쉼터) 설치 등을 통한 권익/심리/직무 관련 다양한 상담 활동 강화
- (3)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우선 추진 사업]: ⑦ 법률로 '의무화'된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휴게시설 설치 컨설팅 및 지원(특히,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⑧ [신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쉼터 설치 및 권익/심리/직무 상담과 연계 ⑨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 확대 및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신설
- (4) 재난 시 작업자 안전보건 지침 및 관련 물품 공급[*우선 추진 사업]: ⑩ [신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필수업무 종사자가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별 안전보건 및 작업 지침 개발 및 보급 ⑪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 매뉴얼에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콘텐츠 마련 요청 ⑫ 재난 시 필수업무 분야별 안전보건 물품 공급 계획 수립

㉡ 필수업무 지속 수행 및 원활한 인력수급

- (5)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⑬ [타당성 검토] 공공부문 필수업무 서비스의 민간위탁 재공영화 또는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가능성 검토(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등) ⑭ [타당성 검토] 인천 생활임금 필수업무 종사자 확대 적용 가능성 검토 ⑮ 인천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돌봄, 공공보건의로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 ❖ (6) 생활안정/고용유지 위한 재정적 지원[*우선 추진 사업]: ⑯ 재난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⑰ 재난 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
- ❖ (7)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우선 추진 사업]: ⑱ [고용노동부와 매칭] 필수업무 부문 소기업 근로자와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종속된 자영자 등)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컨설팅 및 지원: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등의 사업 안내 및 추가 지원 검토 ⑲ [고용노동부와 매칭] 필수업무 부문 소기업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퇴직연금 등 가입 컨설팅 및 지원: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란우산공제제도 등 사업 안내 및 추가 지원 검토 ⑳ [보건복지부와 매칭] '인천형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제도' 개발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적용
- ❖ (8)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제공: ㉑ [타당성 검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필수업무 부문 추가 검토(다른 지역에 비해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 예컨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단독 주택 건설업 △공중 보건 의료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적용 가능성 검토) ㉒ [타당성 검토] 한국폴리텍대학·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등의 공동훈련센터에 필수업무 관련 교육훈련 과정 설치 가능성 검토

㉔ 당사자 이해대변 체계 및 정책거버넌스 구축

- ❖ (9)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우선 추진 사업]: ㉓ 필수업무 유관 업종별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 재난 시 안전관리 지침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맞춤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등
- ❖ (10)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지원: ㉔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자기 조직화 활동 지원 - 필수업무 부문의 취약노동자가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제회, 협회 등 대변조직을 조직할 때까지 인력 및 공간, 예산 등 지원
- ❖ (11)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확대: ㉕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노동단체가 운영 중인 상담소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활성화
- ❖ (12)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모사업 활성화: ㉖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지역인

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민관협치 기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보장'을 분과로 설치하거나 사업 의제화하도록 권고 ㉞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보장 관련 시민사회단체 위탁사업 및 시민 개인 대상 공모사업 활성화

- ❖ 이상의 정책과제와 세부 프로그램을 재난 발생의 맥락에 따라 배치하여 체계화하면 아래 <그림 6-7>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에서는 <그림 6-7>에 기초하여 12개 과제별로 △추진 주체와 협력체계 △제도적 근거 △추진 배경과 필요성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여 예시할 것이다.

<그림 6-7>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과제와 세부 프로그램 예시

구분	정책과제	세부 프로그램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시	재난 종료 후
가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	(1)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	-필수업무 부문 소규모 사업장 유해환경 개선 재정지원 -필수노동자 등 건강검진 재정지원	-인천시민안전감독관 투입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 강화	-인천시민안전감독관 투입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
	(2)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 상담 지원	-노동자 심리 치유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활성화 -감정/돌봄 등 맞춤형 상담 센터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트라우마 예방·치료 긴급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트라우마 치유 지속 지원
	(3)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컨설팅 및 지원 -이동노동자 등 쉼터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과 쉼터 안전보건 관리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과 쉼터 안전보건 관리 지원
	(4) 재난 시 안전보건 지침 및 물품 공급	-재난 시 안전관리·노동과정 매뉴얼 제작 및 물품 보급 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재난 시 안전보건 물품 지원 -위기 대응 매뉴얼 적용	
나 필수업무의 지속 수행 및 원활한 인력수급	(5)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지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필수업무 서비스 재직영화 또는 생활임금 적용 타당성 검토	-필수업무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활동 강화	
	(6) 생활안정/고용유지 위한 재정적 지원		-필수업무 고용유지·확대 재정지원 -고충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필수업무 고용유지·확대 재정지원 -고충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7)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필수업무 노무제공자 사회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컨설팅 및 보험료 지원	-필수업무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컨설팅 강화 및 보험료 지원 확대	-(가칭) 인천형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적용 검토
	(8)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제공	-인천지역 필수업무 관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개발 추진		

구분	정책과제	세부 프로그램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시	재난 종료 후
당사자 이해대변 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9)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필수업무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10)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자기 조직화 활동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자기 조직화 활동 지원
	(11)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확대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고충처리 긴급 지원 활동 강화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12)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모사업 활성화	-필수업무 보호·지원 정책을 민관협치 기관의 의제화 -필수업무 보호·지원 관련 사업 시민사회 위탁과 공모 활성화		-필수업무 보호·지원 정책을 민관협치 기관의 의제화 -필수업무 보호·지원 관련 사업 시민사회 위탁과 공모 활성화

가 - (1) 필수업무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 경력을 가진 시민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 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7조(재정지원) ②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③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큰 안전보건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일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난이 복합재난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적 피해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취약 상태에 놓여 있는 필수업무 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평상시에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재난 시에는 필수업무 부문 중 취약 상태 노동현장 산업안전보건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인천 필수업무 부문 산업안전보건 취약 노동현장 발굴 및 개선지원

- 평상시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등에 보고되는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필수업무 부문 산업안전보건 취약 노동현장 발굴 및 지자체와 정책적 연결 추진
-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 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산업안전보건 취약 상태 필수업무 기관/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함.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 또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기관은 필수업무 기관/기업 및 종사자를, 소규모 사업장 대상 '건강디딤돌', 필수노동자 등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과 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사업과 연결해주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필요하다면 대상을 확대하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 주요 대상: 필수업무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중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직종별 건강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환경미화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필요할 경우 인천필수업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
- 대상과 내용: (ㄱ)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이고 시행규칙상 해당 내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ㄴ) 시행규칙상 해당 내용이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청소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신규 사업장 측정 비용 전액 지원(사업장당 100만 원 이내), 기존 사업장 측정 비용 40%(사업장당 40만 원 이내).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별 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필수노동자 등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

- 목적: 법률상 건강진단 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 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
- 지원대상: (ㄱ) 환경미화원(30인 미만 사업장) (ㄴ)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배송기사·화물차주 (ㄷ) 건설기계운전자
- 지원금액: 전체 건강진단 금액의 80%(1·2차 항목)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재정지원, 2022년 12월 검색.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industrialaccidenta.do>)

■ [재난 발생 시기] 필수업무 종사자가 일하는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집중 점검 활동

- 재난이 발생하면 인천필수업무위원회는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범위

와 보호·지원 대상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함. 이렇게 지정된 필수업무가 이뤄지는 노동현장 중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안전 취약 상태에 있는 곳에 ‘인천시민안전감독관’(인천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

- 인천광역시는 재난 발생 시기에 ‘인천시민안전감독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인천시민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안전감독관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재해 및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재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무 부문의 노동현장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컨설팅 및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 발굴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과 필수노동자 매칭 활동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 필수노동자 등 직종별 건강검진 컨설팅 및 지원	·컨설팅사업 위수탁계약				
- 인천시민안전감독관 활동 강화	·협업체 구축 ·재난안전교육 등 추진	·시민안전감독 관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추진	·시민안전감독 관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추진	·시민안전감독 관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추진	·시민안전감독 관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추진

가 - (2)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 상담 지원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지역 내 심리 치유 관련 전문가와 상담기관/단체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등 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등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7조(재정지원) ②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③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등 ④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필수업무 종사자는 평상시 불안정한 고용이나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직무 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피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부작용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인천광역시가 필수업무 종사자 등 지역 내 취약조건 노동자에게 평상시에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정신상담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와 그 직후에는 '긴급 상담 지원'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소진과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인천 노동자 심리 치유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인천광역시가 주도하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직업트라우마 센터, 노동권익 관련 상담기관, 민간 심리상담소 등을 연결하여 필수노동자 등 취약조건 노동자에게 심리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정책연결망을 구축함. 또한, 필수업무 중 특정 분야(예컨대, '돌봄')에 초점을 두는 기관이나³⁰⁾ 필수업무 종사자와 겹치는 취약 노동자 범주(예컨대, '감정노동')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관을³¹⁾ 신설하고, 이를 심리 치유 연결망에 포괄하여 심리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³²⁾
- 공모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인천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들을 선정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교육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이 될 것임. 아래 안산시 사업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대상: 필수업무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 감정노동자 부문과 돌봄노동자 부문을 포괄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안산시 2022년 <감정·필수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 목적: 일상적인 폭언·폭행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지원
- 운영단체: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 ※ 운영기관이 인권, 노동, 치유, 심리 등 전문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4곳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 (예시) 심리치유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1 심리상담, 아로마테라피, 원예테라피, 우울증 척도조사, 성격유형검사, 미술상담 등

■ [재난 발생 시기] 필수업무 종사자 트라우마 예방·치료 긴급 지원. / [재난 종료 직후] 소진 또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³³⁾

30)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참조

31)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참조

32) 예컨대 안산시는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가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감정·필수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출처: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www01619)

33)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 상황마다 '심리위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19 통합심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경험을 인천시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재난 발생 시에는 다양한 심리 치유 기관이 협력하여 '(가칭)인천광역시통합심리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대응 과정에서 충격을 겪은 이들을 위해서 트라우마 예방·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긴급 지원하도록 함.
- 재난 종료 후에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일반인 등을 지속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수업무 종사 과정에서 소진된 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전체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노동자 심리 치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존 상담기관 연결망 구축 ·통합심리지원단 설치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대상 센터 설치·운영	·심리 치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통합심리지원단 안정 운영	·심리 치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통합심리지원단 안정 운영	·심리 치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통합심리지원단 안정 운영
- 필수업무 종사자 등 노동자 심리 치유 및 상담 서비스 일상적 제공	·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노동자 상담프로그램 개발	·심리상담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심리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가 - (3) 필수업무 종사자 쉼터와 휴게시설 설치 또는 확대

□ 추진 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 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지역 내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 기관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7조(생활물류 쉼터)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등 ③ (가칭) 「인천광역시 생활물류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미제정]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된 법제도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식권’을 강조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과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 후자의 7개 직종은 일반적으로 필수

업무 종사자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2021년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물류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한 필수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인천은 물류 중심임에도 이 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상의 법제도적 맥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를테면 법제도적 조건을 구비하고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컨설팅 및 지원, 생활물류를 포함한 업종별 맞춤형 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럴 때 재난 시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가칭)인천광역시 생활물류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집행

“인천도 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 | 인천도 택배기사나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인천은 국제물류와 생활물류가 공존하는 도시로, 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략)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된 후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략)

이동노동자 쉼터는 국내 27개소가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63%가 설치돼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으나 인천시가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를 수립해 건립을 계획 중이다.

(중략)

- 『인천투데이』 2022년 09월 22일자.

❖ [재난 발생 이전]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컨설팅 및 재정지원

- 인천광역시가 공모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법제도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들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요 대상: 필수업무 부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 [재난 발생 시기]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쉼터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

- 재난 발생 시에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 및 쉼터에 ‘인천시민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점검토록 함. 이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 쉼터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컨설팅 사업 위수탁계약 ·사업체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사업체 컨설팅 및 재정지원 활동 시작	·사업체 컨설팅 및 재정지원 활동 확대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 인천 생활물류 쉼터 설치 및 운영	·인천 생활물류 쉼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생활물류 쉼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운영기관 선정	·운영관리 위수탁계약 ·생활물류 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물류 쉼터 확대 설치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운영

가 - (4)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재난 시 안전보건 지침 및 물품 공급

□ 추진 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 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등 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②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③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제4장 당사자 설문조사와 제5장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재난 상황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노동과정 지침의 부재로 상당한 혼란을 겪었음. 또한, 방역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제때 보급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때 큰 차질을 빚기도 했음.
- 이러한 맥락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재난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노동과정 매뉴얼, 그리고 안전보건 물품 및 자원 공급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그에 따라서 필수업무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한편, 재난안전법의 “제5장 재난의 대비”에는 △안전보건 자원의 비축과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조례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 관련 내용이 있음. 그런데 실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맥락과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이 구비하고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상황과 조건을 포괄하도록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필수업무 종사자가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별 안전보건 및 작업 지침 개발 및 보급
 - 재난안전법 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⑨항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인천지역의 맥락적 특성과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맞춤형으로 수정하여 보급할 수 있을 것임.
 - 실제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는 “돌봄시설별 방역 대응 매뉴얼 마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이러한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활용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안전보건 매뉴얼과 물품 공급 계획 개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대상: 공공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관 등
- [재난 발생 시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매뉴얼에 따른 안전보건 물품 공급 및 업무수행의 관리·감독
 -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 노동현장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안전보건 물품 공급 계획 수립과 집행	·중앙정부 차원 매뉴얼 등 제작 보급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맞춤형 매뉴얼 개발	·위기 대응 매뉴얼 보급과 그에 기초한 재난안전관리 교육 추진	·위기 대응 매뉴얼 및 물품 공급 계획 평가와 개선 추진	·대응 매뉴얼 및 물품 공급 계획 평가와 개선 추진

나 - (5)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지원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지역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근로기준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③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국민 신체·생명의 보호와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 평상시에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도 필수업무의 지속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과 기초고용질서 확립 활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공공부문 민간위탁 필수업무서비스의 재직영화 가능성 검토 및 종사자에 대한 인천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 실태조사와 정책평가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으로 위탁한 필수업무서비스 중에서 재직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재직영화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과 연계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와 정책평가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생활임금 적용이 어렵더라도 이들의 임금 및 처우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주요 대상: 필수업무 중 인천지역 종사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예측되는 부문. 예컨대, △생활용수 공급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 **[재난 발생 이전]** 양질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일자리 창출

- 제3장에서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통해 살펴봤듯, 인천지역은 필수업무 종사자 중에서 특히 돌봄부문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노동자의 비중이 작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커서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됨.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과 함께, 복지 신가치 창출”을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돌봄 등 인천의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부문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맥락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원 투입 등 전략적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됐으므로, 이 부문에 대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대상: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 **[재난 발생 시기]** 필수업무 노동현장의 근로감독 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활동

-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노동현장에서 사업장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점검하고 근로감독

을 실시하도록 함.

- 인천광역시는 마을노무사 등을 동원하여 재난 발생 시 고용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공공부문 민간위탁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재직영화 및 생활임금 적용 타당성 검토	·예산투입-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지원정책 대상 확대 및 수준 상향	·실태조사 및 정책평가 후 개선 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평가 후 개선 운영
- 인천지역 돌봄/가사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양질 돌봄/가사 노동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집행	·양질 돌봄/가사 노동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집행	·실태조사 및 정책평가 후 개선 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평가 후 개선 운영

나 - (6) 필수업무 종사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또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지역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등 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③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조정 지원) 등 ④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7조(재정지원) ②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③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④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일함. 그러다 보면 일부는 재난 피해를 받아 한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업무량이 많아져 지나치게 과로할 수 있음.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용 및 생활 불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이를테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력 수요 변동에 따라, 버스 등의 부문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늘렸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을 추진했음. 또한, 감염위험과 저소득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재가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계지원'을 추진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시기 / 재난 종료 직후] 재난 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부문의 고용창출, 감하는 부문의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 재난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필수업무부문에서 노동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도록 함. 국민의 신체 및 생명 보호나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임에도 일시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 부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존 종사자들이 과로하고 있는 부문에는 고용창출지원금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제3장에서 살펴봤듯,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폐기물 처리 △경비 △운송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도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 필수업무로 고려할 수 있음. 이 중에서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폐수 처리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소화물 운송업 등이고, 상대적으로 인천에 종사자 비중이 낮은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단독 주택 건설업 △공중 보건 의료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임.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 부문 중에서 노동력 수요가 급격히 변동하는 노동현장

❖ [재난 발생 시기 / 재난 종료 직후]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

- 재난 피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됐거나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생활지원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음.³⁴⁾
- 상황에 따라서는 재난 종료 이후에도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긴급 용자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³⁵⁾
- 주요 대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필수업무 종사자

3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년 2월23일),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용자 온라인 접수 시작”

나 - (7) 필수업무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지역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고용보험법」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등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등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50조(부가급여)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등 ③ (가칭)「인천광역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조례」[*미제정]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일함. 그런데 이 중 일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 자영업자 등의 신분이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용받기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위험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도울 수 있음.
-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었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노무제공자”로까지 확대됐음.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³⁶⁾

3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8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이러한 인천광역시가 제도 변화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노무제공자의 사회안전망 적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단,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일하는 시민” 또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권리보장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일하는 시민 또는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성남시는 2020년 전국에서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음. 이 조례는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³⁷⁾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일하는 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취약계층과 취약일터 사업 주의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건설일용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에서도 유사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럴 때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음.

■ [재난 발생 이전] 취약계층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홍보 및 재정지원

- 중앙정부에서는 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있는 필수업무 부문의 취약계층 근로자와 사용자, 노무제공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하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강원, 경남, 충청,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경우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 부문의 △생활용수 공급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공항·항만’ 부문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보건·의료’ 부문의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돌봄’ 부문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콜센터’ 부문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비’ 부문의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을

37)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것임.

- 주요 대상: 필수업무 부문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
- 대상: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월평균 보수 210 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 지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폐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
- 대상: 도내 1인 자영업자
-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 산재보험료 일부 3년간 지원(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전 등급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급

❖ [재난 종료 직후] 인천형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하여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만약 인천지역에만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클 경우 인천광역시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천형 상병수당제도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요구됨.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인천 일하는 사람 혹은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사전 실태조사 와 연구 ·조례 제정 추진	·조례 제정 및 관련 시범사업 집행	·조례 제정 및 관련 사업 확대 추진	·사업평가와 개 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 선 운영
- 필수업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대상 사회보험 가입 독려와 재정지원	·중앙정부의 두 루누리 사회보 험료 지원 / 1 인 자영업자 고 용·산재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재정지원 추진	·새로운 조례에 기초한 사업으 로 통합	·사업평가와 개 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 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 선 운영

나 - (8) 필수업무 종사자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제공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한국폴리텍대학·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공동훈련센터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③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등 ④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③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④ (가칭)「인천광역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례」[*미제정]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재난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일하고 원활하게 인력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관련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있어야 함. 한편, 최근에는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역사회의 맥락과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침으로 함.
-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역 고용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에 기초하고, 기존의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절한 규모와 숙련을 갖춘 필수업무 종사자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필수업무 관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검토

-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필수업무 부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사업을 구성하도록 함.
- 이 경우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필수업무 관련 업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단독 주택 건설업 △공중보건 의료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임.
- 특히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과 보건의료직,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운전·운송직 등은 양성훈련이나 향상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임.³⁸⁾ 또한 이는 앞서 살펴봤듯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한 필수업무 부문 직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사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필수업무 부문 중 지속적으로 수요가 큰 업종이나 직종이 있다면 이를 한국폴리텍 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의 공동훈련센터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대상: 돌봄직, 보건의료직,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운전·운송직 필수업무 종사자

■ [재난 발생 이전] 일자리 또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본 조례 제정

- 앞에서 언급한 필수업무 관련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임. 그런데 인천광역시에는 일자리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본 조례가 없음.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족함.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일자리 혹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본 조례 제정	·사전실태조사와 연구·조례 제정 추진	·조례 제정 및 관련 시범사업 집행	·조례 제정 및 관련 사업 확대 추진	·사업평가와 개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선 운영
- 필수업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추진	·사업평가와 개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선 운영	·사업평가와 개선 운영

38) 출처: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ncheonhrd.or.kr/ebook/stats2021/training.asp>)

다 - (9)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9조(실태조사), 제11조(지원사업)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법제도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도록 정하고 있음.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필수업무종사자조례는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앞에서 살펴봤듯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항구와 공항 등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짐. 다른 부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항구와 공항의 종사자 실태에 대한 통계를 구축한다면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인천 항만·공항 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통계 구축 가능성 검토 등
 - 인천광역시에 있는 항구와 공항의 산업 및 종사자 실태를 국가통계로 구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함. 이와 관련해 ‘부산항

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가통계 <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 '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는 부산항 관련 해운항만산업 사업체들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책 맞춤형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2017년과 2018년에 시범조사를 시작하여, 201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음. 2022년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결과 자료가 공개되고 있음.
- 조사항목은 일반 항목(12개), 사업분야(3개), 종사자 현황(7개), 사업 현황(7개), 기술혁신 현황(2개), 정책수요 등 기타 설문 문항(7개) 등 총 38개임.
- 일반 현황(6개 항목): ①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사업체 현황 ② 사업체 형태별 기업 수 ③ 지역별 기업 수 ④ 사업체 규모별 기업 수 ⑤ 대표자 성별 ⑥ 대표자 경영형태
- 종사자 현황(6개 항목): ① 종사자 현황 ② 성별 종사자 수 ③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④ 업무별 종사자 수 ⑤ 연령별 종사자 수 ⑥ 이직 및 고용 현황
- 사업 현황(6개 항목): ① 매출액 및 영업이익 ② 매출대상별 매출 현황 ③ 항만별 매출 현황 ④ 경영실적 개선 정도(전년 대비) ⑤ 경영실적 변화 이유(전년 대비) ⑥ 경영실적 평가(금년대비 내년 예산)
- 기술혁신 현황(2개 항목):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인력 보유 현황 ② 산업재산권 현황(총계)
- 부산항 이용현황(7개 항목): ① 매출 증대 방안 ② 경영상 어려움 ③ 환경 관련 필요·불필요 정책 ④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⑤ 부산항 이용 시 불편사항 ⑥ 부산항 개선사항 ⑦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 지원
- 부산/창원 비교분석: 27개 항목에 대한 부산/창원 간 비교 결과

- 이 외에도 재난 시 안전관리 지침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맞춤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 [재난 종료 직후] 재난 피해 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 효과성 평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인천 항만·공항 산업 및 종사자 실태 통계 구축	·사전 실태조사와 연구·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국가통계화 추진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 필수업무 관련 지속적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다 - (10) 필수업무 관련 노사 당사자의 집단화와 조직화 지원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노사발전재단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등 ③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고, 또한 상당수는 노동법제도의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있는 노무제공자의 신분임. 그로 인해 정책서비스의 전달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집단화 조직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가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자조모임, 직종협회 등으로 스스로 집단화 및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면 자원 투입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노동조합 또는 자조모임 결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

- 인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 등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법률 및 교섭 절차 등을 동행하도록 지원함.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 장소나 사무실,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도 인천노동권익센터 등이 지역이나 업종별로 활동계획서 등을 받는 공모를 추진하여 자조모임을 하길 원하는 취약한 조건의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도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자조모임은 협동조합, 공제회, 협회 등 대변조직으로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들에게 자원과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필수업무 부문에서 다양한 모임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 주요 대상: 필수업무 부문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공제조합 등 이익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형, 지역형 구분하여 총 5개 사업 지원
- 신청 대상: 총연합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경기도 지역 지부, 지회, 분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단체, 권역별 활동을 위해 협업형태(컨소시엄 등) 참가 가능
- 제외 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인 단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이미 중앙 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지원 범위: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사업 모집 분야: 신규 자조모임 육성 지원(업종형, 지역형) 2~3개, 조직화 성장 지원 2~3개

□ 연차별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전 실태조사 ·연구 ·시범사업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 자조 모임 공모 지원	·사전 실태조사 ·연구 ·시범사업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평가와 개선

다 - (11)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확대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 인천노동조합상급단체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추진 배경과 필요성

-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변동하여 필수업무 종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고충을 겪게 될 수 있음. 노동권익 상담과 고충처리 채널을 확대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권익 관련 고충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노동권익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이 구축되어 활발히 작동할 필요가 있음. 평상시에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 인천노동권익센터와 다양한 상담소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 확대 및 필수업무 관련 활동 강화
 - 인천노동권익센터 및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노동단체가 운영 중인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인천광역시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여 노동권익센터와 상담소 등이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인천노동권익센터는 2022년 9월 개소하여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미 만들어져 활동 중인 다른 시도의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노동권 교육, 마을노무사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노동자 쉼터 운영, 시민참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다른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동을 바탕으로 2023년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도	위탁기간	수탁기관	개소	구성	2020년 예산 (단위:백만원)	기타
서울	3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2.	센터장, 정책기획국, 사업조직국, 쉼터사업팀 - 총 23명	4,140	
대전	3년	민주노총 대전본부	2019. 1.	센터장, 사무국 1, 감정팀 2, 노무사 1, 정책국 1, 청소년노동 1 - 총 7명	665	2015년 비정규센터에서 2019년에 노동권익센터로 명칭변경.
경기		직영 노동국-노동정책과-노동권익센터	2019. 3.	센터장, 공인노무사, 주무관 7명 - 총 9명	1,265 (노동권익센터팀)	
충남	3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2019. 9.	센터장, 정책기획 2, 운영지원 1, 법률지원 3 - 총 7명	600	광역-거점-자치구 센터 체계
전남	3년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0. 1.	센터장, 사무국장, 정책기획팀, 노동법률팀 으로 구성 - 총 9명	550	순천에 동부사무소 운영.
부산	3년	민주노총 부산본부	2020. 11.	센터장, 정책기획팀, 권익구제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 - 총 13명	1,000 (1년 기준)	
전북	3년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2020. 8.	센터장(비상근), 노동권익지원팀 2, 연구조사팀 1, 사무국 1, 대외협력팀 1 - 총 6명(상근 5)	350	전주시 위탁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4명) 따로 있음. 정읍, 익산, 군산도 추진.
울산	-	(재)울산일자리재단	2020. 11.	센터장, 노동법률상담, 노동교육, 노동심리상담, 업무지원 등 구성 - 총 5명	300	

❖ [재난 발생 시기] 필수업무 노동현장에 (가칭)노동권익지킴이 투입

- 필수업무 노동현장에 (가칭)시민참여형 노동권익지킴이를 투입하여 근로기준과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 절차를 밟도록 지원함.
- 주요 대상: 재난 발생 시 인천필수업무위원회가 지정한 필수업무 노동현장

다 - (12) 필수업무 보호·지원 정책 민관협치 의제화 및 공모사업 활성화

□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인천광역시청 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부서 등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 제도적 근거

- 법률: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조례: 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1조(지원사업) 등 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 추진 배경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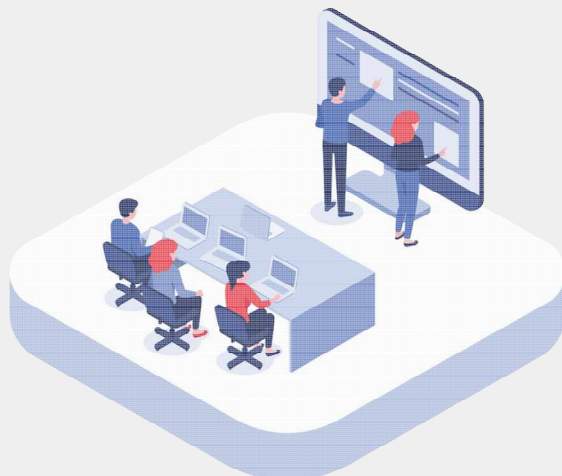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2020년 12월 처음으로 추진했음. 따라서 고용노동정책에 어느 정도 익숙한 전문가나 관계자에게도 아직 생소한 상황임.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경험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과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필수업무 및 종사자 관련한 공론 과정이 자연스럽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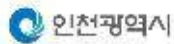
□ 세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 [재난 발생 이전] 각종 위원회에 ‘필수업무 및 종사자’ 분과 설치 또는 의제 설정 등 권고
 - 인천광역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민관협치 기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권익보장’을 분과로 설치하거나 사업 의제화하도록 권고함.
- [재난 발생 이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위탁 및 공모 활성화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중 상당수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민에게 개방적으로 공모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부록. 설문지





ID

1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 사업체, 기관 및 시설용 -

안녕하십니까?

(주)서던포스트에서는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처우, 고용형태, 업무수행방식, 작업 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 결과는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조사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조사 문의처	070-7586-0130
조사 수행기관	(주)서던포스트	조사 담당자	070-7586-0111

※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응답 번호에 O 혹은 ✓ 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주관식으로 기재할 때는 단위(만원)와 기간(연간, 월)에 유의해 주세요.

※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Q

일반 현황

(1) 사업체명				
(2) 지역	① 중구 ⑤ 남동구 ⑨ 강화군	② 동구 ⑥ 부평구 ⑩ 울진군	③ 미추홀구 ⑦ 계양구	④ 연수구 ⑧ 서구
(3) 종사자 규모	① 1~9명 ② 10~49명 ③ 50명 이상			
(4) 사업체 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회사법인 ③ 의료법인 ④ 사회복지법인 ⑤ 종교법인 ⑥ 학교법인 ⑦ 국립/지방자치단체 ⑧ 협동조합 ⑨ 비법인 민간단체 ⑩ 그 외 비영리법인 ⑪ 기타()			
(5) 설립연월	년 월			
(6) 자본금 규모	① 3천만원 미만 ②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 1억원 미만 ④ 1억원 ~ 5억원 미만 ⑤ 5억원 이상 ⑥ 자본금 없음			

I 종사자 현황

Q1-1

다음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종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귀사의 직종별 종사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직종	종사자 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1) 운송 사무원(도로, 수상, 항공)	명	명	명
2)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명	명	명
3) 항공기 객실 승무원	명	명	명
4)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명	명	명
5) 항공기 정비원	명	명	명
6) 선박 정비원	명	명	명
7)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크레인, 지게차 등)	명	명	명
8)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명	명	명
9) 경량 철골공	명	명	명
10) 철근공	명	명	명
11) 콘크리트공	명	명	명
12) 건축 석공	명	명	명
13) 건축 목공	명	명	명
14)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보도블럭, 석재 설치원)	명	명	명
15)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보도블럭, 석재 설치원)	명	명	명
16) 건설 배관공(상하수도,가스)	명	명	명
17) 공업 배관공(플랜트,선박,항공기)	명	명	명
18) 기타 배관공	명	명	명
19)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명	명	명
20)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명	명	명
21)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	명	명	명
22)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명	명	명
23)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명	명	명
24)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명	명	명
총 합 계	명	명	명

Q1-2

귀사 내 재난상황 시 필수업무 직종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위에 제시된 필수업무 직종을 참고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 취득 종사자 수
(1) 장비 운영, 운전 관련 자격증 취득 종사자	명
(2) 기술 활용 자격증 취득 종사자	명

II

Q2-1

- ⑤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다

Q2-2

____일 ____교대 근무 (근로자 1일 기준 ____ 시간 근무)

Q2-3

- ② 아니다

Q2-3-1

- ⑤ 기타()

III

Q3

	시설 수
(1) 차량 등 중장비	개
(3) 의료장비	개
(4) 기타 필수업무 관련 장비	개

VII 필수업무 및 지원제도의 필요성

Q4

아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귀사가 현재하고 있는 필수업무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연 재난	(1) 기후 : 한파, 폭염, 가뭄 등	①	②	③	④	⑤
	(2) 강수 :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질 : 지진, 산사태, 화산 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 재난	(4) 사고 :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교통 등	①	②	③	④	⑤
	(5) 질병 : 감염병(코로나19등 팬더믹)	①	②	③	④	⑤
	(6) 오염 : 황사, 미세먼지, 환경오염	①	②	③	④	⑤

Q5

만약 아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귀사가 현재 하고 있는 필수업무가 중단된다면,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관 없다	다소 상관 없다	보통 이다	약간 위험 하다	매우 위험 하다
자연 재난	(1) 기후 : 한파, 폭염, 가뭄 등	①	②	③	④	⑤
	(2) 강수 :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질 : 지진, 산사태, 화산 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 재난	(4) 사고 :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교통 등	①	②	③	④	⑤
	(5) 질병 : 감염병(코로나19등 팬더믹)	①	②	③	④	⑤
	(6) 오염 : 황사, 미세먼지, 환경오염	①	②	③	④	⑤

Q6

만약 아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필수업무가 중단된다면, 사회기능 유지(의식주, 쾌적한 거주 환경 등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관 없다	다소 상관 없다	보통 이다	약간 불편 하다	매우 불편 하다
자연 재난	(1) 기후 : 한파, 폭염, 가뭄 등	①	②	③	④	⑤
	(2) 강수 :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질 : 지진, 산사태, 화산 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 재난	(4) 사고 :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교통 등	①	②	③	④	⑤
	(5) 질병 : 감염병(코로나19등 팬더믹)	①	②	③	④	⑤
	(6) 오염 : 황사, 미세먼지, 환경오염	①	②	③	④	⑤

Q7

재난 발생 시에도 귀하의 노동(필수업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해당 없음
재난 대응 지원	(1) 재난대응 물품 지원(방역물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위생시설 확대(휴게/샤워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건강진단·관리 확대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4) 재난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시 대처방 등 구비)	①	②	③	④	⑤	⑥
	(5) 업무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필수업무 종사를 위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소득 보전	(6)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임금 보전	①	②	③	④	⑤	⑥
	(7) 위험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8) 재난지원금·생계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9) 소득 및 방역의 추가업무 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10)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노동 조건	(11) (소득보전 조건의)한시적 노동시간 감축	①	②	③	④	⑤	⑥
	(12)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13)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14) 고용보장 및 고용안정(정규직 전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5) 공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의 직영화	①	②	③	④	⑤	⑥
	(16) 무료 산재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인력 복지	(17) 대체인력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18) 상시적 인력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19) 심리상담센터 확충 및 심리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0)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21) 노동인권 신장	①	②	③	④	⑤	⑥
	(22) 노사공동 지정정비소 및 휴게소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D				
----	--	--	--	--

1	필수노동자 근무실태 조사 - 종사자용 -
---	---

안녕하십니까?

(주)서던포스트에서는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인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처우, 고용형태, 업무수행방식, 작업 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및 지원 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 결과는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조사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조사 문의처	070-7586-0130
조사 수행기관	(주)서던포스트	조사 담당자	070-7586-0111

※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응답 번호에 O 혹은 ✓ 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주관식으로 기재할 때는 단위(만원)와 기간(연간, 월)에 유의해 주세요.

※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기본사항

SQ1. 연령	① 20대 ⑤ 60대	② 30대 ⑥ 70대 이상	③ 40대	④ 50대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⑤ 시간제(파트타임) ⑨ 플랫폼	② 무기계약직 ⑥ 파견·하청·용역 ⑩ 기타()	③ 기간제(계약직) ⑦ 특수고용	④ 일용근로 ⑧ 프리랜서 등
SQ4. 고용 방식	① 직접 고용(회사와 직접 계약)	② 간접 고용(제3자와 계약)		
SQ5. 근무형태	① 전일제 통상근무	② 교대제·부정기 근무		
SQ5-1. 근무형태 (SQ5, ②응답자만)	① 비교대 주간근무 ④ 2교대 근무	② 비교대 야간근무 ⑤ 3교대 근무	③ 24시간 격일근무 ⑥ 불규칙	
SQ6. 회사 지역	① 중구 ⑤ 남동구 ⑨ 강화군	② 동구 ⑥ 부평구 ⑩ 울진군	③ 미추홀구 ⑦ 계양구	④ 연수구 ⑧ 서구
SQ7. 회사 직원 수	① 1~9명	② 10~49명	③ 50명 이상	

Q1

다음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종들입니다.

귀하의 직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해당하는 직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직종	해당	미해당
1) 운송 사무원(도로, 수상, 항공)	①	②
2) 시설 및 특수 경비원	①	②
3) 항공기 객실 승무원	①	②
4)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①	②
5) 항공기 정비원	①	②
6) 선박 정비원	①	②
7)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크레인, 지게차 등)	①	②
8)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①	②
9) 경량 철골공	①	②
10) 철근공	①	②
11) 콘크리트공	①	②
12) 건축 석공	①	②
13) 건축 목공	①	②
14)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보도블럭, 석재 설치원)	①	②
15)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보도블럭, 석재 설치원)	①	②
16) 건설 배관공(상하수도,가스)	①	②
17) 공업 배관공(플랜트,선박,항공기)	①	②
18) 기타 배관공	①	②
19)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①	②
20)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①	②
21)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	①	②
22)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①	②
23)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①	②
24)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①	②

Q2 귀하의 업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위에서 응답한 직종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총 업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 현재 직장 업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

Q3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적용·가입되어 있습니까?

	직장 내 가입여부			지역가입 여부		
	가입됨	가입 안됨	모름	가입됨	가입 안됨	모름
(1) 국민연금	①	②	③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③	①	②	③
(3) 고용보험	①	②	③			
(4) 산재보험	①	②	③			

Q4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없음	모름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①	②	③
(2) 유급연차휴가	①	②	③
(3) 시간외 수당	①	②	③
(4) 상여금	①	②	③
(5) 교육훈련	①	②	③

Q5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노동조합이 없음

Q5 귀하는 평소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가정 변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충을 대변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근로조건

Q6 귀하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 ① 예 → (Q6-1 이동) ② 아니오

Q6-1 Q6 ① 번에 응답하신분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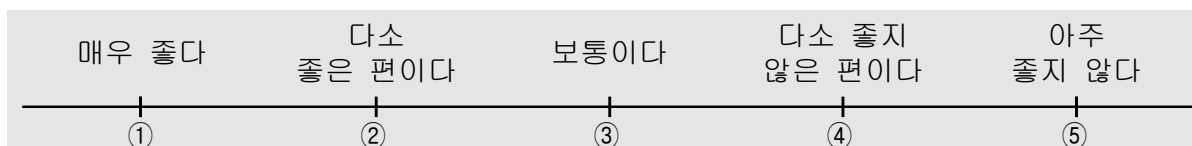
Q6-2 Q6 ① 번에 응답하신분만 답변해 주세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갱신한 적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Q6-3 귀하의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②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 ③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④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⑤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⑥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 ⑦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⑧ 9천만원 이상 |

Q6-4 평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Q6-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2~3년간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소화불량 | ② 두통 | ③ 기관지 질환 |
| ④ 고혈압 | ⑤ 당뇨 | ⑥ 방광염 |
| ⑦ 치질 | ⑧ 만성 피로 | ⑨ 수면장애 |
| ⑩ 시력장애 | ⑪ 전립선염 | ⑫ 성욕 감퇴 |
| ⑬ 허리통증 | ⑭ 어깨·목·팔 등의 근육통 | |
| ⑮ 엉덩이·다리·무릎·팔 등의 근육통 | ⑯ 기타() | |
| ⑰ 발생한 질병 없음 | | |

Q6-6 귀하의 평균 근무일과 노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주당 근로일 수	주 () 일
2. 주당 초과 근로 시간	주 () 시간
3. 주당 초과 근로 인정 시간	주 () 시간
4. 근무 중 평균 식사 시간	일 평균 () 분
5. 식사시간 외 휴게 시간	일 평균 () 시간

- 계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외근로/휴일근로) 시간은 제외
- 실제 근로시간 : 작업준비 시간 등 사실상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을 포함
- 휴게시간 : 휴식시간, 식사시간 및 개인 용무 등에 사용하는 시간

Q6-7 귀하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 ① 연차(시간외) 근로수당 | ② 야간근로수당 | ③ 휴일근로수당 |
| ④ 연차수당 | ⑤ 주휴수당 | ⑥ 체력단련수당 |
| ⑦ 직책/직급수당 | ⑧ 근속수당 | ⑨ 운전수당 |
| ⑩ 위험수당 | ⑪ 경조사수당 | ⑫ 여름휴가수당 |
| ⑬ 병가(상병휴가) | ⑭ 명절수당 | ⑮ 교통비지원 |
| ⑯ 식대지원 | ⑰ 가족수당 | ⑱ 법정퇴직금 |
| ⑲ 기타() | | |

Q7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있습니까? 휴게공간이 있다면 자유로운 이용 여부 및 1주일에 몇 회 정도 사용하십니까?

A7. 휴게공간 여부	A7-1. 휴게공간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A7-2. 휴게공간 사용 횟수
① 있음 (▶A7-1로)	① 자유롭게 이용 가능	주 평균 _____ 회
② 없음 (▶A8로)	②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움	

Q8 귀하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전 금액 기준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8. 평균 임금 수준(세전/월) : 월 ()만원

Q9 귀하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9. 사회보험 적용 여부	A9-1. 적용 중인 사회보험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① 적용 (▶A9-1로) ② 미적용 (▶A10으로)	① 국민연금(직장가입)	② 건강보험(직장가입)
③ 잘 모름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Q9 귀하사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모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명절 상여금 | ②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 ③ 교통비 지원 |
| ④ 급식 보조비 | ⑤ 주택자금 금융지원 | ⑥ 자녀 학자금 지원 |
| ⑦ 자기계발비 | ⑧ 의료비 지원 | ⑨ 각종 경조사비 |
| ⑩ 휴가비 | ⑪ 연·월차 휴가 | ⑫ 기타() |

Q10 귀하가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됩니까?

- ① 대체인력 투입한다 ② 대체인력 투입하지 않는다 ③ 모른다

Q11 귀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3인 1조 등 조를 짜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Q11-1 이동) ② 아니오

Q11-1 Q11 ① 번에 응답하신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작업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인 1조 ② 2인 1조 ③ 4인 1조 ④ 5인 이상 ⑤ 기타()

Q12 귀하의 사업장에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 ① 정해져 있다(만 세) ② 정해지지 않았다 ③ 모른다

III 애로사항

Q13 현재 귀하는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임금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승진, 승급제도	①	②	③	④	⑤
(4) 장시간 근무	①	②	③	④	⑤
(5) 야간 근무	①	②	③	④	⑤
(6) 부족한 휴식/휴가	①	②	③	④	⑤
(7) 부족한 인력	①	②	③	④	⑤

Q14 현재 귀하는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과도한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2) 높은 업무 강도	①	②	③	④	⑤
(3)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고객 또는 주민 응대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신육체피로	①	②	③	④	⑤

Q15 현재 귀하는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고 위험	①	②	③	④	⑤
(2) 안전시설 미비	①	②	③	④	⑤
(3)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①	②	③	④	⑤
(4) 작업도구 및 안전장구류 수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Q16 현재 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낮은 사회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2) 직장 내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IV 작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관리

※ 아래의 각 설문은 귀하의 고객폭력 및 직장 내 폭력경험의 수준과 직장 내 보호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위해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Q17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수행 상황을 토대로 아래의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업무 수행 시 직장 상사, 동료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업무 수행 시 직장 상사, 동료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업무 수행 시 직장 상사, 동료에게 위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업무 수행 시 직장 상사, 동료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업무 수행 시 직장 상사, 동료에게(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직장 내에 고객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2) 직장 내에 동료/상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3) 직장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Q18

귀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가 격 변 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Q17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과 관련하여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일은 위험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①	②	③	④
4)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5) 직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강요나 압박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6)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한 권한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상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의 동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10)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 등 정책결정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1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6) 업무수행과정에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의 직장의 경영방침과 구성원들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18) 나의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급여/수입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19) 나의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의 일과 삶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의 일은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Q18

재난 발생 시에도 귀하의 노동(필수업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해당 없음
재난 대응 지원	(1) 재난대응 물품 지원(방역물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위생시설 확대(휴게/샤워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건강진단·관리 확대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4) 재난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시 대처방 등 구비)	①	②	③	④	⑤	⑥
	(5) 업무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필수업무 종사를 위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소득 보전	(6)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임금 보전	①	②	③	④	⑤	⑥
	(7) 위험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8) 재난지원금·생계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9) 소득 및 방역의 추가업무 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⑥
	(10)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노동 조건	(11) (소득보전 조건외)한시적 노동시간 감축	①	②	③	④	⑤	⑥
	(12)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13)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14) 고용보장 및 고용안정(정규직 전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5) 공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의 직영화	①	②	③	④	⑤	⑥
	(16) 무료 산재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인력 복지	(17) 대체인력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18) 상시적 인력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19) 심리상담센터 확충 및 심리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0)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21) 노동인권 신장	①	②	③	④	⑤	⑥
	(22) 노사공동 지정정비소 및 휴게소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Q19

귀하께서는 위에 열거된 22개 항목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Q20

인천광역시 필수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